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능강화 및 운영개선 연구

2022. 12.



광진구의회
Gwangjin-gu Council

제 출 문

광진구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능강화 및 운영개선 연구」
용역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생활정책연구원 지방자치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차 승 

목 차

1. 연구목적 및 방법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진행 및 방법	2
2. 광진구의회 회의 진행	4
(1) 상임위원회	4
(2) 특별위원회	12
(3) 행정사무감사	16
(4) 결산검사	35
(5) 본회의 및 상임·특별위 회의 공개(시스템)	44
(6) 구정질문	50
3. 광진구의회 운영	56
(1) 의장·부의장 등 선출방식	56
(2) 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68
(3) 의정자문기구	79
(4) 의회 홍보 활성화	88

4. 광진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체계	102
(1) 정책지원관계	102
(2) 의원연구단체	118
(3) 의회 교육·연수	130
(4) 토론회·간담회 등	146
5. 광진구의회 주민참여	154
(1) 의정 모니터	154
(2) 청소년 의회 운영	162
(3) 주민참여결산제	172
(4) 조례 제개정 참여	187
(5) 청원제도	196
(6) 민원처리 프로세스	205
6. 광진구의회 자치법규 분석	214
(1) 광진구의회 자치법규 기본분석	214
(2) 광진구의회 주요 자치법규 개선안	241
7. 광진구의회 기능강화 및 운영개선 방안	244

(1) 제9대 광진구의의회 의정목표 및 의정가치 실현	244
(2) 광진구의의회 회의 개선방안	244
(3) 광진구의의회 운영 개선방안	247
(4) 광진구의의회 의정활동 지원체계 개선방안	249
(5) 광진구의의회 주민참여 개선방안	252
(6) 광진구의의회 주요 자치법규 개선방안	254
<부록> 광진구의의회 FGI, 설문조사	256
(1) FGI 조사	256
(2) 설문조사	261
< 참고 문헌 >	267

표 목차

<표 2-1> 광진구의회 상설위원회 구성 현황	5
<표 2-2> 광진구의회 특별위원회 현황	12
<표 2-3> 서울 자치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황	14
<표 2-4> 서울 자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운영 현황	25
<표 2-5> 2022년 성동구의회 상임위별 감사일정 및 장소	27
<표 2-6>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예시(안)	31
<표 2-7> 서울 자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자격 현황	40
<표 2-8> 광진구의회 회의 공개 현황	44
<표 2-9> 서울 자치구의회별 회의공개 현황	47
<표 2-10> 서울 자치구의회 회의공개 총 현황	48
<표 2-11> 8대 광진구의회 구정질문 횟수	50
<표 2-12> 서울 자치구의회 구정질문 현황	53
<표 3-1> 의장·부의장 선거 서울 자치구의회 현황	60
<표 3-2> 상임위원장 선거 서울 자치구의회 현황	61
<표 3-3> 타 지방의회 교섭단체 관련 조례 제정 현황	69
<표 3-4> 광역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현황	70
<표 3-5> 기초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현황	71
<표 3-6> 광진구의회 홍보 매체 현황	88
<표 3-7> 광진구의회 의회홍보팀 업무 현황	90
<표 3-8> 광진구의회 설문조사 질문 및 결과(의원용)	94
<표 3-9> 광진구의회 설문조사 질문 및 결과(직원용)	94
<표 4-1> 광진구의회 입법·정책 지원 인력 현황	103
<표 4-2> 광진구의회 업무분장 만족도 설문결과	104
<표 4-3> 서울 자치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108
<표 4-4> 광진구의회 정책지원팀 업무분장 예시	112
<표 4-5>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현황(2020~2022)	118
<표 4-6> 광진구의회 교육·연수 프로그램 현황(2020~2022)	130
<표 4-7> 광진구의회 교육프로그램 의원 설문조사 결과	131
<표 4-8> 광진구의회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의원 설문조사 결과	132
<표 4-9>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북구의회 합동 국외연수 주요일정(2019)	135
<표 4-10> 광진구의회 토론회·간담회 등 연도별 개최 내역(2020~2022)	146
<표 4-11> 2020년 서대문구의회 정책컨퍼런스 추진(안)	153

<표 5-1> 의정 모니터 운영 중인 서울시와 자치구 의회 현황	156
<표 5-2> 청소년의회&청소년참여위원회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현황	165
<표 5-3> 광진구의회 주민참여결산제 운영 예시	183
<표 5-4> 서울시 및 자치구 주민조례청구 현황(2021~2022.12.현재)	192
<표 5-5> 광진구의회 청원처리 현황	198
<표 6-1> 광진구의회 자치법규 리스트	214
<표 6-2> 서울 자치구의회별 자치법규 수	229
<표 6-3> 서울 자치구의회별 자치법규 현황(의회 회의)	230
<표 6-4> 서울 자치구의회별 자치법규 현황(의원 지위 및 신분)	231
<표 6-5> 서울 자치구의회별 자치법규 현황(의정활동 지원)	233
<표 6-6> 서울 자치구의회별 자치법규 현황(의회 주민참여)	234
<표 6-7> 서울 자치구의회별 자치법규 현황(의회 운영)	235
<표 6-8> 서울 자치구의회별 자치법규 현황(의회 사무국)	237
<표 6-9> 서울 자치구의회별 자치법규 현황(의회 사무직원)	238

그림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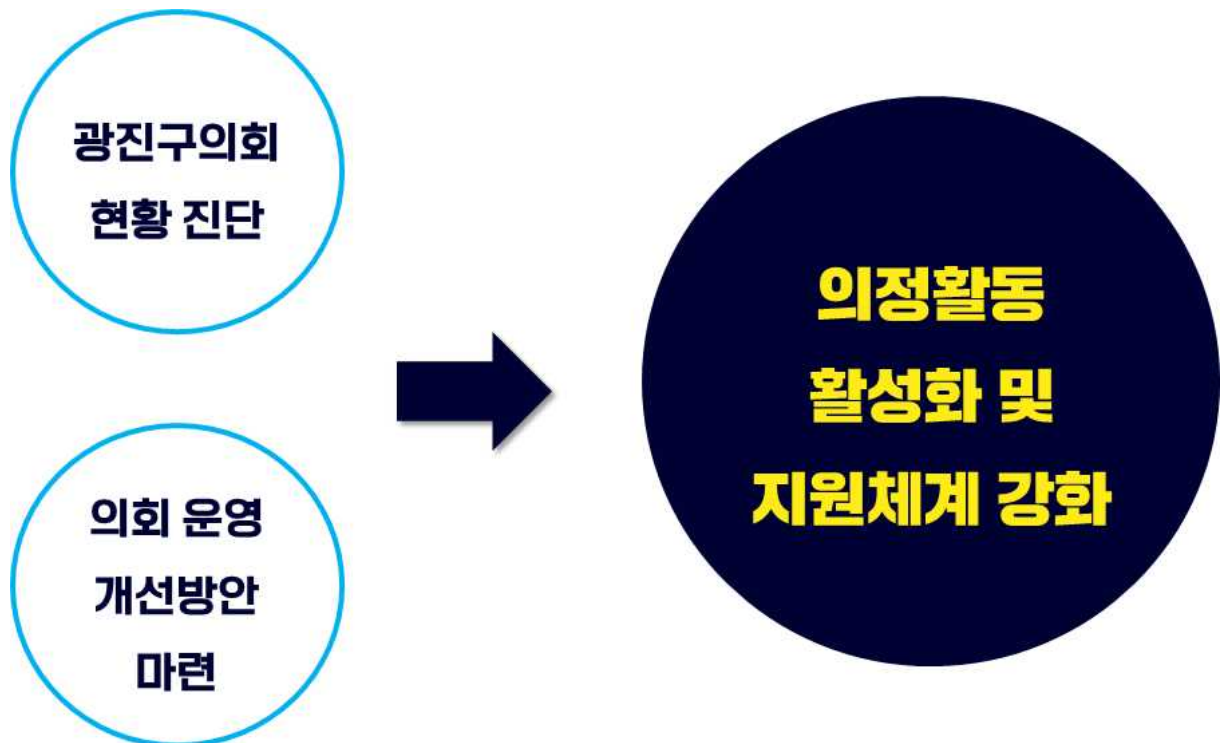
<그림 1-1> 광진구의회 기능강화 및 운영개선 연구 목적	1
<그림 1-2> 광진구의회 자치법규 현황	2
<그림 2-1> 광진구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16
<그림 2-2> 2021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26
<그림 2-3> 지방자치단체 결산 업무 처리 과정	35
<그림 5-1> 경기 하남시 결산진행절차	180
<그림 5-2> 조례 제개정 주민참여 실행안 예시	193
<그림 5-3> 광진구의회 홈페이지 청원의 절차(청원심사규칙)	197

1.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나는 동안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의 존재이유에 대해 많은 의견이 존재함. 그럼에도 집행부 예산의 증가와 복잡다양한 행정의 변화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증대된 역할만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회복 있어야 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운영방안 변동사항(정책지원관제 도입 등)의 안착 및 제9대 광진구의회 출범에 따른 의정활동 활성화와 의회 사무국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광진구의회 현황을 파악하고, 타 지방의회와 비교하여 광진구의회의 의정활동 활성화 및 지원체계에 대한 실효 있는 정책대안과 선진적인 실행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1-1> 광진구의회 기능강화 및 운영개선 연구 목적



(2) 연구진행 및 방법

1) 연구 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제 도입을 비롯한 광진구의회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광진구의회 연간 운영계획 및 지원체계 분석, 타 지방의회와 비교하여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광진구의회 회의 진행, 의회 운영체계, 의정활동 지원, 의회 주민참여 활성화 등 의회 기능강화 및 운영개선을 위해 4개 분야로 나눠 연구
- 상기 내용을 반영한 광진구의회 조례·규칙·규정 등 자치법규 제·개정안 제시

<그림 1-2> 광진구의회 자치법규 현황

광진구의회 자치법규 현황 : 총 46건

조례
20건

규칙
11건

규정
12건

내규
03건

2) 연구 범위 및 활동 기간

- 연구범위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 연구기간 : 2022년 11월 07일 ~ 12월 09일(1개월)

3) 연구 방법

- 문헌조사 및 기초자료 활용
 - 광진구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 분석
 - 광진구의회 연간 운영계획, 의정활동 조사
 - 광진구의회 사무국 지원내용 및 체계 분석
 - 광진구의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내용 조사

- 타 지방의회 사례 비교
 -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타 자치구의회 및 전국 지방의회와 광진구의회를 비교하여 사례를 제시하고, 도입이 필요한 개선방안 제시

- 광진구의회 의원 및 사무국 설문 및 FGI
 - 설문과 FGI를 통해 행정혁신연구회 소속 의원(의회운영 개선점 및 발전방향)과 사무국 직원(지원 현황 파악 및 지원체계 개선안)으로부터 의회 구성원이 느끼는 광진구의회 현황과 개선방안 파악

4) 연구자료 조사·분석 기점

-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수집한 자료의 조사·분석 기점은 해당 자료에 따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2022년 12월 현재’로 함

5) 연구기관 및 연구진

- 연구기관 :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부설 ‘지방자치연구센터’
- 연구진
 - 책임연구원 : 차승연(지방자치연구센터 대표, 전)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
 - 일반연구원 : 강수정(지방자치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전) 서울 금천구의회 의원)
황은주(지방자치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전) 대전 유성구의회 의원)
황선화(지방자치연구센터 사무국장, 전)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2. 광진구의의회 회의 진행

(1)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 제도 운영의 필요성

가. 취지 및 설치

-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 최종의사결정은 본회의에서 이뤄짐. 현대 행정이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지방의회 또한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지고 전문화 되어야 함
-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모여 광범위한 영역 전반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이 어렵고 부적합하므로, 소수의 의원들이 전문적, 능률적으로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2022)
- 따라서 위원회 중심의 회의체가 필요함.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게 열어 두었음

나. 위원회의 종류

-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상설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¹⁾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²⁾’가 있음

1) ‘특정한 안건’이란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련된 안건 및 중요한 안건 그리고 의회 내부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 등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하기가 부적절하고, 관련 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원 등이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안건을 의미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란 본회의에서의 최종의사결정을 앞두고 소관 사항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의 안건에 대해 예비적 심사를 위해 상설적으로 설치된 회의체
- 이러한 예비적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는 복잡화, 다양화되어 있는 행정의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소수 의원으로 구성

2) 광진구의회 현황

가. 상임위원회 구성

- 광진구의회 상설 상임위원회로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있으며, 인원은 각 7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음

<표2-1> 광진구의회 상설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회		정수	소관국 (소관 팀)
상설 위원회	의회 운영 위원회	7명	의회사무국
	기획 행정 위원회	7명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단, 행정국,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 (총70개팀)
	복지 건설 위원회	6명	복지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광진복지재단 (100개 팀)

※ 자료 : 광진구의회 홈페이지 및 조례·규칙으로 재구성

나. 상임위원회 활동

-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서에 속하는 의안에 대해 각 회의의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함. 다만 각종 소관의 안전에 대한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은 이뤄지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별로 이뤄지지 않음
- 운영위원회
 - 의회 모든 운영 및 회의 일정,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
- 기획행정위원회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정책기획단, 행정국,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복지건설위원회
 - 복지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상임위원장의 권한과 책임(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2022)

- 위원회를 대표할 권한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함
 - 회부안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안전이 본회의에서 의제된 경우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함
 - 위원회의 제출 의안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제출자가 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
 -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음
 -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함
 - 안전 심의와 관련되거나 감·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함
- 회의에 관한 권한
 -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회기 중 위원회를 개최
- 위원회 회의록에 서명·날인

○ 위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

-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의 방청을 허가
-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함
- 위원이 위원회 회의장에서 법 또는 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
-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함
- 그 명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해당 위원에 대해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함
-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 유지가 곤란한 경우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 선포
-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의 제67조, 제68조, 제69조에 의해 공청회, 연석회의, 전문가 등의 활용 가능

3) 관련 규정 : 법령, 조례, 규칙 등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7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정책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삭제

다.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기획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복지건설위원회

가.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미래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교통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정한다.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6.09.23.>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6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7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의 방법을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60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횡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7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기타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8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심사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9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심사보조자의 성명·직업 등 인적사항, 위촉기간, 위촉이유 등을 명시한 위촉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심사보조자는 위촉기간 만료와 동시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청취를 위한 출석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실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 제도 개선안

○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가치와 주체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장의 권한과 책임 즉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야 함. 위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임위원으로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늘 상임위 소관에 관하여 연구하며 학습하여야 함. 상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의 규칙」 제67조, 제69조의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함

- 정례회나 임시회 전 사전 상임위 모임을 통해 집행부의 안전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사전 학습 및 토론 등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강사 초빙을 통해 전문성 강화 필요
-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은 주민의 대표로서 또한 입법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정책을 이끌어감에 막대한 영향을 줌. 또한 의원의 전문성 강화는 현대 행정의 복잡·다양성과 맞물려 주민들의 높은 정치·행정적 수요와도 연관되어있음
- 지방의원의 활동 및 지방의회의 기능이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방의원 혹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은 바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으로 귀결됨. 이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그 중심은 상임위원회에서의 활동이며,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체계의 중심에는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 따라서 ‘의원-상임위원회-지방의회’의 연계구도에서 의원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야말로 지방의회에게 주어진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결정짓는 핵심요인이라 할 수 있음.(정병렬, 조민경, 김렬, 2015)
- 연석회의의 원 취지는 특정위원회가 어떤 안건을 심사하면서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으면 그 의견을 듣기 위함으로 여는 것인데, 상임위 업무보고는 다른 상임위와 관련이 없음에도 현재 연석회의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상임위별 업무보고로 전환 필요. 또한 상임위별 업무보고로 전환되면 업무보고 시 질의응답 및 추가자료 요청 등의 심도 있는 심사 준비 필요
- 광진구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및 권한 강화, 의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임위원회 중심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의안과 예결산 심의 등이 이뤄져야 함

(2) 특별위원회

1) 광진구의의회 현황

〈표2-2〉 광진구의의회 특별위원회 현황

위원회	내 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산(안) 심사
윤리 특별위원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
기타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설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매년 1회에 한하여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 될 수 있도록 감사

※ 자료 : 광진구의의회 홈페이지 자료 및 조례·규칙으로 재구성

○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설치하며, 상시적·일시적 모두 가능. 대표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음.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윤리특별위원회가 일시적 특별위원회에서 상시적 특별위원회로 전환되었음³⁾

○ 광진구의의회에서는 예산결산 심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음.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에는 타 의회에서 상임위 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달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음

3) . 「지방자치법」(시행 2021.10.21.)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시행 2022.1.13.)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을 ‘둔다’로 바뀌었음

2) 관련 규정 : 법령, 조례, 규칙 등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된 때에도 제1~3항을 준용한다.

제78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74조제3항을 준용한다.

3) 타 자치구의회 현황

〈표2-3〉 서울 자치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황

	구분	정원	예산			결산		
			위원	기간(단위 : 일)		위원	기간(단위 : 일)	
				상임위	특위		상임위	특위
1	광진	14	13	3	9	13	1	4
2	종로	11	5	6	3	5	3	2
3	중구	9	8	5	2	8	3	2
4	용산	13	12	4	8	12	1	8
5	성동	14	13	4	4	13	2	2
6	동대문	19	9	5	6	7	4	5
7	중랑	17	7	5	6	7	5	4
8	성북	22	9	3	10	9	3	6
9	강북	14	5	4	4	5	3	2
10	도봉	14	7	4	5	7	3	1
11	노원	21	7	4	3	7	2	1
12	은평	19	18	4	11	18	없음	8
13	서대문	15	9	6	6	7	3	4
14	마포	19	9	5	7	9	4	6
15	양천	18	9	4	4	7	3	3
16	강서	23	9	4	11	9	4	9
17	구로	16	7	4	3	7	2	2
18	금천	10	9	5	5	9	1	1
19	영등포	17	9	5	6	9	1	3
20	동작	17	7	4	5	7	5	4
21	관악	22	9	6	5	9	3	4
22	서초	16	9	4	5	9	4	4
23	강남	23	11	6	9	11	2	2
24	송파	26	13	4	6	13	1	3
25	강동	18	8	4	4	5	3	2

※ 자료 : 각 25개 구 조례 및 정보공개 청구로 조례 재구성

- 특별위원회 중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중요한 심의 기구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예산안, 결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위원이 예비 심사를 함. 그러함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장을 제외한 전원이 참여하여 심사하는 의회가 25개 구 중 6개구가 있음. 광진구의회를 비롯하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은평구, 금천구가 있음
-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심의에서 심사한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전원이 모여 재심의하는 비효율적인 심사 방법임

4) 특별위원회 제도 개선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어떠한 금지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임위 예비 심의 후 또 다시 전원이 모여 재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시간낭비며 비효율적임. 따라서 전원 특별위원회 위원(의장 제외)으로 선임하여 심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비슷한 규모의 타 자치구의회의 사례를 참고했을 때 7~9명이 적정하다고 생각됨
- 예산결산의 경우에도 상임위 중심으로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고(현재 광진구의회는 예산안 심의의 경우 상임위 3일, 특위 9일이고, 결산안 심의 시 상임위 1일, 특위 4일),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계수조정을 통해 상임위별 심의내용이 조화롭게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면 됨

(3) 행정사무감사

1) 광진구의회 현황

-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1년에 한 번씩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의 목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요구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 그리고 대안 등을 제시하는 감사임

〈그림 2-1〉 광진구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 실시단계 과정 9.21.~9.29.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일정

감사 일정		감사 형식	감사장소
1일차 (9.21.수)	오전 10:00~	○ 행정사무감사 개회식 ※ 업무보고 생략	본회의장
	오후 14:00~		
2일차 (9.22.목)	오전 10:00~	○ 개별감사(전부서)	본회의장 및 브리핑룸
	오후 14:00~		
3일차 (9.23.금)	오전 10:00~	○ 질의/응답 감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단, 행정국, 기획경제국, 복지국	본회의장
	오후 14:00~		
4일차 (9.26.월)	오전 10:00~	○ 질의/응답 감사 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재단, 의회사무국	본회의장
	오후 14:00~		
5일차 (9.27.화)	오전 10:00~	○ 동 주민센터 : 4개동 중곡1동, 중곡3동, 구의1동, 광장동	해당 동 주민센터
	오후 14:00~	○ 동 주민센터 : 3개동 중곡2동, 중곡4동, 능동	
6일차 (9.28.수)	오전 10:00~	○ 강평 준비	
	오후 14:00~		
7일차 (9.29.목)	오후 14:00~	○ 강평	본회의장

- 행정사무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
 - 1일차, 2일차 : 개회식 및 개별감사
 - 3일차, 4일차 : 질의·응답 감사 전원 본회의장에서
 - 5일차 : 현장 감사
 - 6일차 : 강평 준비
 - 7일차 : 강평

- 광진구의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 중 1일차 2일차에 이뤄지는 개별 감사는 집중적으로 개별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장점 있을 수 있으나 속기에 남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

- 3일차, 4일차에 이뤄지는 질의·응답감사는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행정 전반을 다뤄야하기에 효율이 떨어짐. 기획행정위원회 70개 팀과 복지건설위원회 100개 팀의 주요 업무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틀 안에 질의해야 하는 것은 어렵기에 대표적인 주요 사업 중심 또는 민원 중심의 감사 정도의 수준으로 감사 진행 가능성 큼

- 광진구의회는 2022년 제2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 중 하도록 한 것을 제2차 정례회 중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 진행 중

- 또한 광진구의회는 상임위 구성이 원활하지 않은 10인 미만의 의회가 아님에도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진행

2) 관련 규정 : 법령, 조례, 규칙 등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

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감사 또는 조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① 제42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이하 "감사·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하거나 조사한다.

1. 감사·조사위원회 편성

2. 감사 또는 조사 일정

3. 감사 또는 조사 요령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 그 밖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는 감사·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③ 의장은 감사·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42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지방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제45조(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나 시·도의회가 감사를 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지방의회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 ⑦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⑧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서 증인·참고인으로서 증언·진술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사본을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제48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제49조(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조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거나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50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1조(공개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감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실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⑤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조사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목적, 조사 범위, 조사 방법, 조사일정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⁴⁾

제4조(정례회)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 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네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는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따로 정하여 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4) 광진구의회 제257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2.11.15. 장길천 의원 대표 발의)가 발의되어 있으나, 본 회의 통과 전이므로 개정 전 조례를 바탕으로 연구함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타 자치구의회 운영 사례

가. 서울 25개 자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중 13개의 자치구의회가 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12개의 자치구의회는 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하고 있음. 광진구의회는 최근 1차 정례회에서 운영 중이던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로 옮기는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음⁵⁾

나. 서울 25개 자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운영 방법

- 서울시 23개의 자치구들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 있음. 서울의 2개 자치구의회인 광진구의회와 금천구의회만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시행하고 있음
- 광진구의회는 14명의 의원 중 13명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금천구의회는 10명의 의원 중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행정사무감사장의 경우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지는 타 자치구의회는 상임위원회회의실이나 상임위별로 구청 감사장에서 진행함. 광진구의회의 경우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 시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고 있음

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대표 발의)이 2022.11.21. 입법예고 되었으며, 2022년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룰 예정

〈표2-4〉 서울 자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운영 현황

	지자체	실시 시기	운영방법
1	광진	1차 정례회	특별위
2	종로	1차 정례회	상임위
3	중구	1차 정례회	상임위
4	용산	2차 정례회	상임위
5	성동	1차 정례회	상임위
6	동대문	1차 정례회	상임위
7	중랑	1차 정례회	상임위
8	성북	1차 정례회	상임위
9	강북	2차 정례회	상임위
10	도봉	2차 정례회	상임위
11	노원	2차 정례회	상임위
12	은평	1차 정례회	상임위
13	서대문	2차 정례회	상임위
14	마포	1차 정례회	상임위
15	양천	2차 정례회	상임위
16	강서	1차 정례회	상임위
17	구로	1차 정례회	상임위
18	금천	2차 정례회	특별위
19	영등포	2차 정례회	상임위
20	동작	2차 정례회	상임위
21	관악	1차 정례회	상임위
22	서초	2차 정례회	상임위
23	강남	2차 정례회	상임위
24	송파	2차 정례회	상임위
25	강동	2차 정례회	상임위

※ 자료 : 각 자치구의회 홈페이지 자료 및 조례·규칙으로 재구성

다.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운영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는 1일차부터 3일차까지 상임위별 개별감사 진행 후 4일차부터 7일차 까지 총 4일간의 질의·응답 감사를 진행함. 광진구의회처럼 강평 준비와 강평 날을 이틀이나 사용하지 않고 7일차 마지막 날 총평도 함께 진행. 동주민센터 감사는 해당 상임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만 진행

〈그림2-2〉 2021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2. 일정별 감사 대상·장소

구 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대 상	장 소	대 상	장 소	대 상	장 소
2021. 11. 22(월)			개시선언 및 증인선서, 개별 감사	서대문구의회 제1회의실 및 동주민센터 (, 연희동, 홍은 2동, 남가좌2 동)	개시선언 및 증인선서, 개별 감사	서대문구의회 제2회의실
2021. 11. 23(화)			개별 감사		개별 감사	
2021. 11. 24(수) ※의회운영 14:00~	의회사무국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	개별 감사		개별 감사	
2021. 11. 25(목)			개별 감사 및 동 주민센터감사		질의답변	
2021. 11. 26(금)			질의답변		질의답변	
2021. 11. 27(토)			휴회		휴회	
2021. 11. 28(일)			휴회		휴회	
2021. 11. 29(월)			질의답변		질의답변	
2021. 11. 30(화)			질의답변, 총평 및 종료 선언		질의답변, 총평 및 종료 선언	

※ 자료 : 2021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라.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운영

<표2-5> 2022년 성동구의회 상임위별 감사일정 및 장소

구분	일시	일정	장소	
운영위원회	10.13.(목) 10:00	○ 의회사무국 - 업무보고청취 - 회의식 감사	성동구의회 제1회의실	
행정재무 위원회	1일차	10.11.(화) 10:00	○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피감사기관 증인선서[붙임1] - 간부소개 및 인사 (참석)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 17개 동 주민센터, 공단, 재단 및 주식회사	성동구의회 제1회의실
		10.11.(화) 10:20	○ 행정관리국 - 업무보고·청취·질문 및 답변 ○ 성동문화재단, 장학재단 - 업무보고·청취·질문 및 답변	
	2일차	10.12.(수) 10:00	○ 기획재정국 - 업무보고·청취·질문 및 답변 ○ 도시관리공단, 성동미래일자리(주) - 업무보고·청취·질문 및 답변	
	3일차	10.13.(목)	휴 회	※ 운영위 행정사무감사
	4일차	10.14.(금) 10:00	○ 보건소,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 업무보고·청취 - 질문 및 답변	성동구의회 제1회의실
	5일차 6일차	10.15.(토) ~16.(일)	휴 회	
	7일차 현장 감사	10.17.(월) 10:00	○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 -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고객센터 등	동 주민센터 감사장, 현장 감사장
		10.17.(월) 14:00	○ 금호2·3가동 주민센터 - 금남시장 고객센터 등	
	8일차 현장 감사	10.18.(화) 10:00	○ 성수1가1동 주민센터 - 언더스탠드에비뉴, 성동미래일자리(주) 등	
		10.18.(화) 14:00	○ 용답동 주민센터 - 구립용답체육센터, 용답상가시장 고객 센터 등	
9일차	10.19.(수) 10:00	○ 종합감사 및 강평 ○ 위원장 감사종료 선언	성동구의회 제1회의실	

구분		일시	일정	장소
복지건설 위원회	1일차	10.11.(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감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피감사기관 증인선서[붙임1] - 간부소개 및 인사 ○ 복지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보고·질문 및 답변 	성동구의회 제2회의실
	2일차	10.12.(수)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관리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보고·질문 및 답변 	
	3일차	10.13.(목)	휴 회	※ 운영위 행정사무감사
	4일차	10.14.(금)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건설교통국 및 스마트포용도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보고·질문 및 답변 	성동구의회 제2회의실
	5일차 6일차	10.15.(토) ~16.(일)	휴 회	
	7일차	10.17.(월) 10:00	○ 현장출장 감사	현장 감사장
	8일차	10.18.(화) 10:00		
	9일차	10.19.(수)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감사 및 강평 ○ 위원장 감사종료 선언 	성동구의회 제2회의실

※ 자료 : 2022년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일차부터 3일차까지 질의·응답 감사를 진행 후 4일차 5일차 현장 감사로 운영 6일차 종합 보충감사 및 강평 진행. 행정재무위원회는 동주민센터로 현장 감사가 진행되고, 복지건설위원회는 관련 산하기관으로 현장 방문 진행
- 성동구의회도 서대문구의회와 동일하게 광진구의회처럼 강평준비를 위한 날을 따로 잡지 않음

4) 제도 운영 장단점

가. 행정사무감사 시기

- 1차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한다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한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난해 결산안과 연계되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하지만 본예산 심의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 있음
- 2차 정례회로 치러진다면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이어지는 본 예산심의로 다음 해 본예산에 바로 감사의 결과 반영이 가능함. 단점으로는 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 및 안건심의 등이 몰려 있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의 어려움

나. 행정사무감사의 운영방법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모든 부서의 업무를 다 다뤄야 하기에 많은 행정을 두루 알 수 있는 장점은 있을 수 있으나, 복잡해지고 전문화된 행정의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제약이 있음
-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소관별 업무 분배로 적은 부담감으로 깊이 있는 감사를 준비할 수 있음. 현재 의회 발전의 방향이 상임위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상임위 전문성이 발휘되기 좋은 여건이 됨

5) 제도 개선안 제시

-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감사⁶⁾ 기간인 9일 중 주말을 제외하면 실질적 감사일은

6)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7일임. 감사 기간으로서 다소 부족한 기간이므로 7일의 감사계획을 잘 구성하여 진행해야 함

- 현재 광진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서 개별감사와 전원이 모인 본회의장 질의응답감사가 주를 이룸. 개별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지만 속기가 이뤄지지 않아 면담보고서 또는 질의응답서 등 기록을 남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함
- 본 회의장에서 13명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질의응답을 할 경우 의원 개개인의 질의시간도 부족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의 한계가 발생함. 더구나 팀별 감사를 적용해보면, 3일차 기획행정의 70개 팀을, 하루 만에 감사하여야 하며, 4일차에는 더 많은 복지건설의 100개의 팀을 감사하여야 하므로 문제해결·대안제시형 행정사무감사에 이르지 못할 우려가 있음
- 현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운영 방식을 벗어나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로 전환하여,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행정을 상임위로 분배하여 더욱 철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전문성 있는 광진구의회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권한을 강화해야 함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표 2-6〉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예시(안)⁷⁾

감사일정		감사 내용		감사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1일차	오전 10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사무감사 실시	각 상임위실
	오후 14	운영위원회 감사		운영회의실
2일차	오전 10	기획행정위원회 개별감사	복지건설위원회 개별감사	각 상임위실
	오후 14			
3일차	오전 10	기획행정위원회 개별감사	복지건설위원회 개별감사	각 상임위실
	오후 14			
4일차	오전 10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복지재단	각 상임위실
	오후 14	행정국, 시설관리공단	복지국	
5일차	오전 10	정책기획국, 시설관리공단	안전환경국	
	오후 14	기획경제국, 문화재단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	
6일차	오전 10	현장 감사 또는 추가 질의 (동주민센터 또는 산하기관)	현장 감사 또는 추가 질의	
	오후 14			
7일차	오전 10	추가 질의 및 강평	추가 질의 및 강평	각 상임위실
	오후 14			

6) 관련 규정 개정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개정(안)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실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1회에 한하여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7) 행정사무감사 총 9일 중 주말을 제외한 7일로 일정 예시(안) 작성

제4조(사무보조자) ①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조 업무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증언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확인 통보, 서류의 제출,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1일 전까지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실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 ----- ----- ----- ----- ----- ----- ----- <u>감사</u> ----- ----- -----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② ----- ----- <u>2차 정례회 기간 중</u> ----- ----- <u>소관 상임위원회</u>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사무보조자) (생략)	제4조(사무보조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u>제1항에 따른 사무보조 업무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u>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u>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본회</u>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u>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u>

의 또는 위원회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증언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 통보, 서류의 제출,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증언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현지 확인

-----.

③ -----

----- 소관 상임위 -----

-----.

④ ~ ⑦ (현행과 같음)

(4) 결산검사

1) 광진구의회 현황

- 결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하여 당초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⁸⁾
- 결산검사는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감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따라 집행부의 결산내용을 검사하는 과정임. 감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를 이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⁹⁾. 감사위원은 검사 완료 후 감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그림2-3> 지방자치단체 결산 업무 처리 과정

□ 결산업무 처리순기



※ 자료 : 광진구청 홈페이지 참조

- 8) 광진구청 홈페이지 결산 참조 <https://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35>
- 9)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감사위원의 직무) ② 감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결산검사위원회는 2022.1.13.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¹⁰⁾에 근거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음. 이전에는 시행령에 3명 이상 5명 이하로 선임하도록 하였음.¹¹⁾ 광진구의회도 2022.2.8. 조례를 개정¹²⁾ 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였으나, 2022년 결산검사위원으로 1명의 구의원과 3명의 세무사로 총4명을 위촉하여 개정된 시행령과 조례를 따라가지 못함

○ 위원회의 자격요건으로는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
-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결산 검사 사항으로는

- 세입 · 세출의 결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공유재산 및 기금의 결산
- 금고의 결산에 관한 관계서류의 계수 정확 여부
- 재정운영의 적합성 및 합목적성
- 예산집행의 효율성

10) 「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22.1.1.)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11) 「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21.1.5.)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2.2.8.)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1 이하로 하고,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2) 관련 규정 : 법령, 조례, 규칙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83조(감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 ②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감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결산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1 이하로 하고,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회계 연도 출납폐쇄 후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② <삭제 2007.07.06>

③ 의회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선임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감사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대표위원) ① 감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감사위원인 의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위원의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감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감사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감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회의장은 신분상실사유를 명기하여 당해 감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 하게 된 때

② 의회는 감사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1. 감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

3.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

제6조(감사위원의 직무) ① 감사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감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감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선임된 감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7조(검사협조)** ① 구청장은 감사위원의 결산검산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감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타 자치구의회 운영사례

<표 2-7> 서울 자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자격 현황

연번	구분	위원수	자격
1	광진구	4명	구의원1, 세무사3
2	종로구	4명	구의원1, 회계사1, 세무사2
3	중구	6명	구의원2, 회계사2, 세무사1, 전)공무원1
4	용산구	4명	구의원1, 세무사2, 전)공무원1
5	성동구	3명	구의원1, 회계사2
6	동대문구	5명	구의원1, 회계사2, 세무사2
7	중랑구	3명	구의원1, 세무사1, 전)공무원1
8	성북구	5명	구의원1, 공인회계사1, 세무사1, 전)공무원2
9	강북구	5명	구의원1, 세무사2, 공인회계사1, 전)공무원1
10	도봉구	5명	구의원1, 세무사1, 전)공무원3
11	노원구	4명	구의원1, 회계사3
12	은평구	4명	구의원1, 회계사1, 세무사2
13	서대문구	5명	구의원1, 세무사2, 대학교수1, 전)구의원1
14	마포구	5명	구의원1, 회계사1, 세무사3
15	양천구	10명	구의원3, 회계사1, 세무사1, 전)공무원5
16	강서구	5명	구의원1, 세무사1, 공인회계사2, 전)공무원1
17	구로구	5명	구의원1, 세무사1, 회계사1, 회계업무경력자2
18	금천구	3명	구의원1, 세무사2
19	영등포구	6명	구의원2, 세무사3, 회계사1
20	동작구	6명	구의원2, 회계사1, 세무사3
21	관악구	5명	구의원1, 전)공무원1, 세무사2, 전)구의원1
22	서초구	6명	구의원2, 회계사2, 세무사2
23	강남구	5명	구의원1, 공인회계사4
24	송파구	4명	구의원1, 세무사2, 전)공무원1
25	중랑구	3명	구의원1, 세무사1, 전)공무원1

※ 자료 : 각 자치구의회 홈페이지 자료 및 조례규칙으로 재구성

- 서울시와 시의 25개 자치구의 결산심사위원 요건을 살펴보면 의원 이외에 대부분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회계사나 금융 담당업무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한정
- 양천구의회만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10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함. 다만 구의원 3명을 초과할 수 없는 부분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전 공무원이 5명으로 절반을 차지하는 것은 추후 제도운영에 있어 보완해야 할 지점임
- 그 중 서울시와 도봉구, 구로구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서대문구는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경력이 있는 사람이 검사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열어둠

4) 제도 운영 장단점

- 지방자치단체는 결산을 통해 다음 해 올바른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음. 이 과정에 견제·감시 기구인 의회가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유의미함. 다만 결산검사에 참여하는 지방의원이 위원으로서 예결산에 대한 전문성 부족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의회에서 결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 약 1달간의 기간 동안 재무관리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꼼꼼히 들여다보고 결산검사를 함으로써 결산안 심의에 전문성이 부족한 의원들의 보좌 역할이 됨

5) 제도 개선안 제시

-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처럼 재무관리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하는 활동이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나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경력이 있는 사람도 결산심사위원이 되어 주민의 눈높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안을 검사하는 것도 유의미함

- 의장의 추천으로 결산감사 위원들이 선임될 때 매년 반복되는 결산 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 경력을 포함하여 3회 이상 연속으로 결산감사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위원 연임 금지조항 신설 필요
- 결산위원 중 전문가 위원이 많은 타구들과 마찬가지로 광진구의회도 3명의 세무사를 선임하였음. 하지만 전문가 3명의 위원을 모두 세무사로 선임하는 것은 편향된 측면이 있음. 공인회계사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할 경험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등 조례에 명시된 자격의 사람들을 선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함
- 또한 2022년까지 4명의 결산감사 위원만 위촉했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광진구의회 조례에 따라 10명 이내의 결산감사를 위촉하여 의회 결산안 심의 시 전문적인 결산감사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준비를 해야 함

6) 관련 규정 개정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결산감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③ 의원 이외의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4. 지방의회의원 경력자 가운데 감사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6.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경력이 있는 사람
- ⑥ 감사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 경력을 포함하여 3회 이상 연속으로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p> <p>① ~ ② (생략)</p> <p>③ 국회의원 이외의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선임한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④ ~ ⑤ (생략)</p> <p><u><신설></u></p>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의원 이외의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지방의회의원 경력자 가운데 감사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p> <p>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p> <p>6.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경력이 있는 사람</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⑥ 감사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 경력을 포함하여 3회 이상 연속으로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p>

(5) 본회의 및 상임·특별위 회의 공개(시스템)

1) 광진구의회 현황

- 주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초의회의 회의 공개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공개를 위해 노력해야 함.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모든 회의 공개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회의공개 방법에는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해주는 방법과, 속기록(회의록) 공개, 그리고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통해 영상회의록 공개 및 실시간 생중계가 있음
- 광진구의회는 서울의 24개의 타구와 마찬가지로 방청과 속기록을 통해 모든 회의는 공개하고 있으며, 본회의 및 상임위·특별위원회까지 전부 실시간 생중계를 하고 있음
- 하지만 영상회의록의 경우 모든 회의를 실시간 생중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와 특별위의 영상회의록은 게시되지 않고 있음. 의회에서 본회의 전 상임위와 특별위 회의는 명목상 예비적 심사 단계이지만 주민들의 밀접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논의 됨. 의회 사무국의 업무과중으로 상임위 및 특별위의 실시간 생중계된 영상을 영상회의록으로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실질적인 논의의 장인 상임위·특별위의 영상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표 2-8> 광진구의회 회의 공개 현황

	본 회의	상임위	특별위
방청	○	○	○
회의록	○	○	○
영상회의록	○	×	×
실시간생중계	○	○	○

※ 자료 : 광진구의회 홈페이지 자료 및 조례·규칙으로 재구성

2) 관련 규정 : 법령, 조례, 규칙 등

「지방자치법」

제69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5조 (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54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 절차,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2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그 밖에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3조(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4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 회의과정을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할 수 없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과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방청,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광진구의회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방청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등이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규정이 너무 오래 전에 만들어져서 현실 적용에 다소 의문이 있음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회의공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님. 다만 일반적으로 참관이 회의나 개표 등을 보는 것을 이르는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맞지 않아 ‘참관’이라는 용어를 ‘견학’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함. 또한 참관의 허가 및 제한을 사무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진구의회 의장으로 수정이 필요함

3) 타 자치구의의회 운영 사례

〈표 2-9〉 서울 자치구의의회별 회의공개 현황

연번	구분	영상 회의록				실시간 생중계			
		운영 여부	본 회의	상임위	특별위	운영 여부	본 회의	상임위	특별위
1	광진	운영	○	×	×	운영	○	○	○
2	종로	운영	×	×	×	-	미공개		
3	중구	운영	○	×	×	운영	○	×	×
4	용산	운영	○	○	○	운영	○	○	○
5	성동	운영	○	×	×	운영	○	×	×
6	동대문	운영	○	×	×	운영	○	×	×
7	종랑	운영	○	×	×	운영	○	×	예결위만
8	성북	운영	○	×	×	-	미공개		
9	강북	-	미공개			-	미공개		
10	도봉	운영	○	×	×	-	미공개		
11	노원	운영	○	○	○	-	미공개		
12	은평	운영	○	×	×	운영	○	×	×
13	서대문	운영	○	○	○	운영	○	○	○
14	마포	운영	○	×	×	-	미공개		
15	양천	운영	○	×	×	운영	○	×	×
16	강서	운영	○	×	×	-	미공개		
17	구로	운영	○	×	×	-	미공개		
18	금천	-	미공개			-	미공개		
19	영등포	운영	○	○	○	운영	○	○	○
20	동작	운영	○	×	×	운영	○	×	×
21	관악	운영	○	○	○	운영	○	○	○
22	서초	운영	○	×	×	운영	○	×	×
23	강남	운영	○	○	○	운영	○	○	○
24	송파	운영	○	○	○	운영	○	○	○
25	강동	운영	○	×	×	운영	○	×	×

※ 자료 : 각 자치구의의회 홈페이지 자료 및 조례·규칙으로 재구성

〈표 2-10〉 서울 자치구의회의 회의공개 총 현황

공개방식		공개 지자체	
		수	비율(%)
	방 청	25	100
	회의록	25	100
영상 회의록	운영	22	88
	본회의	22	88
	구정 질문	22	88
	5분 발언	22	88
	상임위원회	18	72
	특별위원회	18	72
실시간 생중계	운영	16	64
	본회의	16	64
	상임위원회	7	28
	특별위원회	7	28

※ 자료 : 각 자치구의회의 홈페이지 자료 및 조례·규칙으로 재구성

- 방청 및 회의록은 서울시 25개 모든 기초의회에서 공개하고 있음. 영상회의록과 실시간 생중계는 의회별 공개 정도가 다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실시간 생중계가 운영되는 곳은 16곳, 64%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본회의만 공개되고 있음
- 행정사무감사의 상임위원회 심의와, 7천억에서 1조가 넘는 본예산 심의인 예결산 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되지 않아 반쪽짜리 공개이며, 형식적인 공개라 평가 되고 있음
- 서울시 25개 기초의회 중 영상 회의록과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본회의 및 상임위 특별위원회까지 모두 공개하는 지자체는 6곳으로 강남구, 송파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대문구, 용산구 임
- 광진구의회의는 본회의 영상회의록만 공개하고 있음

4) 제도 개선안

- 2013년 국민권익위에서는 지방의회의 투명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인터넷 공개 방안을 권고하였음. 전국 광역의회에서는 회의 공개를 회의 규칙에 명시화하여 공개하고 있지만, 기초의회는 당시 권고사항이었음으로 영상회의록 및 실시간 생중계를 부분적으로도 시행하지 않은 의회도 있음

- 현재 광진구의회의 회의 규칙 조례 제94조, 제95조에 중계방송에 대해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에 대해 강행규정으로 ‘중계방송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선택할 수 있는 문구가 있다 보니, 실시간 생중계에서만 전부를 방송하고 있음. 조례상 ‘또는’ 문구 삭제 필요

- 영상회의록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본회의만 공개 되고 있음. 앞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와 특별위원회 회의까지 공개 추진되어야 함. 타구와 마찬가지로 영상회의록에서 본회의 중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따로 게시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의 홍보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야 함

- 현재 광진구의회 홍보팀의 인원은 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사진담당 1명을 제외하면, 팀원 2명이 언론 담당, 인사말 작성, 각종 의회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및 SNS 운영 및 방송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음. 홍보 전문 인력 확충 필요

(6) 구정질문

1. 광진구의회 현황

- 구정질문은 지방의원이 구정전반이나 특정 분야의 사안을 가지고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질문으로 광진구의회는 정례회에서 1년에 2회가 가능하나, 의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임시회에서도 가능함
- 광진구의회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1문1답을 병행할 수 있으나, 실제 적용의 사례를 살펴보면 보충 질의 시 해당 국장과 1문1답 가능하고, 질문 후 답변은 다음 본회의에서 진행했다고 함

〈표 2-11〉 8대 광진구의회 구정질문 횟수

연도	회기	의원 수	답변방식
2018년(2회)	제219회 정례회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질문 ○ 일괄답변 (다음 본회의) ○ 보충질의 시 해당 국장과 1문1답
	제221회 정례회	4명	
2019년(5회)	제224회 임시회	1명	
	제225회 임시회	2명	
	제226회 정례회	3명	
	제229회 임시회	1명	
	제230회 정례회	2명	
2020년(2회)	제235회 정례회	2명	
	제240회 정례회	2명	
2021년(3회)	제245회 정례회	3명	
	제246회 임시회	1명	
	제248회 정례회	1명	
2022년(1회)	제250회 임시회	3명	

※ 자료 : 광진구의회 자료제공

2) 관련 규정 : 조례, 규칙 등

「지방자치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대리 출석·답변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79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80조(구청질문) ① 본회의 회의 중 기간을 정하여 구청전반 또는 구청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이 미흡한 경우에 한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구청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1문1답을 병행할 수 있다. 단, 1문1답의 경우는 제37조의 발언횟수를 초과할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의 질문순서는 접수부에 의한 접수순서에 의한다.

제81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82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타 자치구 운영 사례

〈표 2-12〉 서울 자치구의회 구정질문 현황

	구분	시행시기	본질문 (일괄/일문)	보충질문 (일괄/일문)	답변 시기
1	광진	정례회 2회 요청 시 임시회	일괄	일문일답	다음 본회의
2	종로	정례회 2회 임시회 2회	일괄	일문일답	다음 본회의
3	중구	정례회 2회 수시	일괄	일문일답	다음 본회의
4	용산	임시회 2회	일괄	일괄	다음 본회의
5	성동	수시	일괄	일괄	당일
6	동대문	분기별 1회	둘다	둘다	당일
7	중랑	수시	둘다	둘다	당일
8	성북	수시	둘다	둘다	당일
9	강북	상·하반기 각 1회	둘다	둘다	당일
10	도봉	정례회 2회	일괄	일괄	다음 본회의
11	노원	정례회 2회	둘다	둘다	당일
12	은평	정례회 2회	일괄	둘다	당일
13	서대문	정례회 2회 임시회 2회	둘다	둘다	당일
14	마포	수시	둘다	둘다	당일
15	양천	수시	둘다	둘다	당일
16	강서	상·하반기 각 1회	일괄	일문일답	다음 본회의
17	구로	정례회 2회	일괄	일문일답	당일
18	금천	정례회 2회	둘다	둘다	당일
19	영등포	정례회 2회 수시	둘다	둘다	당일
20	동작	정례회 2회	둘다	둘다	당일
21	관악	상·하반기 각 2회	둘다	둘다	당일
22	서초	정례회 2회	둘다	둘다	다음 본회의
23	강남	수시	둘다	둘다	당일
24	송파	정례회 2회 임시회 2회	둘다	둘다	당일
25	강동	정례회 2회	둘다	둘다	당일

※ 자료 : 각 자치구 자료 요청 및 홈페이지 참조로 재구성

가. 질문

- 서울시 25개구 중 구정질문을 일괄질문으로만 해야 하는 곳은 9곳으로 광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도봉, 은평, 강서, 구로 임
- 자유롭게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을 선택 할 수 있는 곳은 중랑, 성북, 강북, 노원, 서대문, 마포, 양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6곳 임

나. 답변

- 모든 의회에서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도록 함
- 따라서 집행부는 이미 질문의 요지를 알고 있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다음 정례회로 미루는 지자체는 광진을 포함하여 종로, 중구, 용산, 도봉, 강서, 서초 총 7개의 의회가 있음
- 구정질문을 듣고 성실히 당일 답변을 하는 지자체는 17곳 인데, 성동, 동대문, 중랑,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송파, 강동 임

4) 제도 개선안

- 광진구의회는 본래 정례회에서만 구정질문이 가능했지만, 임시회에서도 신청하면 가능해진 점은 의원의 의사 발언권을 자유롭게 한 면에 있어서 지향해야 할 바임. 의회에서 회의진행이나 질문 등의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막는 것으로 제한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여러 주제가 섞이며 답변 또한 일괄로 하기에 집중도가

떨어짐. 질문자가 여럿이 있을 때는 질문하는 사람도 답변하는 사람도 집중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서울 자치구의회의 모든 의회는 구정질문에 앞서 24시간 또는 48시간 안에 구정질문의 제목과 요지를 구청장에게 전달하여야 함. 따라서 집행부는 질문 관련 학습 및 답변 준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질문에 답변을 바로하지 않고 다음 본회의로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25개구 중 18곳의 자치구의회의가 구정질문에 당일 바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고 답변 하는 곳도 16곳이나 됨
-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구정에 관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광진구의회의 구정질문 조건을 의원중심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구정질문 시 정례회, 임시회 구분 없이 언제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질문방식은 일괄질문·일괄답변과 1문1답이 모두 가능하고 바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야 함

3. 광진구의회의 운영

(1) 의장·부의장 등 선출방식

1) 광진구의회의 현황

가. 의장·부의장 선출

-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직무대행은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함. 이에 따라 제9대 광진구의회의 의장 선거 시 추윤구 의원의 사회로 선거 실시함
- 투표방식은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출. 투표 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어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직접 기재하는 기명식과 후보자의 성명 옆에 기표용구로 찍는 기표식 중 선택하여 선출할 수 있음. 제9대 광진구의회의 의장 선거 투표는 비치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식으로 진행
- 의장·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회의 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선거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음. 후보등록 절차는 규정이 없고, 소견발표는 의무사항이 아님. 제9대 광진구의회의 의장·부의장 선거에서는 출마의사가 있는 의원의 간단한 자기소개만 있었음
- 후보등록 절차가 없으므로 소견발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원이 후보가 되어 선출될 수 있는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운영됨. 당선자는 회의 규칙 제7조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결정됨

나. 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회의 규칙이 아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한다)에 선출방식 규정

- 상임위 및 특별위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 상임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회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
 - 특별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함
 - 각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함

- 제9대 광진구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시 정회 중 의원 간 협의를 통해 무기명투표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의장의 추천으로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합의 추대하였음

2) 관련 규정 : 법령, 조례, 규칙 등

「지방자치법」

제57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57조제1항, 제60조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할 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고,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10일 이내에 차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② 의장·부의장 선거의 직무대행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제4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⑦ 의장·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⑧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반기 의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 이내에 의장·부의장의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여, 그 임기만료 후 의장·부의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 수행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를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회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출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회를 하고,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 조례 후보 등의 내용만 있음.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근거 마련함

3) 타 자치구의회 운영 사례

- 의장·부의장 선거는 25개 자치구의회 중 10개 의회가 ‘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¹³⁾, 광진구의회를 포함한 15개 의회는 ‘의회 회의 규칙’에 그 내용을 담고 있음
- 9개 의회는 기본 조례 및 회의 규칙에 후보자 등록, 정견발표,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재순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강동구의회는 투표용지에 대한 규정은 없음
- 6개 의회는 의장·부의장으로 선출하고 싶은 의원의 성명을 직접 기재하는 기명식 투표를 했고, 18개 의회는 모든 의원 성명 혹은 후보자를 기재한 투표용지에 준비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하는 기표식 선거를 했으며, 강동구의회는 투표소에 전자투표기기를 갖고 들어가서 전자투표로 선거를 진행함

13) 종로구의회는 의장부의장선거의 근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담겨져 있으나, 후보자 등록, 정견발표, 투표용지에 대한 것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표 3-1> 의장·부의장 선거 서울 자치구의회 현황

구분	투표방식		후보등록	정견발표	근거 규정
	규정	9대의회 전반기			
광진구	×	기표식	×	○	회의 규칙
종로구	○	기표식	○	○	회의 규칙
중구	×	기표식	×	×	회의 규칙
용산구	×	기표식	×	×	기본 조례
성동구	×	기표식	×	×	회의 규칙
동대문구	×	기표식	×	×	회의 규칙
종랑구	×	기명식	×	×	기본 조례
성북구	×	기표식	×	×	기본 조례
강북구	○	기표식	○	○	회의 규칙
도봉구	○	기표식	○	○	기본 조례
노원구	○	기표식	○	○	기본 조례
은평구	×	기명식	×	○	기본 조례
서대문구	○	기표식	○	○	회의 규칙
마포구	○	기표식	○	○	회의 규칙
양천구	×	기명식	×	×	회의 규칙
강서구	×	기표식	×	×	회의 규칙
구로구	×	기표식	×	×	회의 규칙
금천구	×	기명식	×	×	회의 규칙
영등포구	×	기표식	×	×	기본 조례
동작구	×	기표식	×	×	회의 규칙
관악구	○	기표식	○	○	회의 규칙
서초구	×	기표식	×	×	기본 조례
강남구	○	기표식	○	○	회의 규칙
송파구	×	기명식	×	×	회의 규칙
강동구	×	전자투표	○	○	기본 조례

※ 자료 : 각 자치구의회 홈페이지 자료 및 조례·규칙으로 재구성

<표 3-2> 상임위원장 선거 서울 자치구의회 현황

구분	상임위원장 선거	근거 규정
광진구	의회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출	위원회 조례
종로구	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따라 선출 ¹⁴⁾	기본 조례
중구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	위원회 조례
용산구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	기본 조례
성동구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	위원회 조례
동대문구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 ¹⁵⁾	위원회 조례
중랑구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	기본 조례
성북구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	기본 조례
강북구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행정보건, 복지건설, 운영위원회 순으로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조례
도봉구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운영·행정기획·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본회의에서 선출 ¹⁶⁾	기본 조례
노원구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 ¹⁷⁾	기본 조례
은평구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	기본 조례
서대문구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	위원회 조례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출 ¹⁸⁾	위원회 조례
양천구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	위원회 조례
강서구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	위원회 조례
구로구	의장·부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	위원회 조례
금천구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	위원회 조례
영등포구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	기본 조례
동작구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	위원회 조례
관악구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거 ¹⁹⁾	위원회 조례
서초구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출	기본 조례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 명칭은 상임위원장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²⁰⁾	위원회 조례
송파구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의하여 선출	위원회 조례
강동구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 ²¹⁾	기본 조례

※ 자료 : 각 자치구의회 홈페이지 자료 및 조례·규칙으로 재구성

1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상임위원장 후보 등록) ①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이 선임된 날 오후 6시까지 한다. 단, 후보 등록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원만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거일 당일 상임위원이 선임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15) 운영위원회 위원장만 전체 상임 위원 중에서 선출

1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③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기표방법에 따른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제4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 등) ①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입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기간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이 선임된 다음날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후보등록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후보 등록기간은 그 다음날로 한다.

③ 후보 등록일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④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순으로 한다.

⑤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⑥ 그밖에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18)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부의장을 선거한다.

⑥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표가 새겨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한다.

19)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상임위원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등) ①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날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정견발표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20)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의장, 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표가 새겨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한다.

2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상임위원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① 상임위원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이 선임되고 그 다음날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제36조(상임위원장 선거에서의 정견발표)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순이며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임위원장은 대부분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 정견발표를 규정했던 9개 의회 중 종로구는 후보등록만 규정되어 있고, 정견발표는 없음. 노원구, 관악구, 강동구는 상임위원장도 후보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통해 선출하는 과정이 명시되어 있음
- 후보자 등록, 정견발표를 규정했던 9개 의회 중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남구는 관련 조례 및 제9대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기록한 회의록에 따르면 후보등록, 정견발표 규정이 없거나, 의장·부의장 선거에는 규정되어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음
- 특별위원장은 대부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로 선출하고 있음. 조금 다른 규정을 보면 용산구의의회와 영등포구의의회는 사무국장이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랑구의의회는 위원회에서 호선이 불가할 때에는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음
-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대부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서울 25개 자치구의의회 중 동대문구의의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영등포구의의회는 사무국장이 본회의에서 결과 보고

4) 제도 운영 장단점

가. 후보등록 vs 교황식 선출방식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의회는 의장·부의장에 출마하려는 의원의 후보등록을 통해 선출하는 방식과 후보등록 없이 모든 의원이 후보가 되어 선출될 수 있는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의장·부의장 선출함
- 후보등록 선출방식의 경우 출마자가 명확하여 의회 운영방안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공약을 바탕으로 투표를 할 수 있음. 반면 공공연히 지역사회에 출마의사를 밝히게 됨으로 등록후보의 당락결과가 알려지게 되며, 과열 선거운동이 될 수

있음

- 교황식 선출방식의 경우 출마의지를 확인할 수 없고, 후보공약을 알기 어려우며 음성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될 우려가 있음. 하지만 모든 의원이 후보가 되고, 과반 득표자 혹은 재차투표로 다수 득표자가 선출되므로 결선투표의 효과가 있음

나. 정견발표

- 후보등록을 통해 의장 등 선거를 하는 곳은 소견발표나 정견발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후보등록이 규정되지 않은 곳은 정견발표가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도 있음
- 후보등록 규정 유무를 떠나서 의회 운영방안이나 의정활동 지원 등에 대한 공약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에 따른 판단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정견발표 필요

다. 투표용지

-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고, 투표방식은 기명식 혹은 기표식으로 함
- 기명식의 경우 소속 의원 중 1명을 직접 쓰는 방식으로 준비는 매우 단순함. 하지만 직접 쓰기 때문에 필적, 기표위치 등으로 투표결과를 알 수 있어 비밀선거에 위배될 수 있는 가능성 제거 어려움
- 기표식은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투표를 하므로 간단하면서, 비밀선거도 보장할 수 있음. 하지만 후보 기재 순서에 따른 유불리 있음

5) 제도 개선안

가.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

- 광진구의회를 이끌 의장·부의장의 의회 운영방안을 모른 채 투표하는 것보다는 출마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후보등록을 하고, 공개적으로 정견발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대표성이 강화됨
- 정견발표를 의무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해볼 수 있으나, 후보등록제를 운영하면 자연스레 등록 후보가 정견발표를 할 것이라 봄
- 의장·부의장 선출에 대해 후보등록, 정견발표를 도입할 경우, 이에 준하여 선출하는 상임위원장 선거도 관련 조례에 규정을 명확히 담아 후보등록, 정견발표를 하도록 하는 게 필요. 25개 자치구 현황을 보면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한다고 하면서 적용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됨

나. 투표방식 및 투표용지

- 투표방식을 규정하여 기명식인지, 기표식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비밀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기표식을 권장하며, 투표용지에 대한 규정으로 투표방식을 명확히 할 수 있음
- 투표용지 기재순도 가나다순 혹은 지역구 편제순이나 의석배정순으로 할 수 있고, 추첨에 의해 결정할 수도 있으므로 기재방식도 규정 필요
- 투표용지를 기재순을 정해 일렬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으나, 원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한 방식임

6) 관련 규정 개정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

제7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⑦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른다.

제7조의2(후보자 등록) ① 의장·부의장 후보자의 등록은 해당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지 아니하며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²²⁾

③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등록후보자에 대해서만 투표하고,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한 의원은 재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조의3(정견발표)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²³⁾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4(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발표순서로 한다.

④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의장·부의장 선거 및 투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22)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5조(후보자 등록)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원만 피선거권을 가지며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할 수 없다.

23) 정견발표 및 투표용지 게재순서를 위한 기호는 광진구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가나다순, 지역구 편제순, 의석배정순 등 다양하며, 추첨에 의해 정할 수도 있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²⁴⁾

제6조(상임위원장) ② 상임위원장은 제2조의 상임위원회 순서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의회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출한다.

제6조의2(상임위원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날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후보 등록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제6조의3(상임위원장 선거에서의 정견발표)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상임위원회별 후보 중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면 됨

(2) 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1) 광진구의회 현황

- 교섭단체란 의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단체를 말함
- 제9대 광진구의회 의원은 14명으로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됨. 각 정당별로 원내대표는 있으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의회 내 교섭단체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거나 지원이 되지는 않음

2) 타 지방의회 운영 사례

가. 타 지방의회 교섭단체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지방의회 교섭단체 관련 조례 및 규칙은 총 34곳에 제정되어 있으며(표3-3 참고),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12개의 광역의회와 22개의 기초의회에 만들어져 있음. 서울 타 자치구는 강동구와 서대문구에만 있으며, 서대문구의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규칙으로 제정함
- 조례의 명칭은 15개 의회에서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사용하고 있으며,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의회 위원회 조례와 통합하여 규정한 곳은 19개 의회가 됨
- 「의회 기본 조례」를 사용하는 지방의회 중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로 6곳의 광역의회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기도 광주시, 부천시, 수원시로 4곳의 기초의회 뿐임

<표 3-3> 타 지방의회 교섭단체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광역의회(12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의회(22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조례 검색

나. 타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현황

- 광역의회는 소속 의원 수가 많아서 기초의회보다는 구성 의원 수가 조금 높음. 대체로 대표의원을 도와 교섭단체 운영을 지원하는 부대표를 두고 있음. 전라북도 는 광역·기초 통틀어 유일하게 1개의 교섭단체만 성립될 경우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 있음
-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원 규정이 있음. 특히 서울특별시와 경상북도는 직원 지원, 대전광역시의 출장 등에 관용차량 지원과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개최 지원, 경기도 교섭단체 공익적 사업 예산 지원, 충청남도의 교섭단체 사무실 등 지원, 연찬·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관용차량 지원 등이 눈에 띄는 지원임

○ 기초의회는 의원 수가 적어 3~5명으로 구성되며, 부대표를 두는 곳이 많지 않음. 교섭단체 지원에 있어서도 사업비나 경비 지원이 아닌 행정업무 지원만 규정한 곳도 있음

<표 3-4> 광역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현황

구분	구성 수	부대표	지원 여부
서울특별시	10명 이상	약간 명	-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사업비 등 지원 - 교섭단체 직원 지원
부산광역시	5명 이상	1명	- 규정 X
대구광역시	5명 이상	○	-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사업비 등 지원
인천광역시	5명 이상	약간 명	-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경비 등 지원
광주광역시	4명 이상	X	- 규정 X
대전광역시	4명 이상	1명	- 출장 등에 관용차량 지원 -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개최 지원 - 사업비 지원
울산광역시	5명 이상	X	-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3명 이상	1명	-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업비 지원
경기도	12명 이상	X	-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업비 지원 - 교섭단체 공익적 사업 예산 지원
충청북도	5명 이상	○	- 경비 등 지원
충청남도	5명 이상	○	-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예산 지원 - 교섭단체에 사무실 등 지원 - 연찬·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관용차량 지원
전라북도	6명 이상 ²⁵⁾	X	- 규정 X
전라남도	6명 이상	X	- 규정 X
경상북도	6명 이상	약간 명	-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사업비 등 지원 - 교섭단체 직원 지원
경상남도	의원정수 100분의 10 이상	X	- 경비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4명 이상	약간 명	- 규정 X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조례 검색

25)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1개의 교섭단체만 성립할 경우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음.

<표 3-5> 기초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현황²⁶⁾

구분(가나다순)	구성 수	지원 여부
고양시의회	5명 이상	-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 지원
광명시의회	3명 이상	-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경비 지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3명 이상	- 행정업무 지원
광주시의회	3명 이상	- 규정 X
김포시의회	3명 이상	-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경비 지원
김해시의회	5명 이상	-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사업비 등 지원
남양주시의회	5명 이상	-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 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3명 이상	-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업비 등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3명 이상	- 행정업무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4명 이상	- 행정업무 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3명 이상	-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업비 등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3명 이상	-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업비 등 지원
부천시의회 ²⁷⁾	5명 이상	-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경비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3명 이상	-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업비 등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5명 이상	- 규정 X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3명 이상	-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 지원
성남시의회	9명 이상	-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업비 등 지원
수원시의회	5명 이상	- 교섭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의정활동 지원 -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경비 등 지원
시흥시의회	3명 이상	- 규정 X
안산시의회	5명 이상	-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
안양시의회	5명 이상	- 규정 X
용인시의회	3명 이상	- 규정 X
전주시의회	5명 이상	-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업비 등 지원
천안시의회	5명 이상	-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사업비 등 지원
청주시의회	5명 이상	-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업비 등 지원
충주시의회	4명 이상	- 규정 X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조례 검색

26)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수원시의회, 천안시의회, 청주시의회, 충주시의회 등 8곳의 기초의회는 교섭단체 부대표를 둘 수 있는 규정 있음. 명수는 기재되지 않음.

27)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2(교섭단체 기능)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전반이나 특정사안에 관하여 대표연설을 할 수 있다.

3) 참고 규정 : 법령, 조례, 규칙 등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의회에 6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6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선출방식은 그 교섭단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교섭단체의 명칭, 구성연월일 등이 표기된 서류와 그 단체 소속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경상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관련된 서류를 의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⑤ 「공직선거법」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 후 제4항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제출하는 소속의원 명부 등은 의장선거일 전일까지 의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①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의 변경 및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상임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고 의장이 추천하며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장이 선출된 후 상임위원 선임을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상정 전까지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등) 의장은 제5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 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① 교섭단체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은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장 교섭단체

제1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소속 정당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수행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교섭단체는 대표의원 1명을 둘 수 있다.
 ④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기능) 교섭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지원) 의장은 제1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제31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교섭단체의 구성)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부대표 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 중에서 대표의원이 지명한다.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35조(교섭단체대표의원 역할)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교섭단체 의원의 의견 조정·종합
2.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의 대표자간 협의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2(교섭단체 기능)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전반이나 특정사안에 관하여 대표연설을 할 수 있다.

- 광진구의회는 교섭단체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 없음. 지방자치법 등 지방의회 관련 법령에도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 없음
-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본으로 참고하고, 「울산광역시 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체 부분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부대표 선출규정, 대표의원의 역할 등을 규정한 타 조례를 바탕으로 광진구 상황에 접목시킬 수 있을 거라 봄
- 서울로만 한정해서 보면 서울시의회는 기본 조례에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근거를 둔 후 따로 조례를 만들어 그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 노원구의회는 기본 조례에만 규정하였고, 강동구의회는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를 따로 만들었으며, 서대문구의회는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

4) 제도 운영 장단점

- 대한민국 정치가 거대 양당의 고정적인 대결구도로 흐르고 있어 문제해결형 교섭단체가 아닌 의견대립형 제도로 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음. 또한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이 익숙하지 않아 제대로 운영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의회 의장단, 운영위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도와 충돌 혹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될 수도 있어 교섭단체를 구성하더라도 상호역할을 명확히 하고, 논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함

- 교섭단체는 의회운영 및 정책과 관련하여 정당 또는 소속의원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교섭단체 간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는 협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추구함
- 의회는 타협과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으로 갈수록 정당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정당 상호간 반목이 아닌 소통을 통해 바른 의회상을 정립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나아가는 데 있어 교섭단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교섭단체 스스로 정책생산과 주민소통 등 실력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5) 제도 개선안

- 상위법의 부재로 제도 운영 근거가 미약하고, 그로 인해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 의원 수가 타 자치구의회에 비해 다소 적은 광진구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꼭 있어야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숙고 필요
- 교섭단체 운영이 광진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회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명을 바꾸거나 내용만 삽입해서 개정할 수도 있음. 또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따로 만들 수 있음. 광진구의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한다면 ‘○장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으로 내용을 담는 것을 제안함
-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 인원은 14명의 광진구의회 규모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안제출 발의자 수(재적의원 5분의 1이상)를 감안하여 ‘3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보임
-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에 대해서는 규정하되, 선출은 해당 교섭단체에서 자유롭게 하고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 될 듯함. 대표의원의 권한과 대표연설에 대해서도 규정하면 진일보한 조례가 될 수 있음

- 교섭단체의 지원에 대해서는 행정업무 및 의회공동운영경비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면 광진구의회 규모에 적합하다고 봄. 직원, 관용차량, 사무실 지원 등은 추후 교섭단체 활동 진행을 보면서 추진해도 될 거라 전망함

6) 관련 규정 제정안

-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완결성이 높은 쪽으로 제정안을 제안하고, 실제 적용할 시에는 위에 언급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가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선출방식은 그 교섭단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교섭단체의 명칭, 구성연월일 등이 표기된 서류와 그 단체 소속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관련된 서류를 의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⑤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 후 제4항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제출하는 소속의원 명부 등은 의장선거일 전일까지 의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①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의 변경 및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섭단체대표의원 역할) ①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교섭단체 의원의 의견 조정·종합
 2. 소속 교섭단체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 선임 요청
 3.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의 대표자간 협의
-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전반이나 특정사안에 관하여 대표연설을 할 수 있다.

제7조(상임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고 의장이 추천하며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장이 선출된 후 상임위원 선임을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상정 전까지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등) 의장은 제5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의정자문기구

1) 광진구의회 현황

- 광진구의회에는 조례를 통해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의정자문을 구할 수는 없으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입법·법률고문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하지만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을 3명 이내로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받기에 한계가 있음
- 조례에 명시된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를 보더라도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의정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 등 입법법률 사항에 치우쳐져 있어 입법·법률고문 운영만 하기에는 복잡다양한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요즈음 경향에 비취 적절하지 않음

2) 관련 규정 : 법령, 조례, 규칙 등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자문기관은 집행기관의 자문기관에 대한 조항으로 지방의회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직접적인 근거라 하기 어렵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도 속한다고 봤을 때 지방의회도 자문기관을 둘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은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가급적 넓게 보장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의회에 자문기관을 둘 수 없다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고,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기관을 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 조례로써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²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의정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

②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자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 한다.

28)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의견13-0306, 2013.10.31.) 참고

: 지방의회에 자문기관의 성격인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https://www.moleg.go.kr/lawinfo/reglAnalysis/reglAnalysisInfo.mo?mid=a10107020000&pageIndex=155&caseSeq=2013003794&rowIdx=6>

2) 참고 규정 : 법령, 조례, 규칙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입법 및 정책 제안 기능 강화, 도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제안,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쟁점안건 등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
2. 자치입법, 정책,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3. 의정발전방안 제시
4.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의정활동과 자치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 지역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덕망 있고 신뢰성 있는 지역 인사
3. 5급 상당 이상 전직공무원, 교수,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전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5.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위촉된 당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임된 교육의원이 아닌 상임위원의 임기 종료일 까지로 한다.

⑤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활동 및 지원) ①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위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위원회 활동 보고회 또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의 수집과 소통,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교육, 워크숍,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2(자문의뢰) 도의회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장은 의정현안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따라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4) 타 지방의회 운영 사례

○ 서울 25개 자치구의회의 중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자치구는 중구, 동대문구, 노원구, 송파구를 제외한 총 21개의 자치구의회의가 있음.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서울 자치구의회의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은평구, 구로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로 총 10개가 있음

○ 중구의회의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통해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구성함.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입법자문위원 운영 조례」를 통해 6명 이내의 입법자문위원을 두고,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과제 용역 수행,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 등의 자문을 하도록 함

○ 서초구의회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분야 중 해당 법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민원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음. 주민들에 대한 법률, 세무, 건축 등 각 전문분야에 대한 상담,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 등에

대한 자문 등을 함. 민원자문단은 의정자문단의 기능도 있으나,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전문 분야별 상담 및 자문을 진행하는 것²⁹⁾으로 보아 민원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임

-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는 2020년 9월 7개 분과위원회 54명으로 구성되었고, 2년의 임기 동안 7개 분과별 회의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도의회에 23건의 자문 및 정책을 제안함³⁰⁾

5) 제도 운영 장단점

- 입법·법률고문만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의정자문에 한계가 있으며, 다수가 참여하는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음. 의정자문위원회 활동으로 의회 주민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음
- 의정자문위원회가 자칫 형식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으며, 질높은 의정자문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존폐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 있음. 더불어 업무과다를 호소하는 의회 사무국의 특성 상 집행부 위원회 운영보다 부족함이 노출될 때 참여주민들의 의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수 있음
- 그럼에도 다수의 주민참여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로 나아가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음. 다만 의정자문 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정책적 효능감을 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6) 제도 개선안

- 고도의 전문화된 입법·법률고문 제도를 없앨 필요는 없어 보이며, 입법·법률고문과 의정자문위원 2개의 의회 자문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2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현장방문·상담) 의장이 요청하는 경우 자문단은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전문 분야별 상담 및 자문을 진행한다.

30) 출처 : 제주의소리, 2022.06.21. “제주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23건 제안·건의’ 의정 동반자 역할 토크” <http://www.jeju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4983>

-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서울 타 자치구의회의 경우 10~15명 이내로 자문위원을 구성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의정자문위원회를 제안함. 50명 내외의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전문적인 자문뿐만 아니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임. 또한 분과구성을 통해 유명무실한 자문위가 아닌 활발한 활동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짐

7) 관련 규정 제정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입법 및 정책 제안 기능 강화,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제안,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쟁점안건 등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
2. 자치입법, 정책,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3. 의정발전방안 제시
4. 그 밖에 의장이 의정활동과 자치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한쪽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 지역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덕망 있고 신뢰성 있는 지역 인사
3. 5급 상당 이상 전직공무원, 교수,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전직 지방의회 의원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활동 및 지원) ① 의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위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위원회 활동 보고회 또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의 수집과 소통,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교육, 워크숍,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자문의뢰)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장은 의정현안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의장은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따라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 호선하며, 분과위원장이 사고 시는 분과위원 중 최연장자가 분과위원장을 대신한다.

④ 분과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회 소속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④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현안 사항이 급박하여 정상적인 소집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2. 그 밖에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협조 요청) ①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등의 협조를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자문에 회신한 위원에 대하여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4) 의회 홍보 활성화

1) 광진구의회 현황

- 광진구의회 의정홍보는 광진의회소식, 의정백서, 광진의정 등 의정활동을 알리는 책자와 의회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참관 소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보도자료 제공으로 의회 활동을 언론에 알리고 있음. 또한 온라인상으로는 의회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광진구의회 SN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표 3-6> 광진구의회 홍보 매체 현황

매체		배포처	부수(책자)
의회 홍보 책자	광진의회소식 (연 1회)	- 관내 : 학교, 도서관, 구민체육센터 등 주요기관	각 400부
	의정백서 (4년마다)	- 관외 : 서울시·자치구 의회, 국립중앙도서관 등	
	광진의정 (2년마다)	- 해외·국내 비교시찰 및 기타 연구단체 기관 방문 시 제공	400부
	참관 소책자	- 의회 참관·방문자에게 제공	1,000부
구정홍보책자 "아차산 메아리"		- 관내 전체가구	광진구청 제작·배포
보도자료		- 신문사(약 45군데)	
인터넷 생중계		- 의회 홈페이지 :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실시간 중계	
광진구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gwangjin.go.kr	
SNS	블로그	https://blog.naver.com/gjcouncil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wangjincouncil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j_council	

※ 자료 : 광진구의회 제공 자료 및 홈페이지 참고

가. 의회 홍보 간행물

- ‘광진의회소식’은 2008년부터(창간호) 연1회 발간을 이어왔으며³¹⁾,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회 소개, 안건처리현황, 의원별 의정활동, 위원회 활동, 의원연구단체 소개 및 언론에 비친 광진구의회 등으로 내용이 채워져 있음
- 2년마다 발행하는 ‘광진의정’은 영문으로 Information of the Gwangjin-gu Council 로 국내외출장 시 광진구의회를 알릴 목적으로 작성된 간행물로 주로 의회 연혁, 구성, 기능 등 의회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광진구의회 제1~7대 의정활동을 정리한 의정백서는 4년마다 발행하는 간행물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기타 의정활동 소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기록한 광진구의회 역사가 담겨 있음
- 구정홍보책자 ‘아차산 메아리’에 매달 실리는 의회소식으로 임시회 및 정례회 결과와 의원, 위원회, 연구단체 등의 활동을 알리고 있음. 주민에게 의회소식을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할 수 있는 매체이나 발행인은 광진구청장으로 집행부 소식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부분임
- 기타로 광진구의회에 방문하는 청소년, 주민 등을 위한 ‘의회안내책자’를 발행하여 의회 구성 및 활동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나. 의회 홈페이지 및 SNS

- 광진구의회 홈페이지는 PC, 모바일로 모두 볼 수 있으며, 의회, 의원별 페이지, 상임위별 페이지, 생방송, 청소년의회, 영문 홈페이지 등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광진구의회 활동이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제공되는 홍보매체라 할 수 있음
- 광진구의회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튜브

31) 2009, 2017년 광진의회소식은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있지 않음

는 하고 있지 않음. 의회 SNS에는 간단한 의정활동이 소개되어 있으나, 팔로워 및 방문객이 많지는 않은 상황임

다. 의회 홍보팀

- 의회 사무국에 홍보팀이 있으며, 의회 홍보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음. 홍보팀 분장사무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에 나와 있음. 의회홍보팀은 1명의 팀장과 3명의 주무관이 홍보 업무 처리를 함

<표 3-7> 광진구의회 의회홍보팀 업무 현황

소속	직위	담당업무
의회홍보팀	의회홍보팀장	의회홍보업무 총괄, 의회홍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주무관	인사말씀, 홈페이지 구축, 인터넷생방송, 의회 참관 운영(학생), 홍보물 발간
	주무관	언론매체 보도지원, 아차산메아리 작성, 의회 참관 운영(일반), 홍보 동영상 제작 및 편집
	주무관	사진촬영 및 자료관리, 사진관련 홍보물 영상 제작, 포토북 및 액자제작

※ 자료 : 광진구의회 홈페이지

2) 관련 규정 : 법령, 조례, 규칙 등

- 광진구의회 조례, 규칙 등에는 의회 홍보와 관련된 규정이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간행물 보존에 관한 내규」³²⁾가 있으나 보존에 관한 규정으로 콘텐츠 생산이나 배포, 전파 등 의회 홍보활동과 관계없음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홍보팀의 분장사무로 의회 홍보 활동을 가늠할 수는 있음

3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간행물 보존에 관한 내규」 제3조(간행물의 정의) 이 내규에서 "간행물"이라 함은 의회에서 각종 형태로 발간되는 책자 또는 도서류로서 영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광진의회소식’이나 ‘의정백서’ 등이 간행물에 포함되지만 의회홍보와 관련된 규정이라 할 수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제2조(사무분장) ④ 홍보팀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홍보업무의 총괄
2. 홍보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3. 보도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5. 의정백서, 광진의회소식, 광진의정, 의회안내 소책자 발간 및 도서관리
6. 인터뷰자료의 작성 및 분석
7. 의정활동 홍보 동영상 제작
8. 의장 인사말씀 작성
9. 아차산메아리 작성
10. 의회 참관 프로그램 운영
11. 인터넷 생방송 운영 및 장비 관리
12. 사진촬영·편집 및 자료관리
13. 포토북, 인사카드 및 액자 제작

3) 타 지방의회 운영 사례

○ 의회 홍보물 및 SNS 운영 등은 서울 25개 자치구의회 현황이 비슷함

○ 의회 홍보 활성화 및 홍보물 제작 주민참여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는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 의회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출연 등,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석 등을 통해 의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향상을 목적으로 홍보대사의 수에 제한 규정은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의회 대시민 홍보소식지인 ‘서울의회’ 및 영상홍보물의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 용산구의회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명예기자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강동구의회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홍보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이 있음. 그리고 서대문구의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가 있어 제작 단계부터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의정 홍보를 하고 있음

- 용산구의회에서 운영하는 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20명 이상 35명 이하로 위촉. 명예기자는 용산구의회에 대한 대 시민 홍보, 구의회 홍보 모니터,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 참석, 주민불편 및 불만사항 의견 수렴 및 건의, 의회발전을 위한 제도 건의 및 미담사례 발굴 등의 활동을 하며, 전문적인 교육의 기회도 제공됨. 또한 우수기사로 채택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나 상품권 등이 지급되고, 의장 표창 등을 수여하기도 함. 명예기자 신분증도 발급하여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능 기대됨
- 강동구의회 홍보자문위원은 강동구의회 의원 2인 및 사무국장,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홍보업무 및 홍보물 제작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7명 이내로 구성. 의회홍보 종합계획 및 의회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대내.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팸플릿, 리플릿, 포스터, 영상물 제작에 관한 사항, 의회홍보물 제작규모, 디자인, 주제 등 전반적 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하는 역할
- 서대문구의회는 연2회 의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의원 3명 이내,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서대문구 구민 4명 이내로 편집위원회를 구성.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편집 등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 의정소식지이지만 모든 구민이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게재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하기도 함

4) 광진구의회 홍보 분석

가. 의회 홍보 간행물

- 의회소식지, 광진의의정, 의정백서, 의회안내책자 등 의회 홍보 간행물이 각각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발행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의회 활동 소식을 알릴 수 매체로써는 한계가 있음. 선거법으로 인한 제약, 오프라인 매체 비선호도, 예산 문제 등 여러 어려운 요소가 있음

- 구정소식지인 ‘아차산메아리’에 실리는 의회소식이 신속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매주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으나, 구청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이며 지면부족 등 한계가 명확함

나. 의회 홈페이지 및 SNS

- 의회 홈페이지 및 의회에서 운영하는 SNS가 전체적으로 활동이 부족하고, 그로인해 활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줌
- 의회홈페이지는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나 불필요한 카테고리가 많고, 주민참여공간이 너무 적음. 의원 프로필 SNS 아이콘도 작동하지 않는 게 많음. 회의록도 읽기 편한 방식으로 개선 필요
- 광진구의의회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하고 있지만, 꾸준히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팔로어가 저조한 상황. 전체적으로 빠른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주민과의 소통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너무 건조한 포스팅이 대부분임. 유튜브는 운영 않고 있음

다. 홍보 업무의 전문성

- 1명의 팀장과 3명의 주무관으로 구성된 의정홍보팀은 의회 홍보와 관련된 업무 과중 때문인지 어느 한부분이라도 뚜렷한 성과를 찾기 어려움. 순환보직으로 구청에서 파견된 의회 사무국 운영의 구조적 한계일 수 있음
- 사진 촬영, 보도자료 작성·배포, 의회 홈페이지 운영, 정기 간행물 발간 등 전통적인 의회홍보 업무도 벽차겠지만, 갈수록 홍보매체가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매체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고 의원들의 홍보 활성화 요구에 만족할만한 대응을 해주기 어려운 환경일 수 있음

라. 광진구의회 의원 및 직원 홍보 만족도

○ FGI를 통해 의원들이 광진구의회 홍보에 부족함을 느낌을 알 수 있었음. 홍보 인력이 충원되어서 의회 홈페이지나 의회 SNS가 활발히 운영되기를 바람. 의회사무국 직원 역시 의회 홍보에 대한 업무부담이 크고, 전문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느낌. 특히 백서 제작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함

<표 3-8> 광진구의회 설문조사 질문 및 결과(의원용)

설문조사 질문 및 결과(의원용)	전혀 그렇지 않다 (없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많다)
• 의회 홈페이지가 의정활동이나 의회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7	3	1
• 의회 SNS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5	6	1	0
• 현재 의회 소식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충분히 잘 홍보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0	4	7	3	0

<표 3-9> 광진구의회 설문조사 질문 및 결과(직원용)

설문조사 질문 및 결과(직원용)	전혀 그렇지 않다 (없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많다)
• 의회 홈페이지가 의정활동이나 의회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2	5	7	12
• 의회 SNS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4	10	6	5

○ 의원들의 경우 홍보가 대체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편이고, 직원들의 경우 의원들과 비교했을 때는 기본적인 홍보활동은 꽤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함

5) 의회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가. SNS 홍보 강화

- 온라인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홍보매체의 경우, 대중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생산이 중요함. 현재의 의회사무국 홍보팀 인력으로는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홍보물 양을 늘리기에 업무량 과다 등의 한계가 있음. 따라서 홍보전문 인력을 확충하거나 온라인 홍보매체에 한해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할 것을 제안함
- 유튜브 채널 운영
 - 현재 광진구의의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간 중계 영상 이외에도 의회를 소개하는 영상, 의회 활동 영상을 핵심적으로 전달하는 영상이 필요함. 이런 영상들을 영상 관련 접근성이 가장 좋은 유튜브 채널로 운영할 필요 있음
 - 의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의원들에 대한 방송 관련 교육도 진행하여 의원참여방송을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면 의회 홍보효과가 상승할 것이라 기대됨

나. 구독 채널 운영

- 정기 이메일 뉴스레터
 - 양방향 소통 창구로서 구독 채널을 운영할 수 있음. 이메일 뉴스레터는 대중적으로 가장 접근성 좋고 인기 있는 홍보 수단 중 하나임. 홈페이지 혹은 SNS를 통해 구독신청을 받고, 신청한 주민들에게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
- 카카오톡 채널 운영
 - 카카오톡 채널을 구독한 주민들에게 월 1회 의회 소식 발송

다. '광진구의회 명예기자단' 운영

- 광진구의회 간행물 및 SNS에 주민참여도가 너무 낮음. 주민들과 함께 제작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홍보물 필요. 주민참여를 통해 높은 홍보효과 창출할 수 있음
- 용산구의회에서 명예기자단을 운영하는 것처럼 '광진구의회 명예기자단'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필요. 명예기자단은 의정에 참여할 뿐 아니라 의회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로서 30명 내외의 광진구 주민들로 구성하여 의회 소식을 전달하는 서포터즈 역할을 부여함. 채널별로 팀을 꾸려 채널에 맞는 콘텐츠를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주민참여 의정 콘텐츠 경진대회를 여는 등 이벤트를 열어 참여를 촉진함
- 전국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명예기자단, 의정 명예행정관, 의정모니터단, 의정 서포터즈, 의정참여단 등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의회와 주민을 잇는 소통창구로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라. 정기 의회홍보책자 일원화

- 광진구의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의정홍보책자 중 연 1회 발행하는 <광진의회소식> 과 2년에 한번 발행하는 <광진의정> 을 통합할 것을 제안함. <광진의정> 의 경우, 의회에 대한 기본 상식 및 정보가 내용의 대부분이고 매 부수마다 담기는 내용이 거의 동일함. 따라서 <광진의회소식> 으로 연 1회 일원화하여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임
- 웹 카드뉴스를 적극적으로 제작 활용해서 의회 홍보책자의 내용도 담고, SNS채널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웹 카드뉴스 제작을 위해 사무국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업체를 통해 할 수도 있음. 전주시의회외의 경우 상임위별로 의정활동 웹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 의원들 역시 웹 카드뉴스를 본인의 의정활동 홍보에 적극 사용함

6) 관련 규정 제정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정 홍보 활성화 조례」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주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정소식지·의정뉴스·인터넷 홈페이지·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의정소식지, 의정뉴스 등 홍보영상,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주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주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포
2. 의정뉴스, 홍보영상 등 제작 및 배포
3.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4. 소셜미디어 운영
5.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2장 홍보매체의 운영

제5조(홍보매체의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주민소통 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주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국정·시정·구청·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의정소식지 발행) ① 의회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하며, 소식지의 명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 ② 소식지는 연 1회 이상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발행 부수는 광진구 인구·세대수 및 그의 증감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 ④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 ⑤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정뉴스 제작) ① 의회 의정뉴스의 제작인은 의장으로 하며, 의회 의정뉴스의 명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 ② 의회 의정뉴스는 연 1회 이상 제작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작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홍보영상 등 제작) 의회 주요정책, 의정정보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 ② 의장은 홈페이지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소셜미디어 운영) ① 의장은 구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에 가입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소셜채널에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소셜채널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한다.

제11조(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취재·촬영·편집·디자인·개발·유지보수·인쇄·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명예기자단 구성 및 운영

제12조(설치) 의장은 주민의 의정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명예기자단(이하 “명예기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구성 및 임기) ① 명예기자단의 규모는 30명 내외로 한다.

② 명예기자단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기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주요활동 및 의무) ① 명예기자단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한 대 시민 홍보
2. 의회 홍보 모니터
3. 의회 제작 콘텐츠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작성·편집 등
4.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 참석
5. 주민불편 및 불만사항 의견수렴 및 건의
6. 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 건의 및 미담사례 발굴 등

② 명예기자단은 다음 각 호의 교육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1. 인터뷰를 위한 기본요령, 인터뷰방법, 기사작성 요령 전문가 교육
2. 저작권침해, 홈페이지 게시판 올바른 사용법 전문가 교육

제15조(활동지원) 의장은 명예기자단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해촉) 명예기자단 중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명예기자 신분증) 명예기자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신분증 규격, 서식 및 색상 등

가. 신분증에는 신분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나.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미색으로 한다.

2.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

3.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가.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된 후에 행하여야 한다.

나.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

다.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신분증의 반납

가. 의장은 명예기자의 해촉 시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나.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실비 변상) 의장은 명예기자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자료의 관리 및 이벤트 운영 등

제19조(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공모전·이벤트 등) ① 의장은 주민의 의정 참여, 주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식지, 의정뉴스,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주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운영된 의정소식지, 의정뉴스,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른 의정소식지, 의정뉴스,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로 본다.

4. 광진구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체계

(1) 정책지원관제

1) 광진구의회의 현황

가. 정책지원관의 업무 분장 및 지휘체계

- 정책지원관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2.1.13.)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됨. 정책지원관은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와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 권한³³⁾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됨
- 현재 광진구의회의 입법 지원 인력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산하에 전문위원 2인, 주무관 2인, 정책지원관 3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책지원관의 업무 지휘체계가 명확하지 않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상으로는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지휘를 받게 되어있으나, 전문위원실에 소속되어 상임위원장 - 전문위원의 업무 지시 아래에 있음. 또한 모든 의원이 모든 정책지원관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원과 상임위원장, 전문위원의 지휘를 동시에 받아 업무 지시하는 쪽도 수행하는 쪽도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
- 의원의 입장에서는 전문위원이나 정책지원관 모두 다른 의원과의 업무중복 등으로 필요한 때에 업무를 지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함. 또한 의원의 업무 성격상 보안이 중요할 수 있는데 여러 의원을 동시에 지원해야 하다 보니 보안이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견이 있었음³⁴⁾

33)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 심의·확정,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

34) 광진구의회 FGI 결과(22.12.01.)

<표 4-1> 광진구의회 입법·정책 지원 인력 현황

직책	담당 업무
전문위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업무 총괄 - 의원연구단체 운영
전문위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건설위원회 업무 총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검토(복지건설위원회 소관) - 의원연구단체 운영 등
주무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제출 안건 검토(복지건설위원회 소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검토 - 전문위원실 서무 업무(예산지출 등) - 의원연구단체 관련 업무 지원
주무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 입법활동 법률 검토 및 연구 지원 - 의원발의 및 구 제출 안건 검토(운영위·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행정사무감사 업무 추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검토 - 의원연구단체 관련 업무 지원
정책지원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발의 안건 입안지원, 예·결산 심의 자료작성 - 구정질문·서류제출요구서 등 관련 업무 지원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의원연구단체 등 관련 업무 지원
정책지원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발의 안건 입안지원, 예·결산 심의 자료작성 - 구정질문·서류제출요구서 등 관련 업무 지원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의원연구단체 등 관련 업무 지원
정책지원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발의 안건 입안지원, 예·결산 심의 자료작성 - 구정질문·서류제출요구서 등 관련 업무 지원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의원연구단체 등 관련 업무 지원

※ 자료 : 광진구의회 홈페이지

- 실제 의원 및 입법정책 담당 직원들에게 보좌 인력에 대한 업무분장 만족도를 설문³⁵⁾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2> 광진구의회 업무분장 만족도 설문결과

Q. 전문위원-정책지원관 간 업무분장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수	2	8	5	4	0
비율	11%	42%	26%	21%	0%

- 적절히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21%인데 반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합쳐서 53%에 달함. 당사자들 역시 지휘체계와 업무 범위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 관련 광진구의회 조례³⁶⁾ 및 규칙³⁷⁾에는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나. 정책지원관의 채용

- 현재 정책지원관의 채용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자의적인 채용이 이뤄질 수 있어 채용 공정성 논란이 있을 우려.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하여 채용과 임용계획, 임용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35) 본 연구 ‘광진구의회 운영현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 결과(2022.12.01.)

3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37) 전문위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음.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④ 시·도와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의 민법상 친족을 해당 의회의 정책지원관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함

2) 관련 규정 : 법령, 조례, 규칙 등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 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 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³⁸⁾(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4절 평 정

제37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에 따라 의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8과 같다.

② 평정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의장이 따로 정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19와 같다.

제5절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제3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21조의5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성과연봉 지급, 임용약정기간 연장 또는 임용약정해지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한다.

④ 성과우수자가 근무기간 동안 별표 20의 평정횟수 2분의 1 이상으로 상위 20%의 최상위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영 제21조의 4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직전 3회 근무실적평가가 평균 A등급 이상이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전체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는 근무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9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8)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사항 등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 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3) 타 자치구의회 운영 사례

<표 4-3> 서울 자치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자치구	의석수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소속	업무분장
광진구	14	2명	3명	전문위원팀	각 상임위 지원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
종로구	11	3명	2명	의사팀	의사팀 업무 지원
중구	9	2명	2명	정책지원팀	각 상임위 지원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
용산구	13	2명	3명	전문위원팀	각 상임위 지원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
성동구	14	2명	3명	전문위원팀	각 상임위 지원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
동대문구	19	4명	4명	전문위원팀	각 상임위 지원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
중랑구	17	3명	3명	의사팀	상임위 담당 기구별로 분담하여 의정활동 지원
성북구	22	4명	5명	전문위원팀	각 상임위 지원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
강북구	14	3명	3명	전문위원팀	각 상임위 지원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
도봉구	14	3명	4명	운영지원팀	운영지원팀 업무 지원
노원구	21	4명	5명	정책지원팀	각 상임위 지원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
은평구	19	3명	3명	전문위원팀	각 상임위 지원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
서대문구	15	2명	3명	전문위원팀	각 상임위 지원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
마포구	19	4명	4명	정책지원팀	각 상임위 지원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
양천구	18	4명	3명	의정팀	의정팀 업무 지원
강서구	22	3명	3명	정책지원팀	각 상임위 지원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
구로구	16	3명	4명	정책지원팀	각 상임위 지원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
금천구	10	3명	2명	의사팀	의사팀 업무 지원
영등포구	17	4명	4명	의정팀	의정팀 업무 지원
동작구	17	3명	4명	정책지원팀	각 상임위 지원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
관악구	22	5명	5명	행정지원팀	각 상임위 지원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
서초구	16	3명	4명	정책지원팀	각 상임위 지원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
강남구	23	5명	5명	정책지원팀	각 상임위 지원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
송파구	26	3명	6명	전문위원팀	각 상임위 지원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
강동구	18	4명	4명	의정팀	의정팀 업무 지원

※ 자료 : 자치구의회 홈페이지 및 조례·규칙

-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운영현황을 보면, 8개 의회가 ‘정책지원팀’을 신설하여 정책지원관들의 팀을 따로 꾸린 것을 볼 수 있음. 나머지 의회는 기존 의회사무국 업무에 부족한 업무를 채워주기 위한 인력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음.
- 정책지원관을 의사팀으로 배치해 의사진행과 관련된 보조업무를 맡게 한 의회도 있음. 이는 애초에 정책지원관제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법령에서 지정한 입법·정책 관련 직무에서 벗어나는 것임. 입법과 일반행정 지원 등의 업무 범위와 그에 맞는 소속을 명확히 나누어 분담할 필요가 있음
- 관악구의회의 경우, 정책지원관의 임용과 지휘위원의 지정, 근무실적 평가, 비밀엄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별도로 제정함

4) 제도 운영 장단점

가. 정책지원관의 소속 : 기존 팀 소속 vs. 별도의 팀 신설

- 정책지원관은 기존의 전문위원실 혹은 의정팀 등에 소속되는 경우와 별도로 신설한 정책지원관끼리의 팀에 소속되는 것으로 나뉠 수 있음
- 기존 팀 소속의 경우, 의원의 지휘를 받기보다는 소속 팀의 장의 지휘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므로 의원의 보좌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임. 정책지원관의 원래 업무와 관련 없는 의사팀 등에 소속되어 의회사무국의 행정업무를 맡는 경우도 있음. 이는 정책지원관의 원래 취지인 의회의 입법정책 역량 강화와는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됨
- 별도 팀을 신설하는 경우, 의원의 지휘를 받게 되어 의원들의 개인보좌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음. 한 예로, 강서구의회의 정책지원팀 소속 정책지원관들은 각기 다른 선거구의 의원들을 맡아서 보좌하는 것으로 업무가 분장됨. 각 의원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입법 정책을 보좌할 수 있는 구조임

나. 정책지원관의 채용 : 분야별 전문성 vs. 의원별 필요

- 올해(2022) 의원 정수의 4분의 1을 채용하고,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1/2인 7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해야 함. 광진구의회는 현재보다 4명의 정책지원관을 더 채용하게 됨
- 어떤 기준을 우선하여 채용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음. 광진구의회 FGI(Focus Group Interview, 초점집단면접) 진행 결과, 토목과 건설, 예산 및 세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인재를 뽑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 전문성을 우선 기준으로 채용하는 경우, 의원의 개별보좌보다는 상임위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특정 분야 전문성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여러 의원들의 업무를 동시에 보좌하게 될 수 있음
- 개별 의원들의 필요를 우선하여 채용하는 경우, 정책지원관들의 업무가 보좌하는 개별 의원들에 집중하여 진행될 수 있음. 특정 분야 전문가(specialist)보다는 의원의 필요에 따라 다방면의 지식을 가진 제너럴리스트(generalist)가 채용될 수 있음. 더욱 긴밀한 보좌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상임위 업무 지원은 부족할 수 있음

5) 제도 개선안

가. 정책지원팀 신설

- 정책지원관을 모은 팀(이하 '정책지원팀')을 신설하여 전문위원실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함. 전문위원실은 기존처럼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업무(의안 검토, 의사진행 등)를 전담으로 맡음. 정책지원팀은 정책지원관 도입 취지에 따라, 1명 당 의원 2명씩을 맡아 각 의원의 지휘를 받아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함
- 현재 정책지원관의 담당업무가 입법 활동 지원 업무와 일반행정 업무가 섞여

있어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정책지원관은 일반행정 업무와 분리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023년까지 총 7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게 되므로, 별도의 팀을 구성하기에 충분한 인원이라 사료됨
- 정책지원팀의 사무공간 또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함. 의원 보좌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의원실 옆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의회 신청사 건립 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나. 업무범위 세분화 · 업무분장 체계화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³⁹⁾
 1. 의원의 조례 제정 · 개폐, 예산 · 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 · 조사 · 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자료)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 분석 지원
 3.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5분발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 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 · 세미나 · 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의 민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 분석 등 지원
 7. 의원외교 ·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 · 조사 · 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 · 조사 · 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 · 조사 · 분석 및 연구 등 지원
 10.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 · 수집 · 분석 및 지원
 11. 그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 · 분석 · 조사 및 지원⁴⁰⁾

39)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 조사 · 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40)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 참조

-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직접 지휘 아래 일할 수 있도록 의원을 기준으로 배치를 함. 정책지원관 1인은 선거구와 상임위원회를 각기 서로 달리하는 의원 2인을 맡아서 보좌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함
 - 이는 의원과 정책지원관이 1대 1로 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최대한 의원끼리 겹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의원의 의정활동 보안을 지키기 위한 것임

<표 4-4> 광진구의회 정책지원팀 업무분장 예시

직위		담당 업무
정책지원팀장		정책지원팀 업무 총괄 의장, 기획행정위 의원 1 입법·정책지원
팀원	1	복지건설위 의원 1, 기획행정위 의원 2 입법·정책지원
	2	복지건설위 의원 2, 기획행정위 의원 3 입법·정책지원
	3	복지건설위 의원 3, 기획행정위 의원 4 입법·정책지원
	4	복지건설위 의원 4, 기획행정위 의원 5 입법·정책지원
	5	복지건설위 의원 5, 기획행정위 의원 6 입법·정책지원
	6	복지건설위 의원 6, 기획행정위 의원 7 입법·정책지원

※ 정책지원관 한 사람이 동일 선거구 의원 두 명을 동시에 보좌하지 않도록 함

다. 정책지원관 채용

- 임용 자격과 절차, 시험, 보수, 평정 등 정책지원관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조례와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규정할 필요 있음
- 정책지원관 채용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의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와 지휘체계,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재정립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임. 의원들의 기대와 요구를 고루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의 채용 및 운영을 위한 의원 간 협의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라. 정책지원관 교육

- 현 정책지원관들의 다수가 의회 업무 경력이 없거나 짧기 때문에 의원 교육과 별도로, 전문위원실을 포함하여 의회 입법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 직원 교육 연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따로 책정하여 내·외부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

6) 관련 규정 제개정안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분 및 직급)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7급으로 한다.

제3조(채용) ① 정책지원관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주관으로 실시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채용 사무에 관해서는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순으로 한다. 다만, 필기시험은 생략하거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임용계획 수립) 의장은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공고 이전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응시자격요건) 정책지원관의 응시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6조(시험과목) 의장은 정책지원관 선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론
2. 지방의회실무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제7조(시험위원) ① 의장은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중 5명 이상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2/3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알게 된 사실 또는 사생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③ 의장은 시험위원에게 관련 수당 및 여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험의 공고) 의장은 시험 실시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의 법령상 근거
2. 임용예정기관 및 담당직무내용
3.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4. 임용요건
5. 임용자격
6.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7. 시험과목
8. 응시원서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제출기한과 접수장소
9.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10. 그 밖에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응시원서 접수) ① 응시원서는 직접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한다.

②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최소 3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합격자 공고) 의장은 채용시험 단계별로 합격자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자에게 문자전송 또는 직접 유선통화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임용약정) 정책지원관의 임용약정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임용약정서에 따른다.

제12조(보수 등 고지) 의장은 제11조에 따라 임용약정서를 발급하기 전에 보수, 복무, 후생복지 및 고용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3조(직무범위)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 분석 지원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서류(자료)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의 민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분석 등 지원
7. 의원외교·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10.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
11.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지원

제14조(지휘·감독) ① 정책지원관은 제13조에 따른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사무국장은 각 정책지원관의 지휘의원을 지정한다.

제15조(배치) 정책지원관은 사무국 정책기획팀에 둔다. 다만, 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지를 의원실로 할 수 있다.

제16조(근무실적 평가) 의장은 각 정책지원관 지휘의원의 평가를 반영하여 매년 정책지원관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한다.

제17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친족 등 채용금지)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친·인척은 의회의 정책지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제19조(비밀준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손해를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정책지원관 임용, 복무,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침 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책지원관 도입 정수에 관한 특례) 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개정(안)

제2조(사무분장)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팀·의사팀·홍보팀·정책지원팀을 두고, 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임명한다.

⑤ 정책지원팀 분장사무는 제4조와 같다.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 분석 지원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서류(자료)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의 민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분석 등 지원
7. 의원외교·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 10.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
- 11.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지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사무분장) ①</u>----- ----- -----</p> <p><u>의정팀·의사팀·홍보팀을</u>----- -----.</p> <p><u><신 설></u></p> <p>제4조(정책지원관)</p> <p><u>6.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u></p> <p><u>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u> <u>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u> <u>· 분석 ·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u></p>	<p>제2조(사무분장) ①----- ----- -----</p> <p>의정팀·의사팀·홍보팀·정책지원팀을 -----.</p> <p>⑤ 정책지원팀 분장사무는 제4조 와 같다.</p> <p>제4조(정책지원관)</p> <p>6. 의원의 민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분석 등 지원</p> <p>7. 의원외교·공무국의활동 관련 자료 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p> <p>8.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p> <p>9.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p> <p>10.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p> <p>11.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지원</p>

(2) 의원연구단체 운영

1) 광진구의회 현황

○ 광진구의회는 2020년부터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현재 3개의 의원연구단체가 활동 중임

<표 4-5>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현황(2020~2022)

<2022년>

단체명	주제	소속 의원	활동 기간
행정혁신 연구회	의회 및 집행부 행정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해 행정혁신 방안 제시	장길천, 서민우, 김미영, 고양석, 이동길, 허은	10.28. ~12.9.
문화복지 연구단체	광진형 문화복지 모델 개발 연구	김상희, 최일환, 추윤구, 신진호	10.28. ~12.9.
자치법규 정비연구회	현행 조례에 대한 분석·검토를 통해 문제점 도출, 최근 개정된 각종 위임법령 반영하여 조례 제·개정, 현행 조례에 대한 기술적 측면 검토	전은혜, 김강산, 김상배, 고상순	10.28. ~12.9.
광진도시 발전연구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령자 삶의 질 향상방안 연구	문경숙, 전은혜, 이명옥, 추윤구, 고양석, 장길천, 김미영	1.17. ~5.30.

<2021년>

단체명	주제	소속 의원	활동 기간
광진도시 재생연구회	지역경제 살리기 및 안전·환경개선 실천운동 확산과 민간위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경호, 문경숙, 전은혜, 추윤구, 안문환, 이명옥, 고양석	21.1. ~21.11.
광진혁신 포럼	생활밀착형 정책사례 분석·검토 및 타·시도 정책 비교연구	장경희, 김희근, 박성연, 박순복	21.1. ~21.12.
자치법규 연구회	현행 위탁 관계 조례의 법령 적합성 검토, 위탁 관계 조례의 입법기술적 측면 집중 발굴·검토 및 조례 정비방안 제시	김미영, 이명옥, 고양석, 장길천, 추윤구	21.7. ~21.11.

<2020년>

단체명	주제	소속 의원	활동 기간
광진혁신 포럼	도시 생활문제 파악 및 개선	김회근, 박성연, 박순복, 장경희	20.1. ~20.5.

-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매년 의원 1인당 500만원의 정책개발비가 책정되어 있음. 이는 의원연구단체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로만 쓸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는 실정임
- 해당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건만 갖춘다면 소규모 연구용역도 가능하도록 하고, 의장의 몫으로 할당된 정책개발비도 의원간 협의를 통해 남김없이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41)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가 대체하고 있어 연구용역 심의의 객관성·공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지방의회의 정책 연구개발 기능이 강화되어감에 따라 연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관리는 함께 갖춰가야 할 부분임

2) 관련 규정 : 법령, 조례, 규칙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 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41) 제5조(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 의원정책개발비⁴²⁾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

-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회운영공통경비로 편성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②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별도한도 추가 : (지방의원수×500만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각 의원은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4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 발취

제5조(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급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제8조(의원연구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 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말까지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 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3.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연구단체의 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의 종료일, 의원 임기 만료일 까지로 한다.

3) 타 자치구의의회 운영 사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생활정책연구단체’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비한 쓰레기 처리문제를 주제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활동을 전개하였음

- 주목할 점은, 총 15개 단체와 연합하여 ‘쓰레기대책연대회의’를 구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초등학생, 성동청년플랫폼, 성동청년지원센터, 성동러닝크루 등의 젊은 층과, 어르신들로 구성된 ‘금호산 지킴이’ 단체 뿐 아니라,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성동장애인복지관, 성동공유센터, 성동스포츠, 소금창고, 소셜혁신연구소, 짝꿍, 한양대학교 유도부, 헬로우뮤지엄 등 남녀노소 민관 각계각층의 단체들이 참여하였음.
- 의원연구단체와 함께 쓰레기대책연대회의는 도심 소각장 견학, 성동구 쓰레기 상황 토의, 주민초청 환경교육, 쓰레기줍기 봉사활동, 환경조례 제정 등을 함께 추진하였음.
- 의회가 주도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조례와 정책, 예산을 함께 논의하며 생활 속 실천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모범사례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바른 조례 연구모임’은 총 20차 회의를 진행하며 성북구의 조례규칙훈령 등 자치법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조례 일제 정비함⁴³⁾
 - 연구모임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원 스스로의 전문성 함양 및 입법활성화를 도모하여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성북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서별 각종 위원회(심의회, 협의회 등)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모색. 효과적인 조례 정비를 위한 방법 관련 전문가 교육실시, 성북구 자치법규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가 필요한 조례 및 위원회 검토, 부서별 의견 수렴
 - 7건의 일괄조례안 상정 및 위원회 개선방안 제시. 구청장 권한인 규칙·훈령(규정) 등에 대해 21건의 규칙, 7건의 규정에 대한 개정 촉구. 실효성이 없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3건, 「서울특별시성북구정책회의운영규칙」 외 1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구정위원회 운영 규정」 외 6건의 자치법규폐지 검토 건의함

4) 제도 운영 장단점

- 의원연구단체는 정책 의제별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회의 정책 주도·입법 역량을 강화시킴. 의회는 집행부 감시 견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개발하고 주도하는 데에 역할이 있음
- 의원연구단체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차별화된 정책을 생산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음. 지방자치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 역량은 더욱 요구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의원연구단체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것임
- 또한 의회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음. 상임위원회 활동이 의회 공식기구로 의원들만의 활동으로 주로 이루어진다면, 의원연구단체의 경우 더욱 폭넓게 여러 주체들과 활동이 가능함. 의회 내외에서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민관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43) 행정안전부, 2021. 「2020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2021.03. p145~148.

- 한편, 활동 내용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과 중복될 수 있다는 점, 의회 사무국의 인력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는 점은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5) 제도 개선안 제시

가. 연구단체 심의 신뢰도 확보

-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는 현재 광진구의회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하고 있음. 의회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여 일정 비율 이상 혹은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함
- 의원연구단체 조례에 ‘심의위원의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 있음
 - 예시 : (심의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계약
 3. 위원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계약

나. 연구결과의 체계적 관리

- 장기적으로는 의회 연구결과의 체계적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의정연구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같이, 광진구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될 필요 있음. 중복·유사 연구를 방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
- 연구활동이 입법이나 정책 성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한 결과를 연구결과보고서와 홈페이지에 담을 것을 제안함. 연구 성과의 활용도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일 것임

- 그밖에 중복연구 등의 배제를 위한 연구과제 사전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과 연구용역 업체 및 기관의 신빙성 검증 절차 필요

다. 연구 내용의 공개와 성과물의 공유

- 연구활동 내용을 더욱 알리기 위하여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연구계획서, 연구회 활동보고서,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등)를 온라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연구단체 성과보고회와 같은 행사를 주민 대상으로 개최하는 등 연구과정과 성과를 공유하도록 함

라. 주민참여형 연구 활성화

- 연구용역 진행 시 주민 참여를 촉진함. 주민들과의 간담회, 현장 견학, 포럼 개최 등 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성 있는 다각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연구 주제 관련하여 관련 시민단체, 기업, 주민모임, 대학, 연구원 등과 연대체를 꾸려 주제 관련 활동을 함께 한다면 정책의 실행력과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됨
- 연구활동이 끝나고 성과보고회를 주민들 대상으로 열어 연구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향후 정책 집행과정에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음

마. 타 지방의회 연구단체와의 교류

- 같은 주제로 활동하는 타 지방의회 연구단체와의 교류 활동을 제안함. 벤치마킹을 위한 비교견학 등 의회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 의정에 접목할 아이디어 및 네트워크를 더욱 풍성하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관련 규정 개정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 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정책개발 및 주요시책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각 의원은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6조의 연구활동계획서와 함께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의 접수일(제4항의 경우 등록기간의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3.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4. 연구활동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연구단체는 매년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배분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지방의원을 역임하였거나 지방의회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교수
3. 그 밖에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연구단체 관련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의 제척·회피)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계약
3. 위원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계약

제10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7조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 활동에 대하여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되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연구활동비의 내용)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개발비

2.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도서구입비 및 여비

3.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교육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공청회·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

제15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구활동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연구활동보고서를 광진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정산기준에 따른다.

제17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 전문가 및 연구기관 또는 다른 연구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8조(연구단체의 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의 종료일, 의원 임기 만료일 까지로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 다음과 같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대해서는 따로 개정안 제시 않음. 별지 제7호 서식인 연구활동비 정산기준은 광진구의회 운영 현황에 맞춰 정하면 됨
 - 별지 제1호 서식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단체 의원 변동 보고서
 - 별지 제3호 서식 연구활동계획서
 - 별지 제4호 서식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별지 제5호 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 별지 제6호 서식 연구활동보고서
 - 별지 제7호 서식 연구활동비 정산기준

(3) 의회 교육 · 연수

1) 광진구의회 현황

<표 4-6> 광진구의회 교육·연수 프로그램 현황(2020~2022)

(단위 : 명, 천원)

연도	일정	교육·연수 프로그램	인원	소요액	비고
2020	05.22	행정사무감사 및 의원연구단체 특강	14	1,000	자체교육
	10.26.~10.27.	전국 지방의회 의원 합동연수- 제주 (김미영, 김회근, 박성연, 박순복, 장경희, 장길천)	6	2,700	민간위탁
	11.9.~12.6.	통합폭력예방 교육(사이버교육)	14	112	자체교육
		부패방지교육 (사이버교육)	14	140	자체교육
	11.11.~11.13.	지방의회 특별세미나- 제주(전은혜)	1	750	민간위탁
11.16.	제2차 정례회 대비 예산안 교육 (의원 세미나) - 한화리조트	8	1,000	자체교육	
2021	03.09.	램지어 논문사태로 본 일제하 위안부의 진실 - 동부여성발전센터 대강당	14	370	자체교육
	3월~6월 (기간중 4회)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상반기 Zoom 아카데미(박순복)	1	80	민간위탁
	04.20.~05.18.	2021년도 상반기 언택트 정기아카데미 (박삼례, 박순복, 장경희)	3	300	민간위탁
	04.28.~04.30.	지방의회 의원연수 조례안 심사과정(전은혜)	1	50	공공위탁
	05.12.~05.13.	1차 정례회 대비 전국 지방의회 세미나 - 제주(김회근, 박성연, 박순복, 장경희)	4	1,850	민간위탁
	05.24.	제1차 정례회 대비 의원역량강화 교육 - 본회의장	14	1,200	자체교육
	09.29~10.28.	온라인교육(통합폭력·부패방지)	14	210	자체교육
	10.30.~12.18.	성공회대 사회주택 정책과정 1기(김미영)	1	750	민간위탁
	11.10.~11.12.	2021년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원 직무교육 (전은혜, 이명옥, 문경숙, 고양석, 이경호)	5	3,750	민간위탁
	11.25.	예산안 관련 심사기법 - 본회의장	14	360	자체교육
11.27.	2021년도 자치분권대학 교육 (박삼례, 이명옥, 박순복, 김미영, 김회근, 장경희)	6	600	민간위탁	
2022	03.29	의정역량 강화 특강 - 본회의장	14	500	자체교육
	06.20.~06.21.	2022년 의정활동 유종의 미와 사회공헌 및 미래설계 - 제주(안문환, 이명옥, 문경숙, 박순복, 장경희)	5	2,500	민간위탁
	07.25.~07.29.	2022년도 지방의회 조선의원 연수과정 (신진호, 김강산, 이동길, 김상배, 김상희, 최일환, 고상 순, 서민우)	8	2,000	공공위탁
	08.31.~09.01.	광진구의회 워크숍&역량강화교육 - 행정사무감사 기법, 예산안 교육 - 홍천 비발디파크	14	1,800	자체교육
	09.02.~09.04.	2022년 청년지방의원 역량강화 워크숍 - 가평(허은)	1	700	민간위탁
	09.14.~9.16.	2022년 대한민국 지방의회 추계합동연수 - 제주(장길천, 김미영, 김강산, 고양석, 전은혜, 고상순)	6	4,320	민간위탁

※ 자료 : 광진구의회 제공

가. 교육

- 의원 대상 교육은 연 평균 7회, 의회에서 기획한 자체교육은 연 평균 3.3회 정도 이뤄지고 있음. 교육 내용을 보면,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을 포함한 의정역량에 관한 기본 교육이 매년 이뤄지고 있음
- 광진구의회 의원 1인당 연간 교육비(의원역량개발비)는 150만원으로 공공위탁·자체교육 50만원, 민간위탁 100만원으로 이루어짐. 의회 합동연수나 교육을 제외하면 의원 개인별 관심 및 정보획득 수준에 따라 교육이 각기 다르게 이루어짐

<표 4-7> 광진구의회 교육프로그램 의원 설문조사 결과

Q. 각종 지방의원 교육 프로그램에 의원님들께서 활발히 참여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수	1	4	4	5	0
비율	7%	29%	29%	35%	0%

Q. 교육 프로그램이 의정활동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느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수	1	3	3	5	2
비율	7%	22%	22%	35%	14%

-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의원 대상 설문에 따르면, 광진구의원들은 대체로 ‘교육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49%)의 의원들이 ‘교육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함. 29%의 의원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 쪽이라고 응답하여 의원 간 편차가 존재함

- 선수, 관심주제 등에 따라 교육수요가 다른데 맞춤형 교육이 다양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이는 의원 대상 FGI 진행 시 언급된 부분이기도 함

나. 국내외 연수

- 의원 국내 연수는 매년 광진구의회 합동 연수와 전국 지방의회 대상 단체 연수가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의원들의 자체 기획 연수 혹은 개인별 외부 연수 프로그램 참석을 합해 연 3회 이하로 이뤄지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3년간 국외 연수는 이뤄지지 않았음
- 의원 세미나 및 비교시찰 명목으로 편성된 의원 국내여비는 1인당 약 290만원, 의원 국외여비 1인당 350만원. 의회 직원들의 경우 따로 책정된 연수 예산은 의원 수행 명목으로 책정된 것 외에는 없음

<표 4-8> 광진구의회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의원 설문조사 결과

Q.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에 의원님들께서 활발히 참여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수	1	4	4	5	0
비율	7%	29%	29%	35%	0%

Q. 국내외 연수가 의정활동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느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수	1	1	5	5	2
비율	7%	7%	35%	35%	16%

- 국내외 연수에 대한 의원 대상 설문에 따르면, 광진구의원들의 연수 참여도는 활발히 참여하는 쪽과 참여하지 않는 쪽이 각각 절반 정도임. 절반 정도(51%)의 의원들은 ‘연수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응답에 비추어 볼 때, 연수를 단순 외유성으로 규정할 수 없고 실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임.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고, 되지 않았는지 보완점 등에 대한 조사는 향후 추가로 이뤄질 필요 있음

2) 관련 규정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47조제1항제10호의 교류·협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으로 한다.

3) 타 지방의회 사례

가.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회

-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강서구의회, 강동구의회, 관악구의회, 송파구의회, 동대문구의회, 성북구의회, 강북구의회,

도봉구의회, 구로구의회 9곳임. 이들 의회의 경우, 조례에 따라 연간 의원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의회 역시 교육과정의 구분, 개별 교육 지원 근거 및 증빙서류 제출 등에 대한 단순 규정만 담고 있음. 또한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연수는 담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을 규정함과 동시에, 교육연수위원회를 꾸려 의회 교육연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음. 또한 각 교육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어 현재까지 가장 체계화된 모델로 생각됨

나. 대구광역시 자치구의회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와 북구의회의 경우, 2019년 두 의회 의원들이 합동으로 연수단을 꾸려 국외연수의 기획부터 성과보고까지 전 과정을 직접 기획하여 진행한 바 있음. 의회 직원이 동행하지 않고, 자부담을 통해 전문가를 초빙, 동행하였으며 여행사나 대행업체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일정과 예매 등을 진행하였음
- 사전 워크숍 2회를 포함한 준비기간은 6개월여 소요. 다녀오기 전에는 자체 자료조사를 하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다녀온 후에 의원들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공개함. 현지에서 연수를 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하고, 귀국 후 편집한 1시간짜리 영상을 유튜브⁴⁴⁾에 공개하기도 하였음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북구의회 국외연수 개요
 - 출장국 :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 출장 목적 : 주민참여와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제도 선진화 방안 모색
 - 출장 기간 : 2019. 05. 15(수) ~ 05. 24(금) [8박 10일]
 - 출장자 : 대구 남구의회 이정현·정연우 의원, 북구의회 유병철·김지연·한상열·안경완 의원, 안권욱 교수(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이상 7인

44) 2019스위스연수-대구북구/남구기초의원국외공무출장 <https://youtu.be/6N05n7OZ6PI>

<표 4-9>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북구의회 합동 국외연수 주요일정(2019)

일자	지역	세부일정
제1일차	인천, 모스크바, 취리히	■ 대구-인천-모스크바(경유)-취리히 이동
제2일차	아르가우칸톤, 운터쿨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터쿨름 게마인데하우스 세미나 ■ 운터쿨름 자치소방제도 참관 ■ 운터쿨름 교회게마인데 견학 ■ 운터쿨름 자치사법기관 방문 세미나 ■ 운터쿨름 게마인데총회 참관
제3일차	아르가우칸톤, 아라우, 오베르뤼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수도 아라우 시찰 ■ 오베르뤼티 게마인데 하우스 세미나 ■ 오베르뤼티 게마인데 총회 참관
제4일차	에어린스바흐, 루체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린스바흐 게마인데 주민 인터뷰 ■ 스위스 연방, 주정부(Kanton)의 발상지 피르발트 슈테트호수 시찰(루체른 지역)
제5일차	보덴호수	■ 스위스(크로이츠링엔)와 독일(콘스탄츠, 메르스부르크), 오스트리아(베르겐츠) 3개국 접경지인 보덴호수지역 탐방을 통한 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조사
제6일차	베른	■ 주정부협의회(KdK)세미나 / House of Kanton
제7일차	베른칸톤, 라우에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우에넨 게마인데 하우스 세미나 ■ 라우에넨 게마인데 자치 수력발전소 견학 ■ 라우에넨 게마인데 노인요양시설 견학 ■ 라우에넨 게마인데 교육시설 견학
제8-10일차	취리히, 모스크바, 인천	■ 취리히-모스크바(경유)-인천-대구 이동

※ 자료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참여한 의원들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동행한 전문가가 현지 방문지 섭외, 통역에서부터 현지문화 설명에 큰 도움을 받았을 뿐 아니라 현장 수시 특강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함. 여행사를 통한 정해진 방문지가 아닌 관심 있는 주제로 기획을 하고, 그에 맞는 전문가를 섭외했기 때문에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강조45)

45) [지방의원 연수가면 뭐하니?] (끝) 잘하도록 제도 지원, 못하면 패널티 부과해야, 2021-10-13, 뉴스민 기사

- 한편, 의회 자체적으로 섭외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실제 가고자 했던 공공기관 방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함.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국제화 역량 및 국제관련 업무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만큼 외교부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주는 등 제도적으로 공무 국외연수 방문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함

4) 제도 운영 장단점

가. 교육

- 현재 광진구의회의 교육은 대체로 법정 의무교육을 포함한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필수 역량을 가르치는 교육과 의원 개인별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비슷한 내용의 교육이 반복되고, 단발성 강의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교육 간 연계성·심화도가 떨어짐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지방의회 차원의 전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한편, 광진구의회 사무직원 대상 교육비는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교육도 짜임새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집행부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직무교육훈련 관련 규정은 부재한 상태임
- 집행부에서 순환보직 형식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있다 보니, 지방의회가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직무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직무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이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나. 국내외 연수

- 국내외 연수는 의원들이 각종 자료로는 알기 어려운 경험적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교육 방식이라 할 수 있음.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산 경험의 장이 됨. 정책 아이디어를 얻는 중요한 통로이면서 의정활동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를 쌓는 핵심 수단이기도 함. 국외 연수의 경우, 의원들의 국제화 역량을 높임과 동시에, 세계화 시대 더욱 중요해진 지방 공공외교의 역할로까지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그간 일부 외유성 연수와 일탈로 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어왔음. 이는 연수과정이 실제로 의정활동을 위한 학습과 적용이라는 목표에 어울리지 않게 진행이 되거나 연수 과정 및 결과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데 있음
- 그 배경에는 적지 않은 의회들이 연수를 여행 업체에 맡기고 있어 단순 관광 형태로 진행되는 게 현실. 또한 이렇게 의회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주 타겟으로 하는 업체들이더라도 각 의회별 수요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천편일률적인 관광 상품처럼 제공하는 편임. 발주하는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연수기획을 하지 않고, 전부 맡기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 할 수 있음
- 지방의회가 연수를 외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무국외출장 예산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야하기 때문. 규정에 따르면 국외출장 시에도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은 항공비, 식비, 숙박비, 일비가 전부임. 외부 위탁 없이 의회 자체적으로 국외출장을 떠날 경우, 방문하는 곳의 티켓을 예매한다거나 동행할 통역사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의 비용을 지출할 수 없음. 또한 지방의회국외여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의회 총액한도제 항목에 포함되어 의원 1인당 총 350만원 이상의 여비를 책정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이처럼 방문 지역과 기간에 따라 필요한 여비 규모가 다른 점, 지출 항목이 정해져 있는 점으로 인해 예산 사용이 까다롭고 자부담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에 외부 대행업체에 용역으로 맡겨 여비를 지출하게 되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음. 향후 행안부가 관련 예산 지침 및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제기됨

5) 제도 개선안 제시

가. 교육연수의 체계화

- 현재 교육은 필수 역량을 기르기 위한 기본 강의가 관습적으로 반복되어오고 있음. 선수별, 의원의 관심 주제별로 필요한 교육이 모두 다를 것임. 따라서 교육 대상자의 수요를 조사하여 개인별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교육 방식도 강의만 하는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집단토의, 실습 등 참여형 교육방식의 적용이 필요함
- 수요자 중심의 교육 훈련체계로 전환하여 교육대상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함. 다양한 교육 과정을 재설계하고, 교육 프로그램 수강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의회의 사례에서 보듯, 기본교육, 직무교육, 교양교육, 특별교육으로 세분화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기존처럼 외부 업체에 위탁을 주는 방식이 아닌, 의회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구성원들이 원하는 교육연수를 파악하여 시행해야 함. 정책지원관들이 각 의원별 관심 주제와 의정활동과 연계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 있음
- 의원 뿐 아니라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 의회 사무직원의 경우에도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지방의원 및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규정을 담은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의원 임기 4년 간 교육 계획과 연간 교육 연수 계획을 세울 수 있음. 위와 같이 제시한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위원회를 꾸릴 수 있음

나. 국내외 연수 내실화

- 국외 연수의 경우 더욱 투명하고 효과적인 공무국외연수를 위하여 기존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로 그 범위를 넓혀 제정할 필요 있음
- 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22.1.13.시행)은 국제교류·협력 조항 신설⁴⁶⁾로 지방자치단체도 도시 외교의 주체가 되었으므로 향후 국외 연수 외에도 확대될 외교 활동을 포함한 공무국외활동을 위한 근거와 제도 마련을 위하여 필요함. 또한 규칙에서 조례로 위상을 높임으로써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의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음
-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는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세간의 불신을 줄일 수 있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함
- 국외연수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줄이고 연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제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 있음
 - 결과보고서 뿐 아니라 활동계획서도 모두 주민에게 공개하고,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는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목적에 맞지 않거나 심각하게 부실한 출장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예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해야 함
 - 의원들이 귀국 후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결과보고서가 법규위반이나 부실한 경우에는 정정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을 조례에 포함하는 방안
 - 의원들이 공무국외활동 이후 반드시 결과보고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거나 관련하여 의정에 활용한 결과를 의무적으로 의장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내실화를 꾀하는 방안이 있음

46) 「지방자치법」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4조(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국외연수를 가기 전에 연수국가에 대한 사전 스터디를 진행하고,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연수를 진행할지에 대해 사전에 연수계획보고회를 개최하고, 연수 이후에 연수결과에 대해서도 주민과 함께 연수결과보고회를 열면 국외연수의 성과도 높이고, 국외연수 무용론도 잠재우며 지역발전에도 그 성과를 연결할 수 있음
- 국외연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전문지식을 갖춘 통역/가이드 초빙이 가능하도록 예산 및 행정 지원이 이뤄져야 함. 교육과 마찬가지로, 의원 임기 4년간의 국내외 연수 계획과 연간 연수 실행계획을 세워 체계화해야 함

6) 관련 규정 제정안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지식, 기술, 태도 등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안팎에서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의장은 의원의 의정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⑥ 의장은 의회 교육연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제3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회 교육연수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7조에 따른 교육연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조사
4. 교육연수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자원 확보방안
6.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제3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5조제1항의 교육연수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반기마다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과정 등) ① 교육연수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직무교육·기타 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과정을 실시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원에 대한 교육 이수실적을 각종 평가 등에 활용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7조(교육연수위원회 구성·운영) ①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육연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교육연수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3. 교육연수 사업의 적정성 등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4. 교육연수 관련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교육연수에 대해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의원 1명과 의회 교육연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방의회와 관련이 있는 사람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자치법규 제정도 필요함.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에 의회 사무직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했으며, 종로구의회는 서울 자치구의회 중 유일하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의회 사무직원 중 특히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에 대한 교육연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가능함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외교활동과 국외시찰 등 공무국외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공무국외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이 국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활동 하는 경우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방자치 능력 향상 도모,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수 등을 통해 우수시책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국외활동 및 그 밖에 모든 공무 성격의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활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교육계·법조계·언론계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국외교육연수 관련 전문가
-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국외활동의 필요성 및 국외활동 참가자의 적합성
 2. 국외활동국가와 방문기관의 타당성
 3. 국외활동기간의 타당성 및 경비의 적정성

-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7조(심사기준) 공무국외활동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무국외활동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활동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활동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0조(공무국외활동 계획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활동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외활동의 대표자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외활동계획을 제안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활동 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공무국외활동 출발 전 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 계획서에 대해 사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활동 보고서 제출 및 관리) ①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활동 이후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를 지체없이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반수 이상의 심사위원이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가 관련 법규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미흡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정정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활동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한 후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활동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상호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0조제3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른 주민보고회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심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적용례) 종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의원인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조례 시행 전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인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4) 토론회·간담회 등

1) 광진구의회 현황

<표 4-10> 광진구의회 토론회·간담회 등 연도별 개최 내역(2020~2022)

구분	일자	주제
간담회	2022.11.24.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광진구의회 문화복지연구단체'와 문화예술 봉사단 메리 간 생활예술 확대 방안 논의
간담회	2022.11.15.	지역아동센터 현황 공유 및 지원 방안 강구
간담회	2022.11.10.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광진구의회 문화복지연구단체'와 광진문화재단 간 문화복지 증진 방안 논의
간담회	2022.10.31.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관련 방안 강구
세미나	2022.8.31. ~2022.9.1.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역량강화 세미나
간담회	2022.8.12.	광진구의회, 새마을문고 임원진과 간담
간담회	2022.8.10.	광진구의회 의장단, 광진경찰서 관계자들과 간담
간담회	2022.7.28.	광진구의회-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간담
간담회	2022.3.21.	의원연구단체 '광진도시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추진 간담
간담회	2021.11.26.	구의역 일대 첨단업무복합단지 시공사 현장소장과 간담
간담회	2021.11.8.	의원연구단체 '광진도시재생연구회' 연구용역 결과 간담
간담회	2021.9.28.	의원연구단체인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광진구통장협의회를 초청해 주민체감형 조례 연구를 위한 만남
간담회	2021.9.28.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사회복지시설 대상 홍보 및 실질적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 청취
간담회	2021.9.14.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정책제언 간담
간담회	2021.9.13.	기획행정위원회 주최로 주민자치회 회장단과 간담회 개최: 주민자치회 현안 사항 논의
간담회	2021.8.10.	「광진구 통반장설치 조례」 개정 논의 및 통장들의 의견 청취
간담회	2021.7.21.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앞서 관계자 의견을 청취 및 공유
간담회	2021.7.2.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진구 상공회 격려 및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
세미나	2021.5.13.	광진구의회 '도시재생연구회' 세미나: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구 구현을 위한 민간위탁 관리방안 등 논의
간담회	2021.4.2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및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앞서 관계자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
간담회	2021.2.2.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역할과 과제
간담회	2021.1.21.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광진도시재생연구회'의 변화된 환경에 맞춘 광진형 도시재생 비전 제시 및 지역현안 논의
간담회	2020.11.4.	어린이 안전 통학로를 위한 민관 간담회
간담회	2020.11.3.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제대로 알리고, 주민들이 계획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자료 : 광진구의회 제공

- 기초의회는 토론회·간담회·세미나 등을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선도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함. 광진구의회는 간담회 및 세미나를 2020년 2회, 2021년 13회, 2022년 9회 개최하였음. 해마다 횟수가 증가하며 조례·정책·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테이블이 열리는 것은 긍정적임
- 간담회나 세미나가 비교적 활발히 열리는데 반해, 토론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간담회와 토론회 모두 관련 분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논의한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토론회의 경우,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대중을 초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규모와 효과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음

2) 관련 규정 : 법령, 조례, 규칙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타 지방의회 사례

○ 대전광역시 의회의 경우,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주요 정책에 대하여 시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게 한 바 있음⁴⁷⁾. 시민들이 먼저 토론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와 시민 간 양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음

○ 수원특례시의회는 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의정토론회를 시리즈로 개최하고 있음. 시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연 10회 정도로 꾸준히 개최되고 있음. 행사성 토론회가 아니라, 전문 연구진들의 심도 있는 연구자료를 토대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음. 연구원 역시 현장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고, 그 연구가 다시 정책 형성의 자료로 쓰이는 선순환 구조. 또한 연구가 연구로 그치지 않고 의회와 함께함으로써 조례 입법으로 이어져 연구의 효용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음

47)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토론회 등의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요정책에 대한 토론회등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시장은 토론회등이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토론회등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토론회등의 결과를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4) 제도 운영 장단점

- 지역 내 화두가 되는 주요 현안이나 조례 제·개정 등 파급효과가 큰 주제의 경우,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환기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견해를 공개된 자리에서 확인하고 대화를 통해 조정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토론회는 중요한 공론의 장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광진구의회의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지원체계는 이원화되어 있음. 상임위원회 주최 토론회·간담회는 전문위원이, 개별 의원 주최일 경우 정책지원관이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
- 상임위 주최로 열 경우, 상임위 관련 안건 및 활동과 연계하기 쉽고 소속 의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좋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결국 상임위 주최더라도 모든 상임위원이 같은 정도로 관여하는 것이 아닌, 주도하는 의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지원관이 개별 의원의 토론회 주최를 지원하되, 필요 시 상임위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됨

5) 제도 개선안 제시

- 토론회 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 있음. 의회홍보간담회 및 운영비 목으로 2,400,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토론회 관련 예산은 따로 책정해두지 않음. 연간 토론회 개최 계획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둘 것을 제안함
- 의원 개인의 열의와 역량에 따라 토론회 등 관련 활동의 양과 질에 큰 차이가 존재함. 토론회 개최를 비롯한 입법 정책 개발 프로세스를 정책지원관과 함께 수립하고, 그에 따른 밀착 지원이 이뤄져야 함
 - 예시로 이슈를 포착하고 정책 대안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조례 TFT’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주민, 집행부, 전문가, 단체 등 조례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TFT 팀을 꾸리고, 수원시 사례처럼, 서울연구원 혹은 관련 대학 연구소들과 연계하여 함께 의정토론회를 여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문제를 다루게 될 경우에는, 토론회 1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기의 목표를 설정해두고 토론회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중장기 계획도 필요
- 토론회 운영에 있어서, 토론회는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하여 더 많은 구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함. 토론회 자료집과 결과보고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입법·정책·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대전광역시의 사례에서처럼, ‘주민청구토론회’를 도입해볼 수 있음. 주민들이 토론회 참석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일정 규모의 주민들의 청구로 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참여권한을 확대하는 시도를 한다면, 주민들의 관심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6) 관련 규정 개정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제7조의2(토론회 등의 청구)** ① 구민은 구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주요정책에 대한 토론회 등은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의 구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이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토론회 등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토론회 등의 결과를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7) '광진구의회 정책콘퍼런스' 제안

- 콘퍼런스[會議, Conference]는 공통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 다른 의견과 관점을 듣기 위해, 또 몇몇의 경우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의 집단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토의 또는 학술회의 형식을 의미함⁴⁸⁾

가.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소통 페스티벌'⁴⁹⁾

- 의원들의 정책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북 조성의 일환으로, '연구하는 의회, 정책 톡.톡.(talk. talk.)' 「정책소통 페스티벌」 추진 필요성 제기. 1회 2019년 개최되고, 2회 2020년에 개최하여, 인천시의회에서 연중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되는 행사로 상설화됨
-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연구성과가 정책으로 활용·실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만의 행사가 아닌 연구기관인 인천연구원과 입법기관인 인천시의회의 협력체제로 틀을 확대함. 인천연구원의 입장에서 시의회와의 협업으로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계기 마련. 2019년, 2020년 페스티벌 2일에 걸쳐 진행됨(1일차 '인천연구원' 연구성과 공유토론회, 2일차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성과 공유토론회)
- 제1회 정책 페스티벌 : 2019년 10월 28일 ~ 29일
 - 양일간 시의회에서 13개의 토론회가 펼쳐짐
 - 인천시의회-인천연구원 공동기획 정책소통 토론회 개최(2019.10.28.)
 - 의원연구단체 주관 연구성과 공유토론회(201.10.29.)
- 제2회 정책소통 페스티벌 : 2020년 10월 27일 ~ 28일
 - 양일간 시의회에서는 20개의 토론회가 펼쳐짐
 - 인천시의회-인천연구원 공동기획 정책소통 토론회 개최(2020.10.27.)
 -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주관 연구성과 토론회(2020.10.28.)
 - 인터넷 생중계(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 실시 : 둘째날은 개최장소 회의실에 한함

48) [네이버 지식백과] (HRD 용어사전, 2010. 9. 6., (사)한국기업교육학회)

49) 행정안전부, 2021. 「2020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2021.03. p135~144.

- 1년간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와 인천연구원의 연구성과 결과물을 공유함으로써
실효적인 입법정책 수립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상생협력의
파트너십 강화됨. 시정관련 전방위적 시 집행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의회가 소통 및 정책조정역의 창구 역할.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의원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페스티벌 행사가 매년 상설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됨
-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원총회 등을
통해 정식안건으로 논의하여 페스티벌 행사의 기본방향 등을 결정함.
 - 의장단 및 상임의장단 회의(2020.08.24./09.07.) : 페스티벌 1일차 관련, 인천연구원
의 연구과제 중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정책방향을 각 상임위원별 공통주제
설정
 - 의원총회(2020.09.15.)
- 페스티벌 2일차 리셉션 오프닝 무대에 의원들로 구성된 중창단 공연이 있었음.
의원연구단체별 흩어져 잡는 토론회 일정에 대해 한 주간을 설정하여, ‘의원연구단
체 토론후간’으로 운영방식 확대해 나가고 있음

나. 광진구의회 정책콘퍼런스 제안

- 정책콘퍼런스는 2~3일간 집중적으로 광진구의회 14명의 의원 각자가 정책주제
를 정하여 주민, 전문가, 지역단체, 집행부 담당부서와 토론회, 강연회, 현장방문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결과물을 통합자료집으로 제작하고, 필요할 경우 조례
제개정, 예산편성 등 제도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음
- 의회 공동행사로 개막 토론회나 강연회를 개최하고, 연간 의회의 의정활동과정과
성과, 향후 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피드백을 받는 행사를 할 수 있음.
연 1회 의회 전체 행사로 ‘광진구의회 정책콘퍼런스’를 여는 것을 제안함
- 정책을 생산하는 기초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풀뿌리민주주의와 생활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의회 주도의 새로운 공론장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음. 정책콘퍼런
스를 통해 주민들에게 일하는 의회로써 신뢰감을 높일 수 있음

다. 참고 : 서대문구의회 정책컨퍼런스(안)⁵⁰⁾

- 2020년 서대문구의회는 정책컨퍼런스 예산 3,0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함. 광진구의회에서 추진할 경우 전국 기초의회 최초의 정책컨퍼런스로 기록될 수 있음

<표 4-11> 2020년 서대문구의회 정책컨퍼런스 추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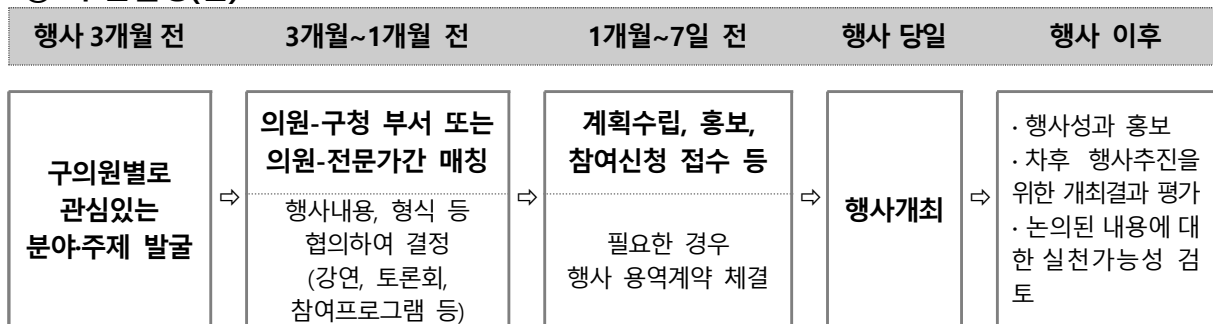
○ 사업 개요(안)

추진일정	연 1회, 3일간
행사장소	구의회 또는 외부장소
참석대상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 전문가 등 100여명
행사내용	· 지방정책 전문가 강연 · 주제별 토론회 · 주민참여 현장프로그램 등
소요예산	30,000천원 × 1식 = 30,000천원 (행사운영비, 신규사업)
추진방법	의회사무국 직접 수행 또는 전문업체 용역계약

○ 행사일정(안)

프로그램	1일차	2일차	3일차
10:00	개회식 초청강연 : 저명인사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주제세션② : 문화분야	주제세션③ : 지속가능분야 (에너지, 사회적경제 등)
12:00			
12:00~13:30	중식		
13:30	주제세션① : 교육분야	청소년 모의의회	서대문구의원 발언대 「내가 생각하는 자치란?」
16:00			
16:00~17:00	폐회식		
부대행사	· 제8대 서대문구의회 활동영상 또는 전시 · 행사참가자가 '내가 생각하는 자치란?'에 대한 생각을 적은 형상물 · 다양한 주제별(주민모임, 동 주민자치회 등) 홍보 및 교류행사		

○ 추진일정(안)



50) 2020년 서대문구의회 컨퍼런스 등 개최계획

5. 광진구의회 주민참여

(1) 의정 모니터

1) 광진구의회 현황

- 일반적으로 모니터(monitor)란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사람’, ‘감시하는 사람 또는 감시 장치’, ‘특정 상품을 써 보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람’, ‘논평자 등의 뜻을 가짐⁵¹⁾
- 의정 모니터란 의회의 열린 의정활동과 의정 발전을 위해 지역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주민들이 의회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불편 사항에 대해 대안이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
- 현재 광진구의회에서는 의정 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2000년 지역단체인 광진복지센터와 광진시민모임을 주체로 ‘광진 생활모니터’ 모임이 발족하여 생활정책과 구의회, 구행정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음⁵²⁾
-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공모사업으로 시작한 광진주민연대의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광진구 내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광진포럼(광진주민연대, 디지털 광진, 광진시민허브)에서 의정 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음. 꾸준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의정 모니터의 활동 기록은 찾기가 어려움⁵³⁾
- 이외에 광진구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열린 의회를 지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방청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을 통해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 구현을 실천하려 하고 있음. 그러나 방청이나 참관은 한 방향의 소통일 뿐 주민의 의견반영에는 부족함이 있음

5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9: 2159; 민중 국어사전, 2014: 420; 네이버 국어사전

52) digital광진 <http://m.gwangjin.com/1331> 참가 자격이 광진구에 거주하는 전업주부에 한정

53) digital광진 <http://m.gwangjin.com/21452>

2) 관련 규정 : 법령, 조례, 규칙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3) 참고 규정 : 법령, 조례, 규칙 등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여론 수렴과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민원 또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수렴하여 건의하도록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역할) 의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안 및 의견 제시

2.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건의
3. 시정 주요 시책 및 의정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건의
4. 시민의 불편사항의 탐색 및 건의
5. 그 밖에 시정 또는 의정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타 지방의회 운영 사례

<표 5-1> 의정 모니터 운영 중인 서울시와 자치구 의회 현황

구분	구성	활동내용	활동지원	기타
서울시	-000명 (제한 없음) -공개모집 과 의원추천	1. 시의회 및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안 및 의견 제시 2.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건의 3. 시정 주요 시책 및 의정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건의 4. 시민의 불편사항의 탐색 및 건의 5. 그 밖에 시정 또는 의정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회의 또는 간담회 - 교육 및 표창 - 매월 심사 후 등급 별 원고료 지급	매월 의견 수 렴 (지정과제와 자유과제)
금천구	-35명 이내 -공개모집 과 의원추천	1.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수 렴 및 주민불편사항 개선 건의 2.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및 제도 개선 건의 3. 의정홍보 등	- 연수 및 간담회, 현장시찰 - 신분증 및 표창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11월 평가 (매년)
서대문구	-30명 이내 -공개모집	1. 구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 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 지와 관련한 건의	- 회의 또는 간담회 - 교육, 연수 및 현 장 시찰 - 신분증 및 표창 활동 실비보상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관악구	-35명 이내 -공개모집 과 의원추천	3. 구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주민불편사항 건의 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 연수 및 간담회, 현장시찰 신분증 및 표창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11월 평가 (매년)
강남구	-25명 이내 -공개모집 과 의원추천		- 간담회	

※ 자료 : 각 자치구의회 의정 모니터 조례 자료로 재구성

- 6개 광역의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남도)에서 의정 감시단이나 의정 모니터가 활동 중이며 부산대전대구경남 등은 시민단체들이 주도하고 있음⁵⁴⁾
- 19개의 기초의회에서 의정 모니터 조례나 훈령을 제정 후 운영 중. 이 중 서울에서는 25개구 중 4개구(서대문구, 관악구, 금천구, 강남구)가 의정 모니터를 구성.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에서 의정 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운영을 준비 중
- 대부분 각 지역에 거주하거나 지역에 사업자가 있는 18세 이상 주민으로 구성되며 인원은 30~40명 내외로 의원의 추천이나 공개모집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2년
- 의정 모니터는 각 지자체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정기적으로 의회 모니터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의견이나 정책 제안을 받아 의정에 반영. 의정 전반에 대한 정책 제안, 조례나 법안에 대한 모니터링, 본회의나 행정사무 감사, 예산심사의 방청을 통해 개선사항 제안 등 의회와 주민과의 소통창구로서 역할 수행
- 우수사례로 경기도의회는 의정 모니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세종시의회는 예산결산과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후 그 결과에 대해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의정 모니터 제도를 활용⁵⁵⁾
- 동두천시의회는 의정 모니터를 도시건설교통분과, 사회복지환경분과, 교육문화체육분과로 세분하여 3개의 분과로 나누어 구성. 단장과 부단장,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운영위원회를 두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⁵⁶⁾

54) 송광태. 2016. 「지방의회 의정감시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8권 제3호(통권 95호). 2016.09.

55) 대전인터넷신문

http://daejeonpress.co.kr/news/view.php?idx=52002&sm=w_total&stx=%EC%A7%80%EC%86%8D%EA%B0%80%EB%8A%A5%ED%95%9C&stx2=&w_section1=&sdate=&edate=

56)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정모니터 게시판을 만들어 의정모니터 소개, 모니터 단원 소개, 정책 제안 및 의견, 자료실 등을 담음

- 서울시의회 의정 모니터 제도는 1999년에 전국 최초로 구성되어 지난 23년간 2,310명의 모니터 요원들이 제출한 제안들이 의정활동 및 정책에 활용되었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의정 모니터제도를 통한 시민제보 활성화로 '2020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행정안전부) 수상⁵⁷⁾

5) 제도 운영 장단점

가. 시민단체 의정 모니터

- 시민단체 의정 모니터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결성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의정활동에 대한 적절성 검토 및 의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자로 활동이 가능하나 예산확보 등 지속성의 문제가 있어 지방의회와의 협조가 관건. 참여한 단체의 성격에 따라 관심 분야에 비판과 감시가 집중될 수 있고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활동이 지나치게 강조될 가능성 있음

나. 지방의회 의정 모니터

- 의정 모니터단을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여론 청취가 가능하여 의회의 주민 소통 기능이 강화되고 모니터 단원들의 활동으로 주민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만족을 높일 수 있으며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들의 활동도 알릴 수 있음
- 의회 사무국이 의정 모니터의 운영 주체가 되기 때문에 자율성의 한계가 있고 의정 모니터 구성이 일반 주민들이기에 의회나 행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 의정 모니터의 구성, 운영, 평가까지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는 의회 사무국의 업무 부담 있음

57) 행정안전부, 2021. 「2020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 지방의회 혁신분야」. 2021.03.

6) 광진구의회 의정 모니터 구성 제안

-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의정 모니터는 열린 의회 구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회와 함께하는 든든한 지지자가 될 수 있음
- 의정 모니터 구성을 성별, 연령,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안배하고, 모니터원들이 활동할 분야를 세분하여 각 분야에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문성과 의정 모니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제공하고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조례 제·개정, 본회의·상임위 회의 방청 등 의정활동 전반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 실현
- 의정모니터 성과보고회 같은 의정 모니터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 작업도 수반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의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도 공유하는 환류 작업 필수

7) 관련 규정 제정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 의정을 구현하며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의정 모니터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정 모니터(이하 "의정 모니터"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구정 및 의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구민 불편사항 건의
4. 불합리한 예산집행 개선 건의
5. 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
6. 그 밖에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의정 모니터의 자격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살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주민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 모니터의 정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의정 모니터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의정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정 모니터는 우편·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장은 그 처리결과를 의정 모니터 의견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의정 모니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의정 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홍보자료 등을 의정 모니터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구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다.

제5조(위촉 해제) ① 의장은 의정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의정 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3. 그 밖에 의정 모니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 해제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 모니터의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활동 지원 및 평가) ① 의장은 의정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의정 모니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정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연수 및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의정 모니터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매년 11월 중에 실시하고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한다.

제7조(신분증) ① 의장은 의정 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성명·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제4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대외적으로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제2조 각 호의 활동에 참여한 의정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의장은 활동이 우수한 의정 모니터에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세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2) 청소년 의회 운영

1) 광진구의회 현황

- 청소년 의회란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의 주체로서 자신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내고 해결을 위해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책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 제도
- 청소년 참여위원회란 청소년들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증진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 청소년 의회의 목적인 의회 정치의 이해의와는 다른 성격의 기구⁵⁸⁾
-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청소년 의회를 의회가 아닌 집행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광진구에서도 구청의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 의회를 운영. 광진구의회 홈페이지에는 청소년 의회가 2017년까지의 활동만을 기록해 놓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으나 구청에서는 광진구 청소년 의회가 계속 운영 중이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활동을 확인. 청소년 의회가 의회 견학 중심으로 운영

2) 관련 규정 : 법령, 조례, 규칙 등

「청소년 기본법」

-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

58)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참여포털’(<https://www.youth.go.kr/ywith>) 참고

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체험 및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의회”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어린이·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2. “어린이·청소년”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9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의원 배지 등 지원

2. 국회 등 의회 견학활동
3.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견반영)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구의회의 지원 등) ① 구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3) 타 지방의회 운영 사례

- 서울시와 시의 25개 구가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서울시의 모든 구의회가 의회 모의 체험이나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서울시와 광진구를 포함한 10개 자치구의의회에는 청소년 의회 조례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강남구는 청소년 의회 조례만 있으며, 용산구, 노원구, 은평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는 조례 없이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 일회성 체험 행사와는 달리 임기와 선발 과정을 거치는 청소년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하여 종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에서는 의회 사무국에서 광진구를 포함한 나머지 구는 구청 담당 부서가 운영주체임
- 청소년 의회는 자치구 청소년 정책 자문 및 제언과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천구, 동작구, 강동구 등은 주민참여예산 중 교육·청소년 분야의 예산심의. 동작구는 더 적극적인 형태로 청소년 정책마켓을 통해 청소년들이 선정한 정책을 단체장에게 제안하고 협약까지 체결함으로써 청소년 의회의 효능감을 높이고 있음⁵⁹⁾

<표 5-2> 청소년의회&청소년참여위원회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현황

구분	청소년 의회 조례유무	청소년 의회 운영여부	청소년 의회 운영주체	직영/위탁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여부
광진구	○	○	구청	직영	○
서울시	○	○	시의회	위탁	○
종로구	○	○	구의회	직영	○
중구	X	X	.	.	○
용산구	X	○	구청	위탁	○
성동구	X	X	.	.	○
동대문구	○	○	구의회	위탁	○
중랑구	X	X	.	.	○
성북구	○	○	구청	직영	○
강북구	○	○	구청	위탁	○
도봉구	○	○	구청	위탁	○
노원구	X	○	구청	직영	○
은평구	X	○	구청	직영	○
서대문구	○	○	구의회	직영	○
마포구	○	○	구청	직영	○
양천구	○	X	.	.	○
강서구	○	X	.	.	○
구로구	X	○	구청	위탁	○
금천구	X	○	구청	위탁	○
영등포구	○	X	.	.	○
동작구	○	○	구청	직영	○
관악구	X	○	구청	직영	○
서초구	X	X	.	.	○
강남구	○	X	.	.	○
송파구	X	X	.	.	○
강동구	○	○	구청	위탁	○

※ 자료 : 각 자치구의회 홈페이지 자료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자료로 재구성

59) 신민철, 이정용. 2021. 「서울시 자치구 청소년의회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서울연구원. 2021.10.

4) 제도 운영 장단점

가. 구청 운영 vs 구의회 운영

- 자치구에서 의회정치와 의정활동에 대한 가장 전문적인 기관은 구의회. 의회 사무국 주체의 청소년 의회는 의회의 시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각 의원들이 청소년 의원들의 멘토로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 추후 지역사회로 연결되는 청소년 네트워크의 확보도 가능
- 청소년 의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 자원이나 지원이 구청 운영이 용이하나 구의회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 견학 행사로 그칠 수 있음. 청소년 의회 운영의 주체가 의회가 아닌 구청인 경우, 청소년 의회의 임명장과 표창을 구의회 의장이 아닌 집행부의 수장이 수여하고 관장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가짐

나. 직영 vs 위탁

- 직영체제는 안정적인 운영으로 청소년 의회 운영 시 발생하는 의견과 요구에 대해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음. 의회 사무국의 인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가중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민간 위탁을 할 경우 청소년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참여자의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음. 담당부서와의 유기적 협조나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5) 제도 개선안 : 구의회에서 청소년 의회 운영

- 청소년 의회는 청소년들이 의회 정치와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학습하고 그 역할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의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참여하는 다른 성격의 제도

- 두 제도를 의회와 구청 각기 다른 주체가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서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체득하도록 해야 함. 집행부의 성격인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입법부의 성격인 청소년 의회를 둘 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기능의 중복이며 3권 분립에도 맞지 않음
- 선거연령이 하향되고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관심이 늘고 있어 청소년 의회 운영은 시대적 흐름. 의회정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제공하는 청소년 의회를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은 지역 사회와 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 제시와 정책 제안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기를 수 있고 의회는 청소년네트워크 확보. 또한, 2~3년만 지나면 청소년이 청년들로 성장하여 실질적인 정치 참여로 이어지는 연결성 가짐⁶⁰⁾
- 청소년 의회의 운영을 의회 사무국에서 담당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실제 청소년 의원들과 소통하고 청소년 의원들의 멘토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의회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 의회 사무국의 업무 부담은 직영체제 대신 민간 위탁 운영으로 해결 가능. 마지막으로 청소년 의회의 결과물에 대한 공유와 평가, 입법 반영 등 환류 작업이 있어야 함

6) 관련 규정 개정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지역사회와 다양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60)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이 있음(「공직선거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

.16세 이상의 국민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음(「정당법」 제22조제1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구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의회(이하 "청소년 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 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 의회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의회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 의회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④ 구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년 정책과 예산, 그 밖에 구 주요현안의 연구, 조사, 토론, 의견수렴
2.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렴된 의견의 제안
3.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연구, 조사, 의견제시
5. 청소년 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제·개정
6. 그 밖에 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청소년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의 수는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방법) ① 의원은 구에 주소를 둔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또는 구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학예정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공개모집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선발한다. 이 경우 거주지, 학교, 연령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의회 의장은 제1항의 청소년 가운데 장애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 이주배경청소년 등을 정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③ 공개모집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세칙에 따르되 세칙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단 및 지원단(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의장단 및 지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의원의 임기)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의원의 임기는 의원증을 받는 때부터 개시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사퇴, 해촉)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서를 청소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사퇴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출받은 사퇴서를 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출 또는 전학

2. 질병, 국외 장기체류 등의 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구의회 의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음에도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참여가 불성실한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해촉 기준은 의장단 및 지원단이 협의하여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장단)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정견발표를 거쳐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추첨하여 당선인을 정한다.

④ 의장은 중임할 수 없다.

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⑥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의장단이 구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③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의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⑤ 상임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상임위원장을 호선하되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지원단, 추진단 등) ① 구의회 의장은 청소년 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11명 이내의 지원단을 둔다.

- 1. 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
 - 2. 구의회 및 청소년육성 업무부서의 6급 이하 공무원 각 1명
 - 3.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 활동 관련 전문가
 - 4. 그 밖에 청소년 의회 운영에 전문적인 경력 또는 지식이 있는 사람
- ② 구의회 의장은 해당 연도의 활동평가, 차기 청소년 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실무적인 준비 등을 위하여 의원으로 구성하는 청소년 의회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별도로 둔다.
- ③ 제1항의 지원단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단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은 회의에서 수행할 활동이나 의결할 사항을 미리 의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임위원회 회의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 및 의장단을 상임위원장으로 본다.

제13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청소년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 상임위원회, 청소년자치기구에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6명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에 한한다.

- ② 의안은 회의 개최 2주일 전까지 청소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 등의 제출) ① 청소년 의회는 회의 및 활동 결과를 기록하여 정기적으로 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의회는 해당 연도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 등) 구의회 의장은 청소년 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배지, 비품, 장소제공 등 의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국회 및 선진지의 방문 및 견학
3. 청소년 의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프로그램
4.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구의회 의장은 청소년 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의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 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고 구청장은 그 처리결과를 구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의회 의장은 제2항의 처리 결과를 청소년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표창) 구의회 의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의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위탁) 구의회 의장은 청소년 의회 운영 및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청소년 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해당 조례 개정 시 의회 운영위원회에 전부개정안을 상정하여 담당부서를 집행부에서 의회 사무국으로 조정하여야 함. 또한 청소년 의회 예산도 의회 사무국에 두도록 해야 함

○ 조례 개정 이전에 당해연도 광진구 청소년 의회가 구성되었을 경우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음

(3) 주민참여결산제

1) 광진구의회 현황

- 주민참여결산제는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안에 대한 심의 전에 그 결산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거나 설명회를 갖는 제도로 운영주체에 따라 제도 설계를 달리 할 수 있음
- 광진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결산 검사 의견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공지하고 있으나 결산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주민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다만 구청 홈페이지에 2019년부터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정보’를 게시하고 있음

2) 관련 규정 : 법령, 조례, 규칙 등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제3장 결산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가. 재정상태표
 - 나. 재정운영표
 -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①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을 요약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결산 개요 및 제2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 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 명세서
3. 이월 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 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②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서
 2. 유형자산 명세서
 3. 감가상각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감사위원회에 대한 설명·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위원이 결산서의 검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교육하고,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서의 작성) ①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예산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세입예산액
 - 나. 이체 등 증감액
 - 다. 세입예산 현액
 - 라. 징수결정액
 - 마. 수납액
 - 바. 불납결손액
 -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세출예산액
- 나. 전년도 이월액
- 다. 예비비 사용액
- 라. 전용 등 증감액
- 마.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 바. 세출예산 현액
- 사. 지출액
- 아. 다음 연도 이월액
- 자. 집행잔액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결산의 절차와 방법, 결산서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는 검토의 대상과 기준,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결산제도에 있어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해 예산편성과정 뿐만 아니라 집행, 결산 등의 과정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⁶¹⁾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61)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합동 보도자료. 2018.03.20. 문재인정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

(기존)예산편성에만 참여 → (개선)사업집행·평가까지 참여(‘18.2 「지방재정법」 개정)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과「지방재정법」, 그 밖에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에 위배되서는 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지방재정법의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의미가 제대로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구의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

3) 참고 규정 : 법령, 조례, 규칙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예산제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치를 기본정신으로 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예산과정

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구의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예산과정에 대한 교육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4. 구 예산에 대한 교육·홍보 및 토론 활동
5. 그 밖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8조(의견수렴 및 결과 공개) ①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홍보 및 토론 활동) ①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교육·홍보 및 토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이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및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교육 등을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 주요 사업과 예산과정에 대한 정책토론회 및 평가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 사례

-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시민참여결산제’를 운영하고 있음. 시민참여결산제란 의원, 전문가, 회계법인 등에 의해 이루어진 기존의 결산 검사에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더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을 꾀하여 결산보고에 대한 재정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⁶²⁾
- 서울시 외에 자치구에서는 주민참여결산제를 실시하는 곳이 거의 없음. 서울시의 경우 결산심사와 별도로 시민이 예산 편성부터 집행&결산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사전공개 및 의견접수를 받고 예산집행에 대한 현장방문과 시민참여 결산의 날을 개최하여 결산 설명과 질의응답을 받음
- 서대문구청은 구청 홈페이지에 알기 쉬운 결산서를 공시하고, 그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함
- 그 밖에 부산광역시의 경우 2018년부터 주민참여결산제 시행. 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2021년부터 하남시의회 결산 승인 전 지난해 결산안 개요 및 주요 핵심사업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해 다음해 예산편성, 집행 시 반영을 검토하는 환류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그림 5-1> 경기 하남시 결산진행절차



※ 출처 : 하남시 공식블로그

62) 서울시 시민참여결산제도 정의 참고

5) 제도 운영 장단점

-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결산까지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집행부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고 주민참여결산제를 통해 주민들의 결산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높여 결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
- 서울시를 비롯한 주민참여결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집행부가 의회 결산안 심의 전에 결산안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이에 대해 지방의회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결산결과 공개 문제, 간단한 세입세출 개요와 설명서 공개만으로 재무운영의 적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것은 결산과정의 현실성을 간과한다는 문제제기 있음⁶³⁾
- 결산안에 대해 의원,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분석하고 의견을 모아 제출함으로써 내실있는 결산심의를 하고 의회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음.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과 비슷하게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가 관건

6) '주민참여결산제' 도입

가. 의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결산제'

- 예산 편성만큼이나 결산심사는 집행부 예비비의 사용,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등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음. 예산집행의 사후 평가인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만큼이나 결산심사는 집행부 견제에 필수적
- 주민참여결산제를 도입하여 '의회'에서 운영함으로써 재정운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자체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63) 2015.05.04. 신아일보. "서울시 시민참여결산제, 지방의회 의결권 침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286>

나. 주민참여결산제 운영 방안

- 구청에서 제출한 결산안에 대해 결산심의 권한이 있는 의원들과 주민, 전문가 참여로 결산안을 분석하고, 의견을 모아서 제출. 주민참여결산제의 시행 초기에는 주민들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몇몇 사업이나 부서로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
- 실질적인 결산심의는 의회에서 의원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의원의 결산심의권을 침해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주민참여로 인한 분석이 더해져 더욱 내실있는 결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주민참여결산학교’ 운영 및 예산 마련, ‘결산안 주민설명회’를 위한 결산안과 설명자료 사전 공개, 의원 요구자료 제출 등 집행부 협조 필요

다. 주민참여결산제 운영 예시

- 결산안 자료가 방대하여 주민들이 쉽게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 사업이나 부서를 정하여 주민참여결산제를 운영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광진구 청년사업’으로 심의대상을 결정할 경우, 광진구 결산안 중 청년정책에 해당하는 사업의 결산안을 발췌하여 주민참여결산자료 구성
- 광진구의회 주민참여결산 위원을 모집하고, 주민참여결산학교를 통해 주민참여결산제 제도 소개 및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광진구 재정운영현황, 결산안 개요, 주민참여결산자료(구 청년사업) 해설 등 본격적인 결산안 분석 전 준비단계 시행
- 의회 주민참여결산위원회는 주민참여결산자료의 결산안을 분석하고, 분석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의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요청자료를 받아서 위원회에 공유. 위원회는 결산안 분석리포트 및 질의사항 의회 제출
- 의회는 제출받은 위원회 분석리포트 및 질의사항을 결산안 심의 시 활용. 심의 이후 의회는 주민참여결산 심의대상 사업에 대한 결산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적으로 의원, 주민참여결산위원회 위원, 담당부서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성과공유회 개최. 성과공유회를 통해 주민참여결산위원회 활동 경과 및 성과와 의회 주민참여결산 최종보고서 공유 진행
- 결국 의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결산제는 집행부 결산안에 대해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결산안을 심의하는 의원들의 ‘심의 지원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결과가 됨

<표 5-3> 광진구의회 주민참여결산제 운영 예시

광진구의회 주민참여결산 심의대상 결정	사업 or 부서
▽	
광진구의회 주민참여결산 위원 모집	20명 정도
▽	
광진구의회 주민참여결산학교	주민참여결산제 운영, 광진구 재정운영현황, 지난연도 결산안 개요, 주민참여결산 사업 or 부서업무 등 설명
▽	
주민참여결산위원회 심의대상 결산안 분석, 자료제출 요청	요청 자료는 의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위원회에 공유
▽	
주민참여결산위원회 심의대상 결산안 분석보고서 및 질의사항 의회 제출	
▽	
의회 결산안 심의 시 주민참여결산위원회 분석보고서 및 질의사항 활용	
▽	
의회 결산안 심의 이후 심의대상 결산안 심의 최종보고서 작성	
▽	
주민참여결산위원회 성과공유회	주민참여결산위원회 활동 경과 및 의 회 최종보고서 공유

7) 관련 규정 제정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참여결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결산심의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자치역량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의 투명성,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주민참여결산제"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심의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의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결산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결산심의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의회 주민참여결산제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민참여결산제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주민참여결산제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결산제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결산심의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참여결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결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
2. 제5조제2항제3호의 심의대상(이하 “심의대상”이라 한다) 결산안 분석 및 의견제출
3. 제15조에 따른 성과공유회 개최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한쪽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주민
 3. 심의대상과 관련된 분야의 시민단체 활동가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 위촉 후부터 성과공유회를 실시할 때까지로 한다.

제8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는 의회 의정담당 팀장이 맡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주민참여결산학교) ① 의장은 주민참여결산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주민참여결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주민참여결산학교의 교육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요청) ① 위원회는 심의대상 결산안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에 대해 의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고, 제출받아 위원회가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보고서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의회의 구 결산안 심의 3일 전까지 심의대상 결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및 분석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원들은 구 결산안 심의 시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참여결산제 최종보고서) 의장은 의회의 결산심의과정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주민참여결산제 운영과 심의대상 결산안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성과공유회) 의장은 제14조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포함한 주민참여결산제 성과공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구청장 협조) 구청장은 의회 주민참여결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및 지원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탁) 구의회 의장은 주민참여결산제 운영 및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운영계획 심의 및 위원회 임기는 주민참여결산제의 발전에 따라 위원회 기능 강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임

(4) 조례 제개정 참여

1) 광진구의회 현황

- 의원이나 위원회가 발의한 조례는 심사에 앞서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하기 위해 조례안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음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약칭: 주민조례발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임을 목적. 광진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를 2022년 제정함
- 주민 조례 발안제도는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 때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으나 청구요건이 엄격하고 복잡해 활성화되지 않았음. 이에 개정법은 조례 청구 나이를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 주민으로 하향하여 참여 가능 주민의 폭을 확대하고 최소 동의 인원을 줄임
- 조례 제개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의 참정권 보장을 하는 것 외에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질적, 양적 향상을 위해서도 긍정적. 주민 조례 발안 제도 청구요건 완화로 입법에 대한 주민참여의 문턱은 다소 낮아졌지만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에 대한 주민참여는 여전히 소극적

2) 관련 규정 : 법령, 조례, 규칙 등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77조(조례안 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3) 참고 규정 : 법령, 조례, 규칙 등

「하남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조례입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시민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남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나.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 다.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시민참여”란 조례입법 과정에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그 의사를 반영하는 등 시와 시민,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입법과정에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시민참여는 시와 시민, 의회가 협력하여 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조례 제·개정 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개정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누구나 조례입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3월 말까지 하남시 시민참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 절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등) ① 시장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조례입법학교 시행) ① 시장은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하남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입법학교 등 자치법규 교육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시민참여에 따라 제·개정된 조례를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타 지방의회 운영 사례

- 조례 제개정의 과정에 주민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과의 간담회나 토론회. 대부분의 의회에서는 심사 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조례의 제개정 내용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있으나 이는 조례 제개정의 결과물에 대한 공유일 뿐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방법이라 볼 수 없음
- 금천구는 주민이 인권 조례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인권 조례 제정 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2019년 전국 최초로 주민 참여 형태의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⁶⁴⁾
- 금천구는 인권 조례에 대한 보수 개신교의 반대 민원이 있었음에도 관주도가 아닌 주민주도였기에 인권 조례가 통과될 수 있었음. 주민참여 인권 조례가 제정될 수 있었던 요인은 2017년부터 시작된 주민 인권교육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가 선행되었기에 주민참여조례 제정이 더 힘을 가질 수 있었음
- 실제로 조례의 제정뿐만 아니라 통과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서명을 받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며 본회의 통과 때는 조례 통과에 대한 축하 퍼포먼스까지 준비해서 연출함
- 주민조례발안제도는 더 쉬워졌으나, 청구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였더라도 지방 의회에서 안건상정, 통과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

64) 시정일보 <http://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405>

<표 5-4> 서울시 및 자치구 주민조례청구 현황(2021~2022.12.현재)

연도	자치구	조례명	결과
2021	노원구	노원구 세입세출마감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종료
	노원구	노원구 순세계잉여금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종료
	노원구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정)	청구종료
	광진구	광진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종료
	도봉구	도봉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제정)	청구종료
	송파구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제정)	운영위 원안수리
	성동구	성동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제정)	원안가결
	용산구	용산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종료
2022	강서구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제정)	수정가결
	서울시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폐지)	청구인 명부 제출
	송파구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제정)	청구요건 미달
	종로구	종로구 주민특별위원회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제출
	서울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개정)	서명중
	서울시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제정)	서명중
	서울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제정)	서명중

※ 자료 : 주민e직접 홈페이지(<https://www.juminegov.go.kr>) 주민조례청구 현황⁶⁵⁾

5) 제도 운영 장단점

○ 조례 제개정에 주민참여를 위해 간담회나 토론회, 공청회를 하는 것은 지역의 주민여론을 조례 제개정에 반영하는 것 외에 제개정되는 조례에 대해 지역에 알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장점도 가짐. 반면에 조례 제개정을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가 개별 의원들로 이루어지면 한정된 자원 때문에 운영에 무리가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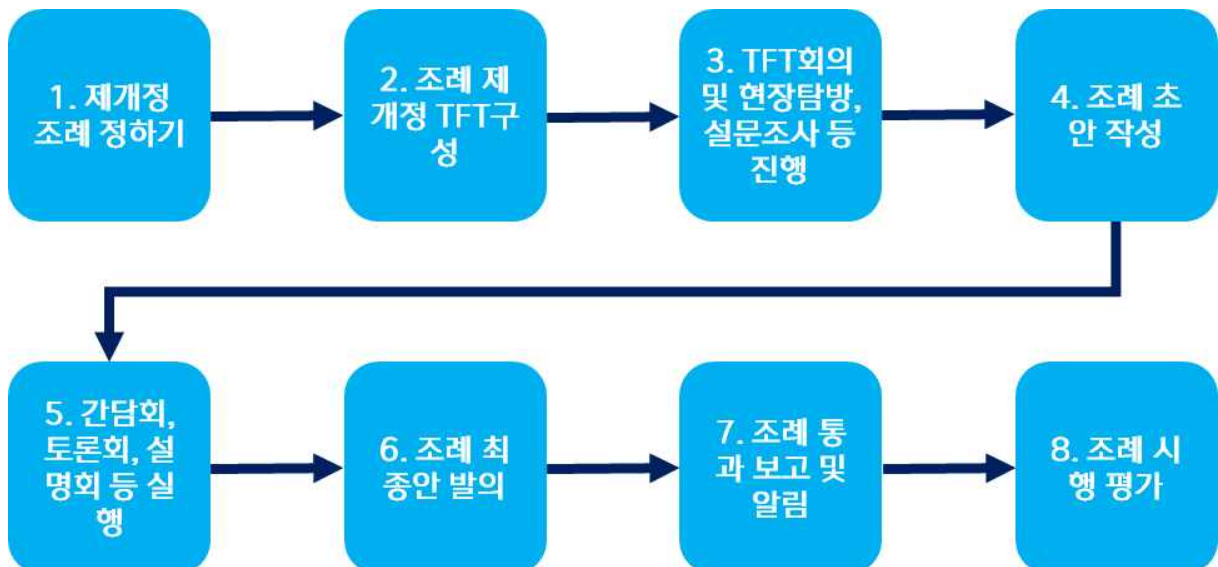
○ 조례 제개정 과정에 주민이 참여했을 경우 조례를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고, 조례 공포 이후에도 조례에 따른 집행에 대해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의회와 행정만의 조례가 아닌 주민 생활에 필요한 생명력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음

65) 주민조례청구 현황은 파악할 수 있으나, 청구결과에 대해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6) 제도 개선안

- 광진구의원들의 FGI 결과를 통해 의원들이 조례 발의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음.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수보다는 조례를 만듦으로써 지역과 의원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
- 조례 제개정 전에 지역 현안과 자료수집을 하고 조례 제개정을 위한 주민+전문가 또는 활동가+집행부와 TFT를 구성하여 회의 및 현장 탐방이나 설문조사 등을 진행. 조례 초안을 가지고 주민과의 간담회나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수렴. 끝으로 통과된 최종조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음
- 이외에 조례 제개정에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요건이 완화된 주민 조례 발안 제도를 활성화. 주민 조례 발안 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하여 입법화하는 창구를 열어 놓은 것
- 조례입법 주민참여 지원 조례를 제안. 주민이 조례입법의 과정에 함께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입법학교의 시행도 담고 있음. 조례 제개정에 주민이 의원과 함께 한다면 조례 통과와 운영에 명분과 힘을 더 얻게 되고 함께한 주민들은 미래에 의원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임

<그림 5-2> 조례 제개정 주민참여 실행안 예시



7) 관련 규정 제정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조례입법 주민참여 지원 조례」 제정(안)⁶⁶⁾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조례입법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주민참여"란 조례입법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그 의사를 반영하는 등 구와 주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입법과정에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주민참여는 구와 주민, 의회가 협력하여 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조례 제개정 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개정할 수 있다. 다만, 구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5조(의장의 책무)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조례입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의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의회 주민참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

6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이는 광진구청장의 소관임

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등) ① 의장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조례입법학교 시행) ① 의장은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입법학교 등 자치법규 교육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결과 공개) 의장은 주민참여에 따라 제·개정된 조례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청원제도

1) 광진구의회 현황

- 청원이란 법치국가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헌법 제26조에서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의 구제, 법률·명령·규칙의 개정 및 폐해, 공무원의 파면 등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관공서·지방의회 등 국가기관에 서면으로 희망을 표현하는 일⁶⁷⁾
- 긴 역사를 가진 청원제도는 재판제도가 정비되지 못하고 의회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전제정치 시대에는 국가 또는 군주에 대하여 자기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한 호소의 수단과 권리침해의 회복 및 구제 수단의 기능뿐 아니라 정치에 관한 국민의 희망이나 실정을 위정자에게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통치자의 부당한 탄압에 항거하여 통치에 관한 불복을 나타내는 저항권의 성격이었음
- 의회제도의 발달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사법제도의 확립으로 권리침해의 구제 수단이 한층 효율적으로 시행되자 청원은 권리구제 수단보다는 국민의 바람을 실행하는 수단의 역할이 더 커짐
- 헌법에서 국민이 국가기관에 행한 청원을 국가가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희망 사항을 국가에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원 사항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심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권적 의의가 있음
- 청원법에 의한 청원과 달리 2019년 개정 전의 국회법과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청원은 반드시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의원의 소개가 없는 민원의 경우에는 진정으로 처리⁶⁸⁾

67) 국회 홈페이지, 네이버 국어사전 참고

68) 안성수, 정세현. 2021. 「지방의회의 청원·진정제도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제21권 제2호 p.145~176. 2021.12.

○ 청원의 절차

<그림 5-3> 광진구의회 홈페이지 청원의 절차(청원심사규칙)



-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청원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를 청원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나 지방의회에 청원한 경우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
- 광진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청원과 진정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고, 총 8개의 청원을 의안 처리현황을 통해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음. 아래 자료로 보아 주민들의 청원제도 활용이 저조했으며 지난 10여 년간 청원이 1건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5-5> 광진구의회 청원처리 현황

순번	의안명	발의자	소관	처리결과	발의일
1	능동로지구단위계획구역및단위계획백지화 요구에관한청원	나중한의원	복지건설 위원회	기타	2000-0 9-05
2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공원지하주차장건립 반대요구청원의건	구의동611 노은자외2,9 22명	복지건설 위원회	처리-채택	2001-0 9-24
3	[청원]중곡4동69-2일대입체공영주차장건 설반대	추윤구	복지건설 위원회	기타	2002-0 9-04
4	중곡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	추윤구	복지건설 위원회	처리-채택	2007-0 1-18
5	중곡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	곽근수	복지건설 위원회	처리-채택	2007-0 4-19
6	중곡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	박채문	복지건설 위원회	처리-채택	2007-0 5-18
7	자양4동 5,6번지에 기결정된 지구단위계획 해제 청원의 건	김창현	복지건설 위원회	처리-채택	2010-0 2-26
8	건대 맛의 거리 차량통제 청원(2010-10)	이보현	복지건설 위원회	보류	2010-1 1-10

※ 자료 : 광진구의회 홈페이지 자료로 재구성

2) 관련 규정 : 법령, 조례, 규칙 등

「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지방자치법」

제85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87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7조(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청원서에 청원을 소개(紹介)한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58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③ 청원서에 첨부되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제8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청원법」 제6조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여야 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청원인 등 진술)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9조(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0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원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소관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 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때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1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2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처리 내규」

제2조(청원서의 처리부 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서의 처리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청원처리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접수) 의회 사무국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회회부 및 통지) 사무국장은 청원요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수리대상청원은 의회의원 전원에게 배부하고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3) 타 자치구의회 운영 사례

- 청원제도는 헌법에도 명시된 주민참여의 권리이고 대의제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저조한 관심과 청원 요건의 까다로움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4) 제도 운영 문제점

-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고 문서로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에 제약이 있음. 의원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지역주민이 의원에게 청원을 요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인터넷의 발달과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청원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주민 접근성이 떨어짐

5) 온라인 청원시스템 제안

- IT시대를 맞아 국회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운영. 청와대는 법적 근거가 없으나 국회는 국회법(제123조의2)과 규칙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
- 국민동의청원이란 이전에는 국민들이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해야 했는데 국회법 개정을 통해 직접 온라인을 통한 국민청원이 가능해짐.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30일 이내 10만 명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법률 제개정, 공공제도, 시설운영 등에 대한 청원이 가능⁶⁹⁾
- 지금은 국민제안제도로 바뀐 청와대의 국민청원은 국민의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의 답변으로 처리가 완료되지만,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이 성립되면 국회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⁷⁰⁾

「국회법」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국회는 청원의 제출·접수·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69)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https://petitions.assembly.go.kr>

70) 청와대 국민제안 홈페이지 <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

「청원법」

제10조(온라인청원시스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청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전자문서로 제출된 청원을 효율적으로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청원법 상 온라인청원(제10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지만 지방의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 지역주민의 입법 참여 범위 확대를 위해, 온라인을 이용한 청원제도의 운용에 대한 다방면의 고찰이 필요기)

○ 온라인 청원제도를 통해 주민의 여론 수렴과 민심을 의정에 반영하는 것 외에 주민들이 보다 쉽게 청원제도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을 양성화하는 효과도 가져옴

71) 안성수, 정세현. 2021. 「지방의회의 청원·진정제도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제21권 제2호 p.145~176. 2021.12.

(6) 민원처리 프로세스

1) 광진구의의회 현황

-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일반 민원과 고충 민원으로 나눌 수 있음. 여기서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 다만 행정기관,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⁷²⁾
- 광진구의의회에서는 청원과 진정에 관한 규칙과 처리 프로세스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청원과 진정 이외의 민원처리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광진구의의회 홈페이지의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들어오는 메시지 민원은 민원 내용과 처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으나 의원들이 지역 주민을 통해 받은 개별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과정이나 기록을 찾을 수 없음

2) 관련 규정 : 법령, 조례, 규칙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8조의2(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① 민원인은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나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로 제출할 수 있다.

72)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26579&cid=43667&categoryId=43667>

다만,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받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의 진본성(眞本性)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경유기관·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를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민원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참고 규정 : 법령, 조례, 규칙 등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진정, 건의, 질의, 탄원, 호소 등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민원행정상담관"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민원상담인을 말한다.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② 사무처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서식에 따른 민원처리부에 기록·관리한다.

③ 사무처장은 민원 접수 및 관리를 위하여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민원처리)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사무처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 확인, 현장조사 또는 관계기관·의원·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 7일

2. 진정, 건의, 탄원, 호소 등의 민원 :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양한 채널(전화, 인터넷, 모바일, SNS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에 접수되는 메시지민원의 종류 및 그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소통행정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1.>

1. "메시지민원"이란 시정에 대하여 형식에 관계없이 처분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및 단순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접수부서"란 채널별 유입된 메시지민원을 분류하여 처리부서로 배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접수 또는 이송받은 메시지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다음 각 목의 메시지민원 처리시스템별로 메시지민원을 모니터링 및 점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응답소

나. 민주주의 서울

제3조(종류) 이 예규에서 정의하는 메시지민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민원 :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신고사항

2. 제안민원 : 시정발전에 유익한 시민의 제안, 건의, 아이디어 등

3. 일반민원 : 고충, 상담, 진정, 질의 등

4. 소통민원 : 단순의견, 단순문의, 감정표현 등

제4조(접수·처리) ① 접수부서의 장은 접수대장(접수번호 및 아이디,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중 하나를 필수항목으로 한다)에 처리를 요청받은 메시지민원을 기재하여 접수처리한 후, 해당 메시지민원을 지체없이 처리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메시지민원을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기한) ① 메시지민원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민원 : 별표 1에 따른 처리기한
2. 제안민원 : 별표 2에 따른 처리기한
3. 일반민원 : 5일
4. 소통민원 : 즉시(3근무시간 이내)

② 메시지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1.>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 7일
2. 진정, 건의, 탄원, 호소 등의 민원 :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의장이 접수한다.

②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 서식의 민원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구민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구민소통방을 의회 누리집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온라인 구민소통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원의 신청 및 진행현황 열람
2. 민원인이 공개를 동의한 민원 사례
3. 의회의 민원 처리에 관한 안내 및 관련 자료

제5조(민원처리)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지정한다.

② 소관 위원회는 회부 받은 민원 중 울산광역시 중구청 등 관계 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확인과 현장조사 또는 관계 기관·의원·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민원: 7일

2. 건의, 진정, 탄원, 호소 등의 민원: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타 지방의회 운영 사례

○ 집행부인 구청은 체계적인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가짐. 그러나 의회로 오는 주민민원에 대한 처리 규정이나 담당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음

(1) 국민신문고, 구청장에 바란다, 직원에게 직접 제기되는 민원 등
: 민원여권과 접수 → 감사담당관 경유 → 해당부서로 이송

(2) 120 다산콜센터, 응답소를 통한 민원 : 감사담당관 → 해당부서 이송

○ 민원처리는 주민들이 구의원들에게 희망하는 우선순위 업무 중 하나. 대부분의 구의회는 주민에게 현장에서 민원을 받아 정해진 민원처리 프로세스 없이 개별적인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

○ 민원을 구의원에게 전달하고 명확한 답변조차 받지 못해 의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 구의원이 처리한 민원에 대한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아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주민 불만이 있음

○ 서울시의회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과정을 정확히 명시하여 규정하고 문서화 하여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구의회 중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5) 제도 운영 장단점

-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제도화하여 청탁 등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하고 민원을 양성화. 투명화하고 객관적인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통해 의회의 신뢰도와 주민의 의회 만족도 상승. 의원별로 비체계적으로 관리하던 민원처리를 명문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증대. 의원의 의정활동의 결과물로 기록을 남길 수 있음
- 민원에 대한 자료를 남기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는 의회사무국의 업무 부담. 민원처리 담당자나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한 예산의 문제 발생할 수 있음

6) 광진구의회 민원처리 프로세스 필요

- 의회에 명시화된 민원처리 프로세스가 없으면 민원처리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민원인의 만족도가 민원인마다 크게 다름. 구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이기에 집행부만큼 민원처리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와 체계적인 매뉴얼 필요
- 구의회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민원 처리과정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원의 접수 담당자와 민원의 접수 가능 범위, 처리 기간 등을 명시하고 필요하다면 의장이 조사권과 예산의 지출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분명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

7) 관련 규정 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및 호소문 등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2. "민원인"이란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 ②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 서식의 민원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구민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구민소통방을 의회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온라인 구민소통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원의 신청 및 진행현황 열람
 2. 민원인이 공개를 동의한 민원 사례
 3. 의회의 민원 처리에 관한 안내 및 관련 자료

제4조(민원 처리의 예외) ① 의장은 민원의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규정된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
 3.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사항
 4.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
- ② 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민원처리)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지정한다.

- ② 소관 위원회는 회부 받은 민원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등 관계 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확인과 현장조사 또는 관계 기관·의원·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민원 : 7일

2. 건의, 진정, 탄원, 호소 등의 민원 :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 통지) ① 의장은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부·이송된 민원은 위원회 또는 기관에서 처리 후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구민소통방으로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8조(민원문서 반환)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고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9조(민원내용 활용)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소관 위원회 및 해당 지역 의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6. 광진구의의회 자치법규 분석

(1) 광진구의의회 자치법규 기본분석

1) 광진구의의회 현황

○ 광진구의의회 자치법규는 총46건으로 조례 20건, 규칙 11건, 규정 12건, 내규 03건이 있음

○ 기능별로 구분하면

- 의회 회의 분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의회 회의 규칙」 외 11건,
- 의원 지위 및 신분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의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외 6건,
- 의정활동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외 4건,
- 의회 주민참여를 위한 「서울특별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외 3건,
- 의회 운영 분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의회 회장 규정」 외 4건,
- 의회 사무국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의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외 2건,
- 의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외 9건 등이 있음

<표 6-1> 광진구의의회 자치법규 리스트

분류	자치법규 명
의회 회의 (12건)	광진구의의회 회의 규칙
	광진구의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광진구의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
	광진구의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광진구의의회 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
	광진구의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광진구의의회 방청 규정
	광진구의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광진구의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광진구의의회 위원회 조례
	광진구의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광진구의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분류	자치법규 명
의원 지위 및 신분 (7건)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광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광진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광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정활동 지원 (5건)	광진구의회 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광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의회 주민참여 (4건)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처리 내규
	광진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의회 운영 (5건)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광진구의회 휘장 규정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광진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광진구의회 간행물 보존에 관한 내규
사무국 (3건)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광진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의회 사무국 공무원 (10건)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광진구의회 공무원증 규정

※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2) 관련 규정 : 법령, 조례, 규칙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52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7조(조례안 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3) 의회 관련 법령 상 자치법규 위임 사항

「지방자치법」

가. 의원의 의정활동비, 상해·사망 등의 보상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광진구의회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됨. 하지만 법과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와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두도록 하였기에 광진구청에서 담당함

나.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에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대한 내용만 있음. 지방자치법 제41조에는 조례로 정하라고 하였으나, 현재 광진구의회는 규칙에만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필요

다.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준수

제43조(겸직 등 금지)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정됨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66조제3항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광진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에는 관련 내용이 없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음

라. 의회 회의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광진구의회는 「○○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는 없음. 위임된 내용은 임의사항이므로 법에서 규정한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님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됨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사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사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사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사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사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관련 내용 담겨 있음. 하지만 점차 「○○의회 기본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추세임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정됨. 타 지방의회는 점차 「○○의회 기본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추세임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77조(조례안 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97조(방청인의 단속)⁷³⁾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청인 단속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7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방청 규정」 제정되어 있음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74)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75)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84조제 3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부터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④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정됨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위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위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위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됨. 법에는 조례로 정하라고 규정함. 타 지방의회는 「○○의회 기본 조례」에 해당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함

74) 징계와 관련해서 회의규칙에도 그 내용이 있지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에도 관련 내용 있음

75) 광진구의회에는 회의록 작성에 대해 회의규칙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치법규에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마. 의회 사무국 및 사무직원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 광진구의회에는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이 있음

○ 광진구의회 사무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치법규 있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무원증 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① 제42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이하

“감사·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하거나 조사한다.

1. 감사·조사위원회 편성
2. 감사 또는 조사 일정
3. 감사 또는 조사 요령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 그 밖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대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됨.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에 내용 있음

사. 의회 청원 심사

제59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처리 내규」 제정됨

아. 결산검사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됨

자. 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제7조(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임자를 포함한다)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명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7. 강요·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2. 시·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

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위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위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에는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수리 및 각하, 심사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담고 있음

4) 타 자치구의회의와 비교⁷⁶⁾

가. 자치구의회의별 자치법규 수

<표 6-2> 서울 자치구의회의별 자치법규 수

자치구	건	자치구	건	자치구	건
종로구	45	도봉구	47	금천구	41
중구	49	노원구	45	영등포구	48
용산구	46	은평구	54	동작구	41
성동구	45	서대문구	50	관악구	55
동대문구	56	마포구	51	서초구	41
중랑구	49	양천구	49	강남구	53
성북구	47	강서구	41	송파구	56
강북구	57	구로구	41	강동구	55

- 광진구의회의 자치법규는 46건으로 25개 자치구의회의 자치법규 평균 48건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음. 가장 많은 의회의 자치법규를 갖고 있는 곳은 57건의 강북구. 가장 적은 곳은 41건의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임

나. 의회의 회의 분야

- 모든 자치구의회의에 「의회의 회의 규칙」 있음. 「의회의 기본 조례」가 있는 곳은 10개의 자치구의회의이며, 광진구의회의에는 없음. 기본 조례가 있는 곳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위원회 조례」 등의 조례가 없음. 두 조례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의회의 관련 자치법규 추세로 보임. 「의장 등 선거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는 곳은 강동구가 유일
- 의회의 회의와 관련된 자치법규는 그 이름이 조금 다르거나 유무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의회의 회의록, 출입 및 방청, 회의 출석 공무원 및 증인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각 자치구의회의 출범시기 제정되어 현재까지 변화 없는 규정도 있어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 있음

76) 여기에 사용하는 자치법규에 관한 자료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을 통해 확인함

<표 6-3> 서울 자치구의회별 자치법규 현황(의회 회의)

자치법규 명	광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의회 기본 조례		○		○			○	○		○	○	○	
의회 회의 규칙	○	○	○	○	○	○	○	○	○	○	○	○	○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	○			○				○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	○	○		○	○	○	○	○	○	○	○	○	○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	○	○	○	○	○	○	○	○	○	○	○	○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		○	○			○				○
회의장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	○	○	○	○	○	○	○	○	○	○	○	○	○
의회 방청 규정	○	○	○	○	○	○	○	○	○	○	○	○	○
경위 근무 규정		○	○	○	○	○	○	○	○	○	○	○	○
회의장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	○	○	○	○	○	○	○	○	○	○	○	○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	○	○	○	○	○	○	○	○	○	○	○	○
의회 위원회 조례	○		○		○	○			○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	○	○	○	○			○	○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사무 보조비 지급 규정				○								○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자치법규 명	광진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의회 기본 조례							○			○			○
의회 회의 규칙	○	○	○	○	○	○	○	○	○	○	○	○	○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	○	○	○		○	○		○	○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	○	○	○				○		○		○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	○	○	○	○	○	○		○	○	○	○	○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	○	○	○	○		○	○		○		
회의장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	○	○	○	○		○	○		○		○	○	○
의회 방청 규정	○	○	○	○		○	○		○	○	○	○	○
경위 근무 규정		○	○	○		○	○		○		○	○	○
회의장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	○	○	○	○	○	○		○	○	○	○	○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	○	○			○	○		○	○	○	○	○
의회 위원회 조례	○	○	○	○	○	○		○	○		○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	○	○	○	○	○				○	○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사무 보조비 지급 규정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다. 의원 지위 및 신분 관련 분야

<표 6-4> 서울 자치구의회별 자치법규 현황(의원 지위 및 신분)

자치법규 명	광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의원 행동강령 조례	○	○	○	○	○	○	○	○	○	○	○	○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	○	○	○	○		○	○		○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규칙)				○		○			○	○	○	○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	○	○	○	○	○	○	○	○	○	○	○	○
의원 신분증 규칙(규정)	○	○		○	○	○	○	○	○	○	○	○	○
의원 서명 및 인장 등록에 관한 내규				○									
의회장에 관한 규정		○	○	○	○			○		○	○	○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	○		○	○	○	○					

자치법규 명	광진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의원 행동강령 조례	○	○	○	○	○	○	○	○	○	○	○	○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		○		○		○		○	○	○	○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규칙)		○	○		○	○	○			○			○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	○	○	○	○	○	○		○	○	○	○	○
의원 신분증 규칙(규정)	○	○	○	○		○	○	○	○	○	○	○	○
의원 서명 및 인장 등록에 관한 내규													
의회장에 관한 규정			○				○		○		○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		○				○	○	

- 의원으로써 지켜야 할 윤리&행동강령에 대해 광진구의회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은 다른 구처럼 제정되어 있음. 광진구의회와 달리 이와 관련된 내용을 묶어서 운영하는 의회도 있음. 광진구의회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은 없는 상태
- 의원 지위 및 신분 관련 분야에서 광진구의회에는 없지만 눈여겨 볼 자치법규가 있음. 현직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할 경우 ‘의회장’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의회장에 관한 규정」이 있음. 이 규정은 12개 자치구의회에 제정되어 있음
- 다음으로는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하여 지역 및 의정 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기 위해 만들어진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는 종로구,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로 10개 자치구의회에 있음. 이중 종로구와 동대문구는 의회 사무국이 아닌 집행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음

라. 의정활동 지원 분야

- 제8대 의회에서 활동이 시작되었던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대한 조례나 규칙은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의회에 규정이 갖춰져 있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규정도 조례나 규칙 등으로 위상은 조금 다르지만 모든 의회에 제정되어 있음
-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등 10개 자치구의회에는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되는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가 있음. 이 조례는 광진구의회에 없음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이 의회나 의원이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열어 주민과 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광진구의회를 포함하여 11곳의 자치구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음

- 동대문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있으며, 노원구, 동작구에는 시행규칙이 있음. 중구의회에는 유일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 이 조례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로 취지는 좋으나 소송의 경우 보통 의원 임기보다 기간이 긴 편이고, 지원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
- 그 밖에 광진구의회에 없지만 10개 자치구의회에서 운영하는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강북구의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 조례」, 서초구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있음. 의정활동 자문 및 민원해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규정들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필요 있음
- 성동구, 성북구, 강북구, 강남구에 있는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는 장애를 가진 의원이라도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의원이 없더라도 제정을 할 필요가 있음

<표 6-5> 서울 자치구의회별 자치법규 현황(의정활동 지원)

자치법규 명	광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종량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규정)	○	○	○	○	○	○	○	○	○	○	○	○	○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	○	○		○	
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		○						○	○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		○	○	○	○				○	○	○	○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	○	○	○		○	○	○	○	○	○	○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 조례								○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		○	○					
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자치법규 명	광진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규정)	○	○	○	○	○	○	○	○	○	○	○	○	○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				○			○	○
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					○		○	○					○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	○	○	○		○			○	○	○	○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	○	○	○	○	○	○	○	○	○	○	○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 조례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			○			○				

마. 의회 주민참여 분야

<표 6-6> 서울 자치구의회별 자치법규 현황(의회 주민참여)

자치법규 명	광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의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
청원 심사 규칙(규정)	○	○	○	○	○	○	○	○	○	○	○	○	○
청원 심사 규칙 처리 내규	○				○		○	○	○	○	○	○	○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	○	○	○	○	○	○	○	○	○	○	○	○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자치법규 명	광진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의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			○		○		
청원 심사 규칙(규정)	○	○	○	○	○	○	○	○	○	○	○	○	○
청원 심사 규칙 처리 내규	○	○	○						○		○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	○	○	○		○	○		○	○	○	○	○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1.10.19. 제정된 이후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의회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조례 제정 이후 서울 자치구 곳곳에서 주민조례청구가 이뤄지고 있음
- 광진구의회에 없는 「의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서대문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에 제정되어 있으며, 양천구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 참여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음. 의정 모니터 및 참여단은 의회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조례로 특히 서울시의회에서는 오랜 기간 운영되어 왔음
- 의회 홍보 분야에 주민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용산구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명예기자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홍보 자문 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음. 광진구의회 홍보에 있어 주민참여를 목표로 할 때 참고할 만함
- 청소년의회 관련 조례는 많은 자치구에 있으나, 담당부서가 의회 사무국이 아닌 집행부인 경우가 있으며, 광진구의회도 그 중에 한 곳임. 또한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중구의회의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로 의회체험활동을 명시한 곳도 있음

바. 의회 운영 분야

<표 6-7> 서울 자치구의회별 자치법규 현황(의회 운영)

자치법규 명	광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의회 공인 조례(규정)	○	○	○	○	○	○	○	○	○	○	○	○	○
의회 휘장 규칙(규정)	○	○	○	○	○	○	○	○	○	○	○	○	○
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규정)	○	○	○	○	○	○	○	○	○	○	○	○	○
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		○		○	○	○	○	○	○	○	○	○
간행물 보존에 관한 내규	○	○		○	○	○	○	○	○	○	○	○	○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		○				○	○	○	○			○	○

자치법규 명	광진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의회 공인 조례(규정)	○	○	○	○	○	○	○	○	○	○	○	○	○
의회 회장 규칙(규정)	○	○	○	○	○	○	○		○	○	○	○	○
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규정)	○	○	○	○	○	○	○	○	○	○	○	○	○
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	○	○	○		○	○		○		○	○	○
간행물 보존에 관한 내규	○	○	○				○		○		○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		○				○		○			○	○	○

-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서울 자치구의회의 중 서대문구와 강동구에만 있음.
- 의회 운영과 관련된 자치법규는 대부분의 의회에 제정되어 있음. 하지만 오래 전 제정 이후 손보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통합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현재에 맞게 개정할 필요 있음
- 「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의회에 있으나, ‘참관’이라는 표현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임. 규정의 목적은 의회에 ‘견학’ 혹은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 규정하는 것인데, 참관은 회의나 개표를 보는 것으로 적절치 않으므로 「의회 견학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해야 함

의회 운영과 관련되어 하나의 자치구의회에만 존재하는 자치법규를 보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보 발행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과 같이 의정홍보물과 관련된 게 있으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개원 기념일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후원 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류협력 증진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회청사관리규정」이 각 의회에만 규정되어 있으며, 은평구와 강동구의 「의회 도서실(자료실)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있음

사. 의회 사무국 분야

<표 6-8> 서울 자치구의회별 자치법규 현황(의회 사무국)

자치법규 명	광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사무국(사무기구) 설치 조례	○			○	○	○		○				○	
사무기구(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	○	○	○	○		○	○	○	○	○
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	○	○	○	○	○	○	○	○	○	○	○	○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회 직무대리 규칙	○	○	○	○	○	○	○	○	○	○	○	○	○
업무 인계인수 규칙					○				○				

자치법규 명	광진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사무국(사무기구) 설치 조례	○		○			○	○						
사무기구(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	○			○	○	○	○	○	○
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	○	○	○	○	○	○	○	○	○	○	○	○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회 직무대리 규칙	○	○		○	○	○	○	○	○		○	○	○
업무 인계인수 규칙											○	○	○

-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사무 분장 규칙」은 대부분의 자치구의회에 있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책지원인력에 대해 관악구의회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의회 사무에 대한 업무 「인계인수 규칙」은 성동구, 강북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5개 자치구의회에 제정되어 있는데, 중단 없는 의회 사무 및 의정지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자치법규임

아. 의회 사무직원 분야

<표 6-9> 서울 자치구의의회별 자치법규 현황(의회 사무직원)

자치법규 명	광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	○	○	○	○	○	○	○	○	○	○	○
의회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규칙)								○					
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			○	○	○	○	○	○	○	○	○	○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	○	○	○	○	○	○	○	○	○	○	○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	○		○	○	○	○					○
재택근무 시행규정						○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규칙)	○						○						
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					○		○				○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	○		○	○		○	○	○			○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	○	○		○	○	○	○			○	○
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		○	○			○	○	○	○	○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별정직 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		○											
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						○	
6급 이하 시보 공무원 실무수습 규정													
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공무원 제안 규칙		○											
의회 공무원증 규정	○	○		○		○	○	○				○	○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	○	○	○			○	○
공무원 행동강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	○	○	○	○	○	○	○		○	○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	○					
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명	광진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		○	○	○	○	○	○	○	○	○	○
의회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규칙)			○				○		○				○
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	○	○		○		○		○	○	○	○	○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	○	○	○	○	○	○	○	○	○	○	○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	○	○	○	○	○	○	○	○	○
재택근무 시행규정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	○										
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규칙)	○	○			○		○		○	○		○	○
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		○	○	○		○	○	○		○	○	○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	○	○	○		○	○	○	○		○	○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		○	○		○	○	○	○	○	○	○
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		○	○	○	○	○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										
별정직 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													
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	○			○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6급 이하 시보 공무원 실무수습 규정												○	
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			
공무원 제안 규칙								○					
의회 공무원증 규정	○	○	○		○							○	○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	○			○	○			○	○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				○	○		○	○	○	○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										○
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다양한 자치법규가 있는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통합 자치법규 필요성 있음
- 의회 사무국 인사규칙이 있고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인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자치법규는 규칙이고,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적절치 않음
-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역시 조례로 만든 곳이 있음.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나, 조례의 내용을 봤을 때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됨
- 강서구의회에 유일하게 공무원 채용시험을 본 경우에 면접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음
-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자치법규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재택근무 시행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와 종로구와 영등포구에 있는 「공무원 제안 규칙」이 독특한 면이 있음
-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는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등 14개 자치구의회에 제정되어 있으나, 광진구의회에는 없음
- 의회 사무직원의 윤리적 측면과 관련된 자치법규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각각 유일하게 있으며, 19개의 자치구의회에 마련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과 중랑구, 강북구, 양천구, 강동구에 제정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등은 광진구의회도 도입 검토 필요

(2) 광진구의회의 주요 자치법규 개선안⁷⁷⁾

1) 자치법규 개선방향

- 광진구의회의 46건의 자치법규 중 비슷한 내용은 통합하고, 대내외적인 부분이 혼합된 경우는 조례 및 규칙으로 격상하여 전체적으로 정비된 자치법규를 바탕으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타 지방의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 중 광진구의회에 도입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미 정비된 조례, 규칙과 조화롭게 제정되도록 함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현실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과감히 광진구의회에서 해당 법령의 제개정을 요구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의 선도적인 역할 필요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

- 서울 자치구의회의 10개 의회가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의 원칙을 규정하고, 흩어져있는 자치법규를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회의 진행이 이뤄지도록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함
- 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의 개정과 기본 조례에 내용이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함
- 더불어 기본 조례에 회의장 질서와 경호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방청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77) 세부적으로 이미 언급한 개선안에 대한 제안이 아닌 기타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내용을 주로 기술함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폐지하거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질서와 방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해당 규정의 내용으로 통폐합할 수 있음

-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할 경우 따로 조례를 만들기보다 기본 조례에 ‘○장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으로 내용을 담거나, ‘○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로 하는 것을 권장함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개정

- 현재 광진구의회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내용이 비슷하므로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만들. 제정안을 만들어 두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고, 하나의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나머지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음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하였으므로, 통합조례에 담을 수도 있음
- 윤리강령 조례와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통합하지 않고, 윤리강령 조례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을 수도 있음. 광진구의회에 없는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내용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해 볼 수 있음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활동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제정

- 이 조례는 광진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과 직원이 원활한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광진구의회에서 빠르게 제정하고, 그에 맞게 의회 사무공간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5) 의회 지방공무원 관련 자치법규 통폐합

- 지방공무원 법령을 다루는 상급기관에 문의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현재 광진구의회 자치법규의 ‘의회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의 정리 필요.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 근무, 교육, 복지, 징계 등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의회 사무직원의 윤리적 측면과 관련된 자치법규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무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성폭력 예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 등의 내용 도입 필요

6) 기타 자치법규 개선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장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등 의회 상징에 관한 내용이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를 모아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면 위 조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타 자치구의회에서 시행중인 의회 청사관리, 구의회 개원기념일, 후원 명칭 사용승인 등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킬 수 있음
- 광진구의회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록물 관리 규칙」을 제정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간행물 보존에 관한 내규」의 내용을 담을 수 있고, 영상을 포함한 각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

7. 광진구의의회 기능강화 및 운영개선 방안

(1) 제9대 광진구의의회 의정목표 및 의정가치 실현

- 의정목표(슬로건) : 구민의 생각대로 광진의 미래를 만드는 신뢰받는 의회
- 의정가치(의정방향)
 -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듣는 의회’
 - 구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실천 의회’
 - 구민과 호흡하며 발맞춰가는 ‘동행 의회’
- 이번에 의회 현황을 파악하고, 제시하는 ‘광진구의의회 기능강화 및 운영개선 방안’은 제9대 광진구의의회 의정목표 및 의정가치를 실현하고,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더불어 지방의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선진의회, 의정활동 업그레이드 정책의회,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와 더불어 광진발전과 주민의 삶의 변화를 위한 정책을 생산하고 이끄는 광진구의의회가 될 것임

(2) 광진구의의회 회의 개선방안

1) 상임위원회

- 현재 광진구의의회는 업무보고를 연석회의로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타 지방의회가 상임위를 강화하고, 그 중심으로 의회가 발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광진구의의회도 상임위 중심의 의회 운영이 필요함
- 광진구의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및 권한 강화, 의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임위원회 중심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의안과 예결산 심의 등이 이뤄져야 함

2) 특별위원회

- 광진구의의회에서는 예산결산 심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음
- 예산결산의 경우 상임위 중심으로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현재 광진구의의회는 예산안 심의의 경우 상임위 3일, 특위 9일이고, 결산안 심의 시 상임위 1일, 특위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계수조정을 통해 상임위별 심의내용이 조화롭게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면 됨

3)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3·4일차에 이뤄지는 질의·응답감사는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행정 전반을 다뤄야하기에 효율이 떨어짐. 이를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70개 팀과 복지건설위원회 100개 팀의 주요 업무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질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대표적인 주요 사업 중심 또는 민원 중심으로 감사가 진행될 가능성 큼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운영 방식을 벗어나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로 전환 필요.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행정을 상임위로 분배하여 더욱 철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권한을 강화해야 함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

4) 결산검사

-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근거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음. 광진구의의회도 조례를 개정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정수를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였으나, 2022년 결산검사위원으로 1명의 구의원과 3명의 세무사로 총4명을 위촉하여 개정된 시행령과 조례를 따라가지 못함

- 광진구의회 조례에 따라 10명 이내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의회 결산안심의 시 전문적인 결산검사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준비를 해야 함. 더불어 결산검사위원의 다양화, 3회 이상 연임 금지 등에 대한 개선 필요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5) 회의 공개

- 광진구의회는 서울의 24개의 타구와 마찬가지로 방청과 속기록을 통해 모든 회의는 공개하고 있으며, 본회의 및 상임위·특별위원회까지 전부 실시간 생중계를 하고 있음. 하지만 영상회의록의 경우 모든 회의를 실시간 생중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와 특별위의 영상회의록은 게시되지 않고 있음
- 상임위·특별위는 실시간 생중계까지는 이뤄지고 있으므로 영상회의록 게시를 위해 업무과중 상태인 홍보팀에 홍보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모든 회의가 원활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함

6) 구정질문

- 광진구의회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1문1답을 병행할 수 있으나, 실제 적용의 사례를 살펴보면 보충질의 시 해당 국장과 1문1답 가능하고, 질문 후 답변은 다음 본회의에서 진행
-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구정에 관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광진구의회 구정질문 조건을 의원중심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구정질문 시 정례회, 임시회 구분 없이 언제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질문방식은 일괄질문·일괄답변과 1문1답이 모두 가능하고 바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야 함

(3) 광진구의회 운영 개선방안

1) 의장·부의장 등 선출방식

- 광진구의회 의장·부의장 등 선출방식에 있어 후보등록 절차가 없는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견발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음. 투표방법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이 없음
- 광진구의회를 이끌 의장·부의장의 의회 운영방안을 모른 채 투표하는 것보다는 출마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후보등록을 하고, 공개적으로 정견발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대표성이 강화됨. 기표식의 투표방법도 명확히 하여 선출과정에 공정성을 기할 필요 있음. 상임위원장 선거도 이에 따르도록 규정해야 함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거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 사항들의 내용을 담을 수 있음

2) 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 제9대 광진구의회 의원은 14명으로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됨. 각 정당별로 원내대표는 있으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의회 내 교섭단체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거나 지원이 되지 않음
- 상위법의 부재로 제도 운영 근거가 미약하고, 그로 인해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 의원 수가 타 자치구의회에 비해 다소 적은 광진구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꼭 있어야 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숙고 필요
- 교섭단체 운영이 광진구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운영과 의회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명을 바꾸거나 내용만 삽입해서 개정할 수도 있음. 또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따로 만들 수 있음. 광진구의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한다면 ‘○장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으로 내용을 담는 것을 제안함

3) 의정자문기구

- 광진구의회에는 조례를 통해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의정자문을 구할 수는 없으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입법·법률고문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받기에 한계가 있음
- 고도의 전문화된 입법·법률고문 제도를 없앨 필요는 없어 보이며, 입법·법률고문과 의정자문위원회 2개의 의회 자문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서울 타 자치구의회의 경우 10~15명 이내로 자문위원을 구성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의정자문위원회를 제안함. 50명 내외의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전문적인 자문뿐만 아니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임. 또한 분과구성을 통해 유명무실한 자문위가 아닌 활발한 활동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짐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

4) 의회 홍보 활성화

- 의회 홍보 간행물, 홈페이지 및 SNS 등 의회 홍보 매체가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함. 홍보 업무의 전문성 측면에서도 전문인력이 부족함. 의원들이 의회 홍보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사무국 직원 역시 홍보에 대한 업무부담 호소함
- 정기 의회홍보 간행물 일원화, 온라인 홍보 강화, 유튜브 채널 운영, 웹 카드뉴스

제작, 뉴스레터 발송 및 카카오톡 채널 등 구독 채널 운영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광진구의회 홍보팀에 온라인 홍보 전문인력 확충이 절실함. 또한 ‘광진구의회 명예기자단’ 운영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높은 홍보효과 창출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정 홍보 활성화 조례」 제정(안)

(4) 광진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체계 개선방안

1) 정책지원관제

- 정책지원관은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와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 권한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됨. 정책지원관의 업무 지휘체계가 명확하지 않음. 의원의 입장에서는 전문위원이나 정책지원관 모두 다른 의원과의 업무중복 등으로 필요한 때에 업무를 지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함. 또한 의원의 업무 성격상 보안이 중요할 수 있는데 여러 의원을 동시에 지원해야 하다 보니 보안이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견이 있음
- 광진구의회 의원 FGI 결과 전문성 있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분야별 전문성을 우선 기준으로 채용하는 경우 의원의 개별보좌보다는 상임위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특정 분야 전문성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여러 의원들의 업무를 동시에 보좌하게 될 수 있음
-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의원실 옆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직접 지휘 아래 일할 수 있도록 의원을 기준으로 배치. 정책지원관 1인은 선거구와 상임위원회를 각기 서로 달리하는 의원 2인을 맡아서 보좌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함. 또한 정책지원관의 채용 및 운영을 위한 의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개정(안)

2) 의원연구단체 운영

- 광진구의회는 현재 3개의 의원연구단체가 활동 중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가 대체하고 있어 연구용역 심의의 객관성·공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지방의회의 정책 연구개발 기능이 강화되어감에 따라 연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관리는 함께 갖춰가야 할 부분임
- 연구단체 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의회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필요 있음. 연구결과의 체계적 관리, 주민참여형 연구 활성화와 연구 내용의 공개·성과물 공유가 되어야 하며, 타 지방의회 연구단체와의 교류도 확대되어야 함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3) 의회 교육·연수

- 현재 광진구의회의 교육연수는 대체로 법정 의무교육을 포함한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필수 역량을 가르치는 교육과 의원 개인별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비슷한 내용의 교육이 반복되고, 단발성 강의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교육 간 연계성·심화도가 떨어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지방의원 및 사무직원에게 대한 교육훈련 규정을 담은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의원 임기 4년 간 교육 계획과 연간 교육 연수 계획을 세울 수 있음. 위와 같이 제시한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위원회를 꾸릴 수 있음
- 국외연수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줄이고 연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제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함. 이를 위해 우선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위원을 모두 민간위원으로 하여 심사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들을 모시고 공무국외활동 사전보고회,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필요 있음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안)

4) 토론회·간담회 등

- 광진구의회는 간담회나 세미나가 비교적 활발히 열리는데 반해, 토론회는 한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간담회와 토론회 모두 관련 분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논의한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토론회의 경우,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대중을 초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규모와 효과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음
- 토론회 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 있음. 의회홍보간담회 및 운영비 목으로 2,400,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토론회 관련 예산은 따로 책정해두지 않음. 연간 토론회 개최 계획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둘 것을 제안함. 또한 지역사회에서 의회의 역할을 증대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주민청구토론회’를 도입해볼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정책을 생산하는 기초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풀뿌리민주주의와 생활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광진구의회 정책콘퍼런스’를 제안함. 연 1회 의회 전체 행사로 2~3일간 집중적으로 광진구의회 14명의 의원 각자가 정책주제를 정하여 주민, 전문가, 지역단체, 집행부 담당부서와 토론회, 강연회, 현장방문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5) 광진구의회 주민참여 개선방안

1) 의정모니터

- 관내 시민단체 중심으로 외부 의정모니터 존재하나 예산 확보 등 지속성의 문제 있음. 광진구의회가 운영하는 의정모니터는 없음
- 광진구의회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의정활동 전반(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 심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과 결과물을 공유하여 열린의회 구현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2) 청소년 의회 운영

- 광진구 청소년 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 주체가 구청. 구의회는 장소대관과 지원의 역할만 하고 있음. 구의회 홈페이지에 ‘청소년 의회’ 탭이 있으나, 의회 견학에 대한 내용만 올라오며 이것도 2017년이 끝임
- 선거연령 하향 등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의회정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제공하는 청소년 의회를 광진구의회가 운영 주체가 되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은 지역 사회와 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 제시와 정책 제안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함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3) 주민참여결산제

- 주민참여예산제는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나, 결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음

- 의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결산제. 광진구의회가 주민참여결산 위원을 모집하고, 주민참여결산학교를 통해 주민참여결산을 준비. 의회 주민참여결산위원회는 심의대상 결산안을 분석하고 보고서 및 질의사항 제출. 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결산안 심의. 최종적으로 성과공유회를 통해 결과 공유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참여결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4) 조례 제개정 참여

- 주민 조례 발안 제도 청구요건 완화로 입법에 대한 주민참여의 문턱은 다소 낮아졌지만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에 대한 주민참여는 여전히 소극적
- 조례입법 주민참여 지원 조례를 제안. 주민이 조례입법의 과정에 함께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입법학교의 시행도 담고 있음. 조례 제개정에 주민이 의원과 함께 한다면 의회와 행정만의 조례가 아닌 주민 생활에 필요한 생명력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조례입법 주민참여 지원 조례」 제정(안)

5) 청원제도

- 오랜 역사를 가진 청원법이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지난 10년간 1건의 청원도 없음
- 지역주민의 입법 참여 범위 확대를 위해 온라인을 이용한 청원제도의 운용에 대한 다방면의 고찰이 필요. 청원법 상 온라인청원(제10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음

6) 민원처리 프로세스

- 청원과 진정에 관한 규칙과 처리 프로세스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청원과 진정 이외의 민원처리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별 의원들에게 들어오는 민원들에 대한 처리 프로세스 필요
- 광진구의회 민원처리과정을 명문화 하여 민원의 접수 담당자와 민원의 접수 가능 범위, 처리 기간 등을 명시하고 필요하면 의장이 조사권과 예산의 지출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분명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6) 광진구의회 주요 자치법규 개선방안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

- 서울 자치구의회 중 10개 의회가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의 원칙을 규정하고, 흩어져있는 자치법규를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회의 진행이 이뤄지도록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함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개정

- 현재 광진구의회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내용이 비슷하므로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만들. 광진구의회에 없는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내용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해 볼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은 통합조례에 담을 수도 있음. 윤리강령 조례와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통합하지 않고, 윤리강령 조례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을 수도 있음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활동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제정

- 이 조례는 광진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과 직원이 원활한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광진구의회에서 빠르게 제정하고, 그에 맞게 의회 사무공간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4) 의회 지방공무원 관련 자치법규 통폐합

- 현재 광진구의회 자치법규의 ‘의회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의 정리 필요.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 근무, 교육, 복지, 징계 등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의회 사무직원의 윤리적 측면과 관련된 자치법규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무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제정 필요

5) 기타 자치법규 개선

- 의회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를 모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운영 조례」 제정. 의회 청사관리, 구의회 개원기념일, 후원 명칭 사용승인 등에 대한 부분도 포함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록물 관리 규칙」을 제정하여, 영상을 포함한 각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부록> 광진구의회 FGI, 설문조사

(1)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

1) FGI 개요

- FGI(집단 심층면접) 조사란 동질적인 특성을 지닌 소수의 조사 대상자를 한 장소에 모아놓고 사회자에 의한 좌담형식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조사 방법⁷⁸⁾
- FGI조사 일시 : 2022년 12월 01일(목)
- FGI조사 장소 : 광진구의회 6층 세미나실
- FGI조사 대상 : 광진구의회 의원 연구 단체 행정혁신 연구회 소속 의원 5명
의회사무국 직원 4명, 전문위원 1명, 정책지원관 3명

2) FGI 질문

I. 의회 회의진행

- 기획행정위원회는 70개의 팀, 복지건설위원회는 100개의 팀으로 소관 업무의 상임위 배정이 적절하다 생각하시나요?
- 상임위 활동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 예산 및 결산 심의 시 상임위에서 예비 심의가 이뤄지나요?
- 현재 광진구의회는 구정질문, 5분발언, 신상발언 등이 자유롭게 발언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답변 방식은 적절한가요?
- 현재 광진구의회 정기적인 업무보고 방법 및 형태 그리고 횟수에 만족 하시나요?
(상임위별 보고인지)

78) 네이버 지식백과

- 행정사무감사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에 만족하시나요? 개선됐으면 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Ⅱ. 의회 운영

- 현재 의장단 선출방식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그 이유는?
 - 개선됐으면 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 의장단 활동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 의장단 회의는 얼마나 자주 열립니까?
- 의원총회는 얼마나 자주 열립니까?
 - 업무추진비 사용에 만족하십니까? (액수/사용처 등)
 - 불만족하신다면, 이유는?
 -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 의회 업무공간에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 의회 홈페이지가 의정활동이나 의회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회 SNS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까?

Ⅲ. 의정활동 지원

- 1. 입법 지원
 - 현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전문분야(전공 및 경력)는 어떻습니까?
 - 현재 전문위원실 및 정책지원관들의 의정활동 보좌에서 아쉽다고 느껴지시는 점(보완했으면 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 2023년 정책지원관 채용 계획
 - 어떤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정책지원관을 뽑고자 하십니까?
 - 새로 뽑는 정책지원관들의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2. 의원연구단체

○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 어떤 점이 개선되면 좋겠습니까?
- 어떤 지원이 더 이뤄지면 좋겠습니까?

3. 의원 교육연수 프로그램

○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듣고 계시는지?

- 개선됐으면 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개선됐으면 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4. 토론회 간담회 등

○ 토론회 및 간담회가 얼마나 자주 개최되고 있습니까?

-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함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5. 의정 홍보

○ 개선됐으면 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IV. 주민참여

1. 의회 모니터링

○ 의회 회의 방청 오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가?

- 광진구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정도?

2. 조례 제개정 참여, 행정사무감사 의견 제시

○ 조례 제개정에 주민참여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예산-결산 과정에 주민참여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3. 민원처리 프로세스

○ 주민 의견 수렴에 있어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 민원을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하고 계시는지?

3) FGI 답변 요약 및 분석

가. 의원

- 의회 회의 진행에 있어 상임위원회 배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상임위 활동이 형식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 부족하여 상임위원회 기능 강화와 의원들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 업무보고 방식도 기본 방식을 바꿔서 상임위별로 하고 질의 시간도 필요. 행정사무감사를 개별감사에서 상임위별 감사로 변화 필요
- 의회 운영에 있어 의장 선출방식에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 의장단의 정의와 활동을 조례나 규칙에 담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의장단과 의원들과의 소통과 의원총회나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통해 의원들 간의 활발한 소통을 원함. 위원장이 아닌 의원들도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위원회별로 쓸 수 있도록 개선 필요. 2024년까지 준비 중인 광진구의회의 새로운 업무공간에 대한 모든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램. 홍보 인력이 충원되어서 의회 홈페이지 지나 의회 SNS가 활발히 운영되기를 바램
-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 정책지원관의 업무 정의와 소속이 명확하지 않고 의원을 보좌하는데 부족하다 생각. 현 정책지원관들이 개별의원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는 부분 불편함. (토목이나 건축 등)전문성이 있는 정책지원관을 선발하는 것과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고민 중.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좋은 분들을 뽑았으면 하나 아직 합의가 안 됨. 전문가들로 정책지원관을 뽑았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서로 본인의 지원관으로 원할 때). 의원 한 명당 정책지원관 한 명씩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봄. 정책지원관들 중에 리더도 필요. 교육이나 연수는 충분하나 기억에 남는 교육은 많지 않음. 간담회는 개별의원별로 하고 있음. 의회 전반에 홍보가 부족하다 생각
- 주민참여에 있어서 방청 오는 주민들은 적으나 관련 사안에 관한 관심은 큼. 외부 시민단체 모니터링이 있음. 행정사무 감사 시 현수막을 게첩하나 주민의견제안은 거의 없음. 구체화 된 민원처리 프로세스 없음. 의원들이 처리한 민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시스템을 만들 계획

- 의회 회의 진행에 있어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의 제도개선 필요. 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의원들 간의 활발한 소통 필요.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정책지원관의 업무 정의와 소속의 명확한 정의 필요. 주민참여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이끌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민원처리 프로세스 필요

나. 의회사무국 직원

- 의회 홍보에 업무부담 큼.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함. 의정 백서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의정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함. 의회 사무국에서 의원들 보좌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일정이 수시로 바뀌는 것
- 의회의 인력 부족과 각 분야에 전문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가 큼

다. 전문위원

- 정책지원관을 통해 조례가 만들어지고 전문위원실로 넘어오는 구조 필요.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실의 업무 분장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의 명확한 업무 분장 필요

라. 정책지원관

- 정책지원관의 업무공간 자체가 의원들과 거리가 있어서 소통의 어려움이 있음. 의회 이전 시 업무공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있음. 입법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감독하는 사람 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 조례가 집행부와의 간담회나 주민의견 수렴 같은 것들이 먼저 선행되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 정책지원관의 업무 분장에 대한 문제와 의사일정에 대한 공유부족. 구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 중심으로 의회사무국이 운영되어 어려움이 있어도 소통하기 어려운 구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공백들에 대한 고민

(2) 설문 조사

1) 설문 조사 개요

- 설문 조사 일시 : 2022년 12월 1일~2일
- 설문 조사 장소 : 광진구의회 6층 세미나실
- 설문 조사 대상 : 광진구의원 14명, 전문위원 4명, 이외 사무국 직원 22명
- 설문 조사 응답 : 단일 선택형. 총 5개의 보기.

2) 설문 조사 질문 및 결과(의원용)

의회 운영

	전혀 그렇지 않다 (없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많다)
• 현재 의장단 선출방식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2	4	3	4	1
• 의회 내에서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0	9	2	2	1
• 주요 의사결정 및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님들끼리 자주 모이는 편입니까?	1	7	6	0	0
• 의회 구성원 누구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1	1	5	4	3
• 의회 업무공간은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1	6	4	2	0
• 의회 홈페이지가 의정활동이나 의회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7	3	1
• 의회 SNS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5	6	1	0

의정활동 지원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각종 지방의원 교육 프로그램에 의원님들께서 활발히 참여하십니까?	1	4	4	5	0
• 교육 프로그램이 의정활동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느끼십니까?	1	3	3	5	2
•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에 의원님들께서 활발히 참여하십니까?	1	4	4	5	0
• 연수 프로그램이 의정활동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느끼십니까?	1	1	5	5	2
• 현재 의회 소식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충분히 잘 홍보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0	4	7	3	0
• 현재 입법-정책 보좌인력은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1	6	6	1
• 입법-정책 보좌인원은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5	5	3	1	0
• 전문위원-정책지원관 간 업무분장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5	4	3	0

주민참여

	전혀 그렇지 않다 (없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많다)
• 의회 회의 방청 오는 주민들이 많은 편입니까?	1	7	5	1	0
• 광진구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4	8	1	0
• 조례 제·개정에 주민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	9	3	0	0
• 행정사무감사에 주민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	10	3	0	0
• 예산-결산 과정에 주민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0	10	3	1	0
• 의원님들의 민원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1	1	6	6	0
• 청소년의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2	2	4	3	2
• 청소년의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5	3	4	1	0
• 청원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1	3	6	3
• 청원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4	2	2	0

3) 설문 조사 질문 및 결과(직원용)

의회 운영

	전혀 그렇지 않다 (없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많다)
• 의회 내에서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0	4	9	8	5
• 의회 구성원 누구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0	6	8	9	3
• 의회 업무공간은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2	2	10	8	4
• 의회 홈페이지가 의정활동이나 의회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2	5	7	12
• 의회 SNS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4	10	6	5

의정활동 지원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습니까?	2	4	4	11	5
• 지방의회 사무국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직원 분들이 활발히 참여하십니까?	1	2	6	11	6
• 교육 프로그램이 업무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느끼십니까?	0	2	7	11	6
•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에 직원 분들이 활발히 참여하십니까?	1	4	7	11	3
• 연수 프로그램이 업무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느끼십니까?	1	4	8	12	1
• 현재 맡으신 업무에 만족하십니까?	0	4	5	11	4
• 업무분장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6	7	9	1

주민참여

	전혀 그렇지 않다 (없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많다)
• 의회 회의에 방청 오는 주민들이 많은 편입니까?	0	8	10	4	2
• 주민들이 광진구의회에 관심이 많다고 느끼십니까?	0	5	9	8	2
• 조례 제·개정에 주민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0	5	10	7	3
• 행정사무감사에 주민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0	4	10	7	4
• 예산-결산 과정에 주민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0	6	10	5	2
• 의원님들의 민원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0	0	9	15	1
• 청소년의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2	5	13	3
• 청소년의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2	11	5	5	1
• 청원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0	2	7	9	6
• 청원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6	7	8	4
• 주민들이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충분히 열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0	7	12	6

4) 설문 조사 답변 분석

가. 의원

- 의회운영 : 의회 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이지 않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 업무공간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의회 SNS가 활발히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
- 의정활동지원 : 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홍보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느낌. 입법·정책 보좌인력은 전문적이라고 생각하나 충분하지 않고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간의 업무 분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 주민참여 :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 결산과정에 주민참여가 부족. 청소년 의회나 청원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고 응답

나. 의회사무국 직원

-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직원이 잘되고 있다고 응답
- 의원들의 설문 조사 응답과는 대조적인 결과를 가짐. 의회사무국의 직무에 관한 질문이다 보니 긍정 평가가 많았던 것으로 보임

다. 전문위원

- 의회사무국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 입법·정책 보좌 인력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간의 업무 분장도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간의 명확한 업무 분장 필요

<참고 문헌>

- 행정안전부, 2021. 「2020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2021.03.
- 행정안전부, 2022.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2022.06.
- 정병렬, 조민경, 김렬. 2015. 「지방의회 기능과 상임위원회 전문성 간의 관계」.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제16권 제4호(통권 49호) : 157~176. 2015.02.
-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지방의회 교섭단체 활성화 방안연구」. 경기도의회. 2021.01.
- 김준석, 구본상. 2020. 「지방의회의 입법지원기구 설치에 대한 제도적 논쟁」. 분쟁해결연구 2020; 18(2) : 63~93. 2020.
- (주)아이앤아이리서치. 2022. 「경기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실질적 운영방안 도출 연구 - 해외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2022.06.
- (사)한국지방계약학회. 2019.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시도의회사무처 조직 및 인력운영 개편방안」. 전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 2019.07.
- 김건위, 김필두, 이병기. 2021.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의회 의정역량 제고 방안 - 사무기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12.
- 송광태. 2016. 「지방의회 의정감시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8권 제3호(통권 95호). 2016.09.
- 신민철, 이정용. 2021. 「서울시 자치구 청소년의회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서울연구원. 2021.10.
-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합동 보도자료. 2018. 문재인정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 2018.03.20.
- 안성수, 정세현. 2021. 「지방의회의 청원·진정제도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제21권 제2호 p.145~176. 2021.12.
- 윤혜진, 박순중. 2019. 「지방의회 청원 처리결과의 영향요인 분석 - 제7대~제9대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1권 2호 : 237~262. 2019.06.
- 김태엽. 2022. 「국회 입법예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 국민과의 소통 플랫폼으로의 발전」.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995호. 2022.09.